



2022.8.

국회에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NABO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B U D G E T O F F I C E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진달래 예산분석관
정성영 예산분석관

지 원 | 강숙자 행정실무원
최희현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6788-3771 | s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

2022.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주거안정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I. 결산 개요

- 1. 현 황 5
-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5

II. 주요 현안 분석

- 1.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분석 17
 - 1-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미흡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 19
 - 1-2.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및 집행부진 문제 26
- 2.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효과성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계속사업 추진 필요 등 30

III. 개별 사업 분석

1.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관련 분석	41
2.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추진지연 방지 및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노력 필요	51
3.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60
4.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타당성조사 절차 시행 전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 방지 노력 필요 등	66
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추가적인 지연 방지 노력 필요	75
6.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등	79
7.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시 정보화사업 관련 절차 미이행 문제	89
8.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설계 변경 및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	94
9.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의 내실화 방안 강구 필요	100
10.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계획 및 타당성 검토 미흡으로 인한 사업 중단 문제	106
11.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의 설계 변경 및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	111

[고용노동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119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7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9

II. 주요 현안 분석

1.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분석	131
1-1.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요건 및 예산 추계 분석	133
1-2. 일자리의 질 및 고용안정성을 고려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제도 설계필요	144
1-3. 관련 사업으로의 수요 분산을 고려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예산 편성 필요	152
1-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미흡 문제	156
1-5. 유사 사업으로의 수요 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예산 편성 문제	162
1-6.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예산 과다 편성	166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170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73
2-2. 취업성공패키지 목표 지원인원 달성 미흡	181
2-3.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관리 강화 필요	185

III. 개별 사업 분석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차질 없는 집행 노력 필요	193
2. 한국잡월드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방안모색 필요	198
3.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사업관리 미흡 문제	204
3-1. K-MOVE 스쿨 사업관리 강화 필요	206
3-2. 민간해외취업알선 사후관리 강화 필요	214
4.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218
4-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221
4-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요 진작 위한 방안 강구 필요	228
5.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233
6. 위험기계교체 사업의 자원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강구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240
7.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편성 분야 및 집행 내역 검토	249
8. 사업주 응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254
9.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규모 조정 필요	260
10.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효과 제고 필요	266

[기상청]

I. 결산 개요

1. 현 황	275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79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80

II. 개별 사업 분석

1.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R&D)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 연구과제 추진 문제	281
2.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공사 추진상황 및 관련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286
3.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사업의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인 이월 발생 문제	291
4.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296
5. APEC 기후센터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 및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01
6.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의 면밀한 집행 관리 및 사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30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조 5,612억 7,600만원이며, 8조 4,817억 8,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0.4%인 7조 6,693억 2,800만원을 수납하고 7,827억 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97억 5,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97	797	797	9,073	6,881	2,192	-	75.8
환경개선특별회계	7,443,535	7,548,495	7,548,495	8,300,939	7,499,150	772,031	29,758	90.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00	500	500	1,213	1,213	-	-	1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	-	13,807	13,223	584	-	95.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1,484	11,484	11,484	156,755	148,861	7,894	-	95.0
합계	7,456,316	7,561,276	7,561,276	8,481,787	7,669,328	782,701	29,758	90.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6조 2,354억 8,700만원이며, 이 중 95.8%인 15조 5,485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396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72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188,223	6,165,145	6,188,293	6,174,609	5,122	8,562	99.8
환경개선특별회계	7,443,535	7,548,495	7,676,902	7,209,401	233,461	234,040	93.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44,586	44,586	44,586	43,979	-	607	98.6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623,062	623,062	623,062	546,918	-	76,144	87.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702,446	1,702,446	1,702,644	1,573,682	1,056	127,906	92.4
합 계	16,001,852	16,083,734	16,235,487	15,548,589	239,639	447,259	95.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조 2,115억 9,200만원이며, 1조 3,519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2%인 1조 2,595억 4,500만원을 수납하고 920억 7,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억 8,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658,894	658,894	658,894	728,877	681,736	47,023	118	93.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4,120	239,344	239,344	266,577	244,126	22,373	78	91.6
금강수계관리기금	156,590	156,590	156,590	174,231	161,803	12,409	19	92.9
영산강섬진강수 계관리기금	117,640	117,640	117,640	140,445	131,765	8,676	4	93.8
석면피해구제기금	39,124	39,124	39,124	41,777	40,115	1,592	70	96.0
합계	1,236,368	1,211,592	1,211,592	1,351,907	1,259,545	92,073	289	93.2

자료: 환경부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조 2,208억 8,700만원이며, 이 중 103.2%인 1조 2,595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71억 5,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억 4,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한강수계관리기금	658,894	658,894	663,748	681,736	2,277	4,010	102.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4,120	239,344	242,135	244,126	2,951	921	100.8
금강수계관리기금	156,590	156,590	157,216	161,803	1,324	1,436	102.9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17,640	117,640	118,588	131,765	508	691	111.1
석면피해구제기금	39,124	39,124	39,200	40,115	94	87	102.3
합계	1,236,368	1,211,592	1,220,887	1,259,545	7,154	7,145	103.2

자료: 환경부

다. 총수입 · 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40억 2,000만원 (0.8%)이 감소한 2조 8,946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268억 5,400만원(8.5%)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719,910	1,927,378	1,927,378	1,903,049	△24,329	183,139
기금	947,886	1,013,168	991,292	991,601	309	43,715
합계	2,667,796	2,940,546	2,918,670	2,894,650	△24,020	226,85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2021회계연도 환경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089억 8,400만원(4.5%)이 감소한 10조 7,677억 6,600백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676억 6,600만원(9.9%)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821,478	10,166,539	10,271,499	9,767,519	△503,980	946,041
기금	978,622	1,004,912	1,005,251	1,000,247	△5,004	21,625
합계	9,800,100	11,171,451	11,276,750	10,767,766	△508,984	967,66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환경부의 자산은 20조 7,599억 2,300만원, 부채는 569억 2,300만원으로 순자산은 20조 7,030억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조 1,983억 5,500만원, 투자자산 1조 1,478억 1,400만원, 일반유형자산 5조 4,044억 3,400만원, 사회기반시설 12조 9,138억 1,400만원, 무형자산 850억 4,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조 3,248억 6,700만원(66.9%) 증가하였다. 이는 댐 시설의 자산재평가와 상수도 시설의 신규취득 및 자산재평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7조 6,523억 2,600만원이 증가, 토지·건축물 등의 신규 취득과 자산재평가 등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8,610억 9,500만원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24억 5,400만원, 장기차입부채 14억 2,700백만원, 장기충당부채 2억 1,4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28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2억 6,800만원(2.2%) 감소하였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인 퇴직연금운용자산 및 퇴직보험예치금 증가 등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35억 5,6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0,759,923	12,435,056	8,324,867	66.9
Ⅰ. 유동자산	1,198,355	1,228,747	△30,392	△2.5
Ⅱ. 투자자산	1,147,814	1,341,289	△193,475	△14.4
Ⅲ. 일반유형자산	5,404,434	4,543,339	861,095	19.0
Ⅳ. 사회기반시설	12,913,814	5,261,488	7,652,326	145.4
Ⅴ. 무형자산	85,044	50,769	34,275	67.5
Ⅵ. 기타비유동자산	10,461	9,424	1,037	11.0
부 채	56,923	58,191	△1,268	△2.2
Ⅰ. 유동부채	52,454	51,469	985	1.9
Ⅱ. 장기차입부채	1,427	164	1,263	770.1
Ⅲ. 장기충당부채	214	3,769	△3,556	△94.3
Ⅳ. 기타비유동부채	2,828	2,789	39	1.4
순 자 산	20,703,000	12,376,865	8,326,135	67.3
Ⅰ. 기본순자산	3,897,729	3,898,124	△395	-
Ⅱ. 적립금및잉여금	8,126,507	6,195,975	1,930,532	31.2
Ⅲ. 순자산조정	8,678,764	2,282,766	6,395,998	280.2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조 4,850억 3,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0조 2,756억 1,300만원, 관리운영비 4,428억 2,800만원, 비배분비용 1조 1,055억 6,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8,585억 8,200만원, 비배분수익 2조 5,437억 4,300만원, 비교환수익 등 9,366억 4,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061억 7,500만원(8.7%) 감소한 8조 4,216억 8,200만원이며, 산재평가로 인한 비배분수익 2조 5,205억 5,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21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2조 1,526억 1,200만원)과 물오염원 관리 프로그램(1조 9,037억 5,800만원), 맑은물 공급·이용 프로그램(1조 650억 2,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769억 5,200만원과 경비 2,658억 7,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환 수익 등은 부담금수익 9,356억 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 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417,031	8,615,386	801,645	9.3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275,613	8,975,719	1,299,894	14.5
나. 프로그램 수익	△858,582	360,333	△1,218,915	△338.3
II. 관리운영비	442,828	412,120	30,708	7.5
III. 비배분비용	1,105,565	223,543	882,022	394.6
IV. 비배분수익	2,543,743	23,191	2,520,552	10868.7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8,421,682	9,227,857	△806,175	△8.7
VI. 비교환수익 등	936,646	916,634	20,012	2.2
VII. 재정운영결과(V-VI)	7,485,035	8,311,223	△826,188	△9.9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2조 3,768억 6,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0조 7,030억원으로 기초 대비 8조 3,261억 3,500만원(67.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8,261억 8,800만원 감소하였으나, 순자산 가산 항목 중 조정항목은 전년 대비 6조 3,955억 7,7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9,385억 3,8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 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17조 5,275억 4,8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8조 1,119억 5,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4억 7,500만원, 자산재평가 평가손익 6조 4,003억 5,400만원,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순자산증감 △4억 2,100만원, 기타순자산의 증감 28억 8,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2,376,865	12,051,107	325,758	2.7
II. 재정운영결과	7,485,035	8,311,223	△826,188	△9.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415,594	8,477,056	938,538	11.1
IV. 조정항목	6,395,577	159,924	6,235,653	3,899.1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0,703,000	12,376,865	8,326,135	67.3

자료: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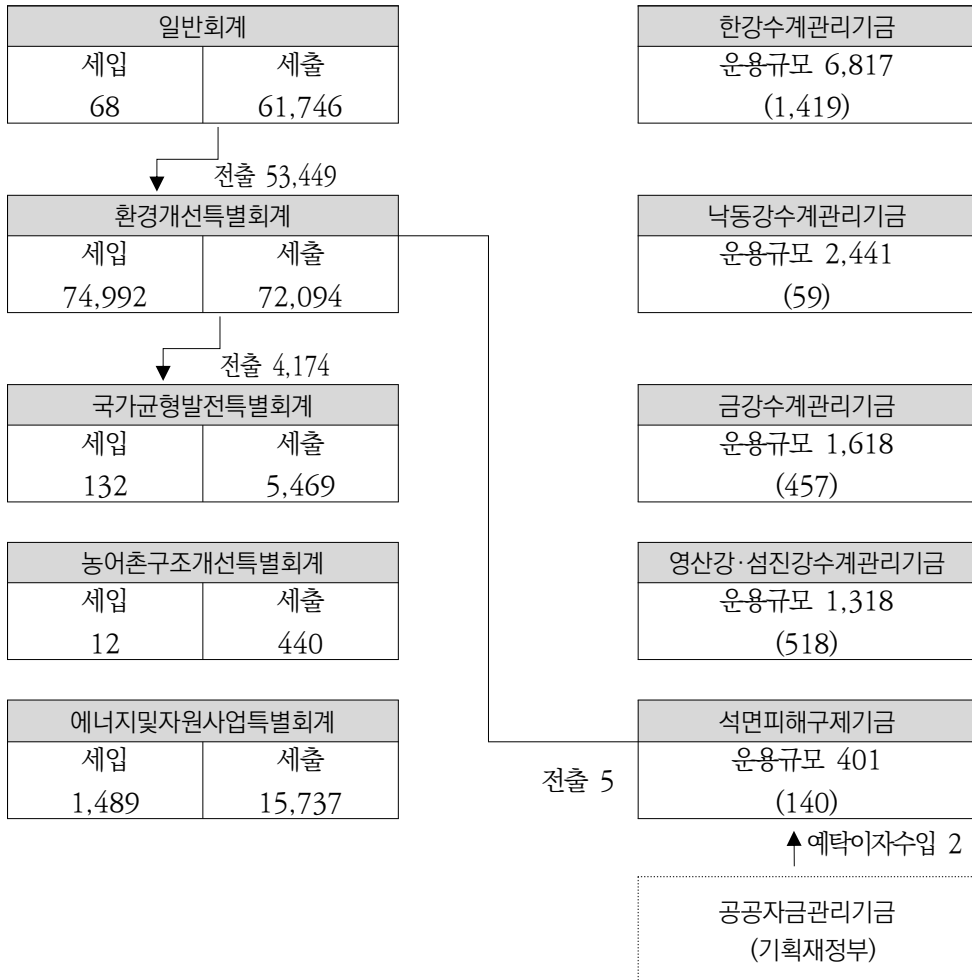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환경부의 결산은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5조 3,449억원 전출되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4,174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5억원이 전출되었다.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1. 총계 결산 기준

2. 기금운용규모는 여유자금 운용 금액(괄호 안 표기)을 포함한 값임

자료: 환경부

환경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¹⁾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②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③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이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부진한 보급실적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90억원이 감액(300억원 → 210억원)되었고,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은 내역사업의 실적행 실적이 부진한 점이 반영되어 57억원이 감액(314억원 → 257억원)되었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은 실적행 저조 및 예산의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600억원이 감액(5,656억원 → 5,056억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② **하수관로 정비사업**, ③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④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⑤ **국가 미세먼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등이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내역사업)이 286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내역사업) 사업이 30억원 각각 증액(6,241억원 → 6,557억원)되었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298억원(7,922억원 → 8,220억원) 증액되었다.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83억원(4,312억원 → 4,495억원)이 증액되었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경우 150억원이 증액(4,526억원 → 4,676억원)되었다. 또한, 미세먼지정보센터의 배출정보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국가 미세먼지정보관리시스템사업(정보화)이 38억원(0억원 → 38억원) 증액되었다.

1) 환경노동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0.12.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1건이 채택** 하였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은 노후 상수관로의 정밀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노후상수도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²⁾

2)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환경부는 ①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녹색산업 혁신·성장기반 구축,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등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 전환 가속화**, ② 물관리 전 과정 스마트화,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 정수장 위생관리 및 홍수 대응력 향상 등 **먹는물 안전 확보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③ 탄소중립 목표 이행 지원,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④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및 재활용 활성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 선제적 예방·관리 등 **환경 현안 해결** 등을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미흡한 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경부는 수요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22년까지 지원 받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도 모델 및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바, 기금 설치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온실가스 저감 측면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추진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관

런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연도별 적용대상 업종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험실 등 측정분석체계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동 제도가 안정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타당성조사나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환경부는 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부족으로 인해 사업 중단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²⁾ 등에 따라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등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내역사업을 비롯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³⁾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⁴⁾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략.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생략.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9. 생략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한 사후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검사 관리 및 자동차배출가스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등 수송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6,541억 9,300만원 중 6,406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6억 5,2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655,706	655,706	287	△1,800	654,193	640,689	97.9	1,851	11,652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628,225	628,225	0	0	628,225	617,357	98.3	0	10,868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4,000	4,000	0	△1,800	2,200	2,20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1-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미흡한 수요 예측으로 인한 집행 부진 문제

가. 현 황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⁵⁾의 내역사업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자동차, 사업장 등 배출원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대기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동 내역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이동오염원(도로 및 비도로)의 배출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LPG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지원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LPG 전환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본예산 기준 조기폐차 34만대, 저감장치(DPF) 부착 9만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만대 등 2020년 본예산 대비 지원 물량을 확대 추진하였고, 건설기계 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수요가 감소한 세부 내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물량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규 추진한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의 물량을 확대 편성하는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5)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2021회계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내역사업 지원 현황(예시)]

(단위: 억원)

구 분		2020 (본예산)	2021 (본예산)	지원 물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896	3,264	· 300,000대 → 340,000대
	DPF 부착	1,383	1,710	· 80,000대 → 90,0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90	693	· 10,000대 → 7000대
	DPF	330	99	· 5000대 → 1,500대
LPG 전환	화물차	200	400	· 10,000대 → 20,000대
전기 굴착기 보급지원		10	40	· 100대 → 400대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수요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1회계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내역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세부 내내역사업 간 물량 및 예산 조정을 거쳐 예산현액 6,282억 2,500만원 중 6,173억 5,700만원을 지자체로 교부하였으며,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는 교부받은 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 6,586억 7,100만원 중 66.0%인 4,345억 9,900만원을 실집행하는 등 2020회계연도(지자체 실집행률 80.5%)에 비해 실집행 실적이 일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회계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부처		지자체						
	본예산	예산 현액 ¹⁾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28,225	628,225	617,357	41,314	658,671	434,599	102,827	121,245	66.0
조기폐차	326,400	333,067	327,335	19,240	346,575	245,952	39,481	61,142	71.0
저감장치부착	171,000	192,021	187,810	14,476	202,286	118,791	46,025	37,470	58.7
LPG엔진개조	350	-	-	-	-	-	-	-	-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9,375	4,169	4,146	788	4,934	973	1,300	2,661	19.7
건설기계저감 장치(DPF)부착	9,900	4,445	4,352	13	4,365	831	420	3,114	19.0
건설기계 엔진교체	69,300	59,302	58,646	4,290	62,936	42,986	8,521	11,429	68.3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1,900	1,900	1,900	1,160	3,060	2,556	297	207	83.5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40,000	33,321	33,168	1,347	34,515	22,510	6,783	5,222	65.2

주: 1) 각 내내역사업별 당초 편성된 본예산을 조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하였음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세부유형별 실적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동 내역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목적으로 당초 편성된 본예산보다 예산을 확대 조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실적집행률이 각각 71.0%, 58.7%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연도내 집행부진 가능성 및 불용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간 재배정을 통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집행률이 각각 19.7%, 19.0%, 68.3%, 65.2%로 나타나는 등 일부 내내역사업의 실적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

이에 더해, 2021년 결산 기준 보급 계획물량(지자체 교부액 기준) 대비 실적을 확인한 결과,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계획물량과 전년도 이월물량을 합한 전체 계획

물량 361,016대 중 211,652대(58.6%)가 지원되었고,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전체 계획물량의 63.0%가 지원되었으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사업,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지원 물량을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물량 대비 각각 19.9%, 28.9%, 64.8%가 지원되는 등 실제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2021회계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유형별 계획물량 대비 집행 실적]

(단위: 대, %)

구 분	계 획		전년도 이월(C)	실적(D)	다음연도 이월	달성률 {D/(B+C)}
	본예산(A)	조정(B) ¹⁾				
조기폐차	340,000	340,974	20,042	211,652	24,708	58.6
저감장치부착	90,000	98,847	7,619	67,091	22,523	63.0
LPG엔진개조	200	0	0	0	0	0.0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1,250	553	105	131	154	19.9
건설기계저감 장치(DPF)부착	1,500	659	2	191	125	28.9
건설기계 엔진교체	7,000	5,924	433	5,850	1,005	92.0
운행제한지역 시스템 구축	76	76	46	91	0	74.6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0,000	16,584	674	11,188	3,767	64.8

주: 1) 각 내내역사업별 조정을 통해 지자체에 교부한 물량 기준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6) 다만, 2022년의 경우에는 저감장치(DPF) 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예산이 2021년 본예산 대비 66.2%, 63.6%, 93.3%, 62.5% 수준으로 감액됨으로써 집행실적 개선의 여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내 감액 편성 내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대, %)

구분	2021		2022			
	본예산	계획물량	본예산	전년대비 감액률	계획물량	전년대비 감소율
저감장치부착	171,000	90,000	57,750	△66.2	35,000	△61.1
PM-NOx 동시 저감장치부착	9,375	1,250	3,413	△63.6	455	△63.6
건설기계저감 장치(DPF)부착	9,900	1,500	660	△93.3	100	△93.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40,000	20,000	15,000	△62.5	15,000	△25.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1회계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내역사업의 실행 부진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상하기 어려웠던 차량반도체 수급난이 발생하여 공급 물량 확보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더해, 사업 계획 수립 시 수요물량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은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건설기계 엔진과 연계된 필수부품의 수급이 어렵게 되어 건설기계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반도체 수급난의 영향으로 사업 지원 대상 차량(봉고3)의 공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이 LPG 화물차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등으로 인해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⁷⁾

특히, 동 내역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에는 2021년 예산 편성 시 수도권 지역의 지원 계획물량을 과다하게 편성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1년도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 예산 편성 시 2020년 상반기에 조사한 지역별 5등급(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량 등록 대수 전체를 기준으로 계획 물량(43만대)을 산정하였으나, 2021년 1월 추가조사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 중 상당수가 실제 운행이 되지 않는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확인되는 등 수요 예측에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2021년 예산편성 시 2020년 6월말 기준 수도권 지역의 5등급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약 37.4만대의 절반 수준인 17.6만대 물량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1년 1월말 기준으로 추가조사 결과 수도권 지역의 저공해 미조치 차량 약 29.9만대 중 실제 운행이 가능하여 조기폐차 등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차량은 14.1만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 환경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내내역사업간 예산을 재조정하고, 공급 지연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 관련 증빙자료 제출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보조금 대상자의 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1회계연도 계획물량(조기폐차, DPF) 및 5등급 저공해미조치 차량 현황]

(단위: 대)

구분	2021 계획물량 (조기폐차, DPF)	2020.6월말		2021.1월말		
		저공해 미조치	보험 가입여부	저공해 미조치	보험 미가입	보험 가입
전국	430,000	1,553,778	미조사	1,332,486	347,961	984,525
수도권 ¹⁾	176,340	373,752		299,181	158,084	141,097
서울	26,590	94,981		78,255	57,146	21,109
인천	14,100	40,677		32,243	18,756	13,487
경기	135,650	238,094		188,683	82,182	106,501
비수도권	253,660	1,180,026		1,033,305	189,877	843,428

주: 1) 운행제한 집중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최초 시행(20.12월)으로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를 위한 지원물량 확대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으로 편성한 동 사업의 예산을 추가예산이 필요한 수도권 외 지자체로 재배정하여 활용하는 등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비 교부액을 살펴보면, 서울에는 본예산 402억 6,300만원 중 360억 2,900만원을 교부하였고, 경기를 대상으로는 본예산 1,824억 6,500만원 중 1,794억 6,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예산 재배정 및 조정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회계연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자체별 실적(수도권 지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민간이전 기관 등)						
	본예산	추경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C)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서울	40,263	40,263	36,029	89.5	36,029	6,233	42,261	19,250	5,538	17,473	45.6
경기	182,465	182,465	179,465	98.4	179,465	1,339	180,804	98,484	11,711	70,609	54.5

자료: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수요를 전제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서,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 대상의 지역별 현황과 공급 가능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⁸⁾

그러나 사업성 부족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 참여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개별 내내역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요 예측 미비 등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 물량과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수요현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엔진·차량 생산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주어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8) 이에, 환경부는 2022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 현황 및 보험 가입차량 현황, 각 사업별 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1-2.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의 예산 과다 편성 및 집행부진 문제

가. 현 황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⁹⁾의 내역사업인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은 도심 건설 현장의 경유굴착기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전기굴착기 보급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 40억원 중 타 세부사업으로 이용¹⁰⁾하여 집행한 18억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655,706	655,706	287	△1,800	654,193	640,689	97.9	1,851	11,652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4,000	4,000	0	△1,800	2,200	2,20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현황이나 사업 추진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급 계획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검증 등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굴착기 보급 내역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총 100대의 전기굴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보급 물량을 확대하여 400대를 대상으로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9)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10) 환경부는 동 사업 예산 중 18억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및 집중대응 추진 등을 위한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으로 이용하였다.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목적	-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심 건설현장의 경유굴착기 배출가스 및 소음저감을 위한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기간	- 2020 ~ 계속
사업 주체	- (시행주체/실집행주체) 환경부, 지자체
지원형태	- (지원조건) 전기굴착기 신규 구매·등록 -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사업 추진절차	- 계약(구매자) 및 공고(지자체) → 출고(제조사) → 보조금 지원(지자체)
사업 규모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예산 1,000 4,000 2,000
	물량 100 400 200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은 시범사업 추진 초기부터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수요 부족으로 인해 예산의 실집행 실적 부진 및 굴착기 보급 실적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모집 공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억원의 예산 전액을 지자체로 교부하였으나 그 중 10%인 1억원만이 실집행되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구매수요 확보가 어려워 18억원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22억원의 예산을 지자체로 교부하였으나, 2억 9,800만원(10.6%)이 실집행되고 3억 9,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1억 400만원은 불용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 기준 부처 집행률이 41%,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9.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2022년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지자체						
	본예산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C)	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	600	300	10.0
2021	4,000	2,200	2,200	100.0	2,200	600	2,800	298	398	2,104	10.6
2022	2,000	2,000	820	41.0	820	398	1,218	118	-	-	9.7

주: 2022년은 6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업에 대한 실제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기굴착기의 상용화 및 보급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어 실제 전기굴착기의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구매의사를 밝혔던 실사용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요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0년 대비 계획수량 및 예산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실적 부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¹¹⁾

또한, 환경부는 당초 동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전기굴착기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¹²⁾하고 초기 시장 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2020년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 이래 지원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나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

11) 다만, 환경부는 2022년 예산 편성 시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물량과 예산을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액 편성(2021년 40억, 400대 → 2022년 20억, 200대)하였다.

12) 환경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2020년에는 1개사에서 2종(1톤, 3.5톤)의 전기굴착기가 생산되었으나, 2021년에는 3개사·3종(1톤, 1.9톤, 3.5톤)으로 확대되는 등 전기굴착기 관련 소규모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13) 환경부는 「무공해 건설(농)기계 보조금 산정방법 연구」 용역(22.4.~10.)을 통해 국내·외 보조금 정책 및 현황, 보조금 산정 적용방안 등을 연구하여 국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동 연구용역에는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는 전기굴착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 현황이나 사업 추진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급 계획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이전에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검증 등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효과성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계속사업 추진 필요 등

가. 현 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¹⁾은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단편적 공정개선을 넘어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사용 저감 및 생산 효율·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 개선 등 공정 전 과정 지원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조공장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현액 303억원을 모두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30,300	30,300	0	0	30,300	30,30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동 사업을 통해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공장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제조공장 모델을 구축·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 1,010억원의 국비(총사업비 1,677억원)를 투입하여 총 100개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각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30개 제조업공장을 지원하였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개요]

• 총 사업규모 : 중소·중견기업 100개소(2020년 10개소, 2021년 30개소, 2022년 60개소) • 기업당 지원단가 : 1,010백만원(국비 기준) • 국비 지원비율 : 국비 60%(중소기업 60%, 중견기업 50%), 민간부담 40%(중소기업 40%, 중견기업 50%) • 사업수행방법 : 직접수행(위탁: 한국환경공단)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2020(추경)	2021	2022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총사업비 (예산)	167,700 (101,000)	16,800 (10,100)	50,300 (30,300)	100,600 (60,600)
	(물량/단가)		(10개소×1,010)	(30개소×1,010)	(60개소×1,010)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관리, 공정·에너지 관리, 스마트 시스템 운영 관리 등의 지원 분야 중 최소 3개 유형 이상의 설비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개선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추진개요]

구분	세부내용		
지원목적	- 오염물질 저감 - 자원·에너지 사용저감 및 제조공정의 효율성 제고 - 친환경 제조공장 선도모델 보급·확산		
지원대상	- 공장소유 중소·중견기업		
지원분야	오염물질저감	수질오염(오·폐수) 방지시설, 미세먼지 집진·제거 장비, 폐기물저감시설, 고유해성 화학물질 대체·저감시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환경부
	자원순환	오·폐수 및 빗물 재이용·재순환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재활용재료 이용 건축시설 등	환경부
	공정·에너지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오염방지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	산업통상 자원부와 협업
	스마트시스템	오염물질저감 모니터링 시설 및 시스템, 센서, 스마트 제어 등	중소벤처 기업부와 협업
	악취·소음·진동	악취·소음·진동 저감시설	환경부
	기타 친환경시설	녹지 및 생태환경 관련 시설 등	환경부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22년까지 지원 받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도모델 및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당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중 ‘그린 뉴딜’ 전략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이래,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전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등에 따라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목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당초 동 사업은 2022년까지 3년간 총 100개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2년 이후에도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4	10,100	30,300	60,600	60,600	60,600	
’21~’25		30,300	60,600	60,600	60,600	60,600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신규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0호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국무회의의 의결(’20.6.3)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사업으로, ①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시 검토된 사업 기간이 총 3년(2020~2022년)이라는 점, ②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해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비용·편익,

효과성 등에 관한 분석이 사전에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할 경우 2022년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검증 등의 과정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

환경부에 따르면,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첫째, 월간 보고서 검토, 분기별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둘째, 협약체결 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예상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최종평가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상 제출한 예상효과의 달성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셋째, 사업 완료 후 최종보고서상 제시된 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 자원순환 효과, 에너지절감 효과 등의 결과를 3년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원기업별 정량적 성과(예시)]

구분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	악취 저감	소음 저감	기타 친환경 설비	스마트 시설
가	-	6,534ton/년	1.746tCO ₂ /년	36.39kWh/ton	-	22.3dB	200m ²	-
나	61.4ton/년	172.6ton/년	75.53tCO ₂ /년	102,149kWh/년	448배	17.2dB	584m ²	-
다	58.95mg/m ³	-	359tCO ₂ /년	138,000kWh/년	-	-	661.16m ²	모니터링 시설
라	-	22,270ton/년	15tCO ₂ /년	52,065kWh/년	275배	-	55m ²	-
마	4,506.970 mg/m ³ /년	9,970ton/년	688tCO ₂ /년	56,314Nm ³ /년	-	-	77m ²	모니터링 시설
바	21.6mg/m ³	22,584ton/년	451tCO ₂ /년	18.64kWh/년	-	-	165m ²	모니터링 시설
사	205.7ton/년	2,197ton/년	105tCO ₂ /년	167,338kWh/년	50%	9.7dB	204m ²	-

자료: 환경부

2) 참고로,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바, 동 사업은 신설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례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해 친환경·스마트 생태공장의 선도모델을 정립하고, 동 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스마트 생태공장 확산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

구분	세부내용
추진현황	· 과제명: 스마트 생태공장 확산 및 발전방안 마련 · 목적: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례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하여 생태공장 선도모델 정립 및 확산,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 · 용역기간: 2021.12.14. ~ 2022.7.12.(7개월) · 계약금: 99백만원 · 수행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주)이노비 공동수행)
주요내용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 해외 사례 조사 · '20년도 및 '21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선정기업 구축 성과분석 - 스마트 생태공장 선정기업 기초 현황자료, 구축사례 자료수집 및 만족도 조사 - 업종별, 규모별 및 지원분야별 환경적·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및 성과도출 · 스마트 생태공장 선도모델 제시 및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 타 사업과의 차별성 및 해외 유사 사례분석 등을 적용한 주요 업종별 선도모델 제시 - '20~'21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선정기업의 성과를 통한 업종별 선도모델 제시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대한 수준평가기준 마련 · 사업성과 홍보 및 확산방안 마련 · 스마트 생태공장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스마트 공장의 적용 범위에 따른 적용 가능 기술 등 발전 방향 제시 - 정부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된 중·장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연구용역의 경우, 성과분석의 대상 및 범위를 2020년과 2021년 선정된 총 41개 기업으로 한정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2022년 지원될 예정인 60개 기

업의 사업 내용이나 추진결과가 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성과 및 효과성 분석에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동 연구과제를 통해 제시될 예정인 스마트 생태공장 선도모델이나 중·장기 발전방안 또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22년까지 지원 받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성과평가 및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도모델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지원대상 선정, 설비 설치 등 사업 추진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지원하고 있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사업 공고 이전으로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는바, 한국환경공단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은 예산현액 99억 6,100만원 중 96억 3,100만원(96.7%)을 집행하였고, 2021년의 경우, 예산현액 307억 1,600만원 중 296억 5,900만원(96.6%)을 집행하는 등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2022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예산 (추경)	집행액 (위탁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0	10,100	10,100	10,100	-	9,961	9,631	0	330	96.7
2021	30,300	30,300	30,300	-	30,716	29,659	100	957	96.6
2022	60,600	60,600	60,600	100	60,509	174	미정	미정	0.3

주: 2022년은 3월 31일자 기준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의 절차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경우, 7월 3일 제3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진행하였고, 9월 25일까지 사전평가와 현장 확인, 최종 선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10월 15일 한국환경공단과 지원대상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차에 걸친 중간점검과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친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공고부터 완료까지 약 17개월이 소요되었다.

또한, 2021년도 사업의 경우, 2020년 12월 2일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2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사업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였고, 사전평가와 현장 확인 및 최종 선정평가를 거쳐 6월 14일 한국환경공단과 지원대상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각각 두 차례에 걸친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공고부터 완료까지 약 1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절차별 추진현황]

구분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평가/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2020	신청서 접수	- 정책부합성,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 - 시설현황 등 현장검증 - 발표평가, 종합검토,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점검 등	사업성과, 노력도, 적절성 등 평가
	7.20~8.18	8.19~9.25	10.15	11.30~12.10 '21.3.3~3.12 '21.7.5~7.21	'21.11.5 '21.12.1
구분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평가/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2021	신청서 접수	- 정책부합성,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 - 시설현황 등 현장검증 - 발표평가, 종합검토, 지원대상 및 후보 확정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관리실태 점검 등	사업성과, 노력도, 적절성 등 평가
	2.8~3.16	3.17~5.12	6.14	9.7~10.8 12.7~12.10	'22.2.10~2.11 미정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사업 공고와 사전평가, 현장점검 및 최종 선정평가 등 대상기업 선발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의 설치·개선 지원이 연례적으로 이월되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과정에서 지원되는 친환경 기술이나 설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선정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경우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 설비 개선 지원의 효과성 및 친환경 제조공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안 또는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지원대상인 기업 선정 및 실제 사업 추진기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확정 시 사업 공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컨설팅을 공고 이전으로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전환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부는 기후대응기금 설치의 취지를 고려하여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온실가스 저감 측면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될 당시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 사업으로 종합적인 환경관리 설비의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 제조공장 모델을 구축·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관리지침」 및 실제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신청·선정 기업의 지원분야 현황을 살펴보면, 자원순환, 친환경설비,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설비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환경부는 2020년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및 2020년 12월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 등 정책 추진여건을 반영하여 새로운 지원분야로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

정된 기업 총 167개 중 19개 기업(11.4%)이 해당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022년의 경우에도 최종 선정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한 신청 비중이 8.8%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등 아직까지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신청·선정기업 지원분야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오염물질 저감	자원 순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	악취 저감	소음진동 저감	스마트 시설	기타 친환경 설비
2020	신청	123	30	23	-	24	10	9	14	13
	(비중)	100.0	24.4	18.7	-	19.5	8.1	7.3	11.4	10.6
	선정	50	9	10	-	9	4	4	4	10
	(비중)	100.0	18.0	20.0	-	18.0	8.0	8.0	8.0	20.0
2021	신청	301	67	48	39	49	14	16	47	21
	(비중)	100.0	22.3	15.9	13.0	16.3	4.7	5.3	15.6	7.0
	선정	167	29	28	19	22	19	9	24	17
	(비중)	100.0	17.4	16.8	11.4	13.2	11.4	5.4	14.4	10.2
2022	신청	640	136	104	56	110	45	40	103	46
	(비중)	100.0	21.3	16.3	8.8	17.2	7.0	6.3	16.1	7.2
	선정	선정절차 진행 중								

주: 1. 분야별 지원분야 및 비중은 기업들이 각 유형을 중복 선택한 결과임

2. 2020년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분야는 지원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선정 실적이 전무함

자료: 환경부

한편, 동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신청·선정 현황을 살펴 보면, 2020년 동 사업에 선정된 총 11개 기업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억원 미만 기업은 4개로 나타났다. 또한, 총 30개 기업이 선정된 2021년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3개,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1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억원 이상 기업 중에서는 총 4개 기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 사업의 주된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실제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³⁾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일정 규모 이상의 ‘관리업체’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바,⁵⁾ 사업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동인 및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다소 부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의 매출액 규모별 신청·선정기업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계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2020	신청	35 (100.0)	10 (28.6)	21 (60.0)	4 (11.4)
	선정	11 (100.0)	4 (36.4)	6 (54.5)	1 (9.1)
2021	신청	74 (100.0)	23 (31.1)	33 (44.6)	18 (24.3)
	선정	30 (100.0)	13 (43.3)	13 (43.3)	4 (13.3)
2022	신청	146 (100.0)	50 (34.2)	64 (44.6)	32 (24.3)
	선정	선정절차 진행 중			

자료: 환경부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5)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조사결과, 2022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신청한 전체 146개 기업 중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업은 총 7개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사업 참여 및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동 사업은 사업 추진 당시 친환경 제조공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 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었고, 온실가스 저감 분야는 2021년부터 신설된 지원 분야이므로 동 사업의 주요 목표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2022년 예산부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향후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 관련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후대응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관련 분석

가. 현 황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법정부담금¹⁾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을 비롯하여 총량초과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등 기타부담금으로 구성된다.²⁾

환경부는 2021년 법정부담금 세입예산액 9,292억 700만원의 163.1%인 1조 5,008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003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6,708억 1,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96억 8,3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법정부담금 합계	929,207	929,207	929,207	1,500,876	800,375	670,818	29,683	53.3
환경개선부담금	428,663	428,663	428,663	840,976	271,311	540,345	29,320	32.3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59-593

- 2) ① 대표적인 법정부담금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수질배출부과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제32조) 이하로 배출되지만 방류수 수질기준(「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부과금을,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③ 폐기물부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산,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 포함)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을 부과대상으로 한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대기배출부담금	38,295	38,295	38,295	20,432	17,813	2,619	0	87.2
수질배출부과금	9,339	9,339	9,339	64,277	14,088	50,176	13	21.9
재활용부과금	24,354	24,354	24,354	37,831	28,562	9,269	0	75.5
폐기물부담금	178,200	178,200	178,200	209,048	204,425	4,623	0	97.8
수질개선부담금	15,264	15,264	15,264	20,054	14,819	5,129	106	73.9
생태계보전부담금	56,093	56,093	56,093	94,206	56,648	37,314	244	60.1
폐기물처분부담금	173,149	173,149	173,149	202,743	191,859	10,884	0	94.6
기타부담금	5,850	5,850	5,850	11,309	850	10,459	0	7.5

자료: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개정(19.10.17. 시행)하는 등 체납액 관리 강화 및 수납률 제고를 위한 조치를 통해 2017년 47.7%에서 2019년 이후부터는 약 5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2021회계연도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3.3%로 여전히 부진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94.7%에서 2021년 86.1%로 감소하는 등 징수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7	816,910	816,910	816,910	1,622,878	773,690	94.7	47.7	806,296	42,892
2018	792,441	792,441	792,441	1,525,751	724,827	91.5	47.5	753,452	47,472
2019	917,058	917,058	917,058	1,699,393	901,722	98.3	53.1	777,875	19,796
2020	892,660	892,660	892,660	1,613,647	841,465	94.3	52.1	712,223	59,959
2021	929,207	929,207	929,207	1,500,876	800,375	86.1	53.3	670,818	29,683

자료: 환경부

법정부담금의 세부유형 중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2021회계연도 환특회계 법정부담금의 예산현액 기준 46.6%,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5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 법정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비중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법정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비중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예산현액 (C)	징수결정액 (D)	예산현액 대비 비중 (C/A)	징수결정액 대비 비중 (D/B)
2017	816,910	1,622,878	535,009	1,181,247	65.5	72.8
2018	792,441	1,525,751	517,582	1,097,302	65.3	71.9
2019	917,058	1,699,393	441,572	1,020,740	48.2	60.1
2020	892,660	1,613,647	428,663	936,520	48.0	58.0
2021	920,207	1,500,876	428,663	840,976	46.6	56.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 및 법정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결산 결과 법정부담금의 세부유형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32.3%, 수질배출부담금은 21.9%, 생태계보전부담금은 60.1%,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 기타부담금은 7.5%로 수납실적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기타부담금의 경우 2020년 대비 수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2021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수납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전년대비 수납률 증감(c-C)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c=b/a)	
환경개선부담금	936,520	331,737	35.4	840,976	271,311	32.3	Δ3.1
대기배출부담금	16,497	12,886	78.1	20,432	17,813	87.2	9.1
수질배출부담금	106,431	11,260	10.6	64,277	14,088	21.9	11.3
재활용부과금	31,799	22,314	70.2	37,831	28,562	75.5	5.3
폐기물부담금	199,399	195,147	97.9	209,048	204,425	97.8	Δ0.1
수질개선부담금	19,768	14,451	73.1	20,054	14,819	73.9	0.8
생태계보전부담금	89,775	60,920	67.9	94,206	56,648	60.1	Δ7.8
폐기물처분부담금	196,095	187,860	95.8	202,743	191,859	94.6	Δ1.2
기타부담금	17,363	4,890	28.2	11,309	850	7.5	Δ20.7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부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수납률이 2017년 39.3%에서 2021년 32.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5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질배출부담금은 2017년 12.5%에서 2019년 10.0%로 하락한 이후 2021년 21.9%로 수납률이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6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결산 결과 장기체납액 비중 증가³⁾ 등으로 인해 전년(67.9%) 대비 하락한 60.1%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3)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2021년 총 체납액(약 170억원) 중 5년 이상 장기체납액이 약 129억원(75.9%) 수준으로, 체납자 부도 등으로 추정되는 징수가 불가능한 장기 체납금액까지 매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어 징수를 개선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7~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수납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	1,181,247	1,097,302	1,020,740	936,520	840,976
	수납액	464,247	423,633	387,761	331,737	271,311
	수납률	39.3	38.6	38.0	35.4	32.3
수질배출부담금	징수결정액	66,220	72,505	108,079	106,431	64,277
	수납액	8,305	8,804	10,791	11,260	14,088
	수납률	12.5	12.1	10.0	10.6	21.9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결정액	96,646	91,591	78,798	89,775	94,206
	수납액	61,412	59,090	49,754	60,920	56,648
	수납률	63.5	64.5	63.1	67.9	60.1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은 환경부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저조 문제 및 징수실적 제고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법정부담금 관련 시정요구사항(2017~2020회계연도)]

구 분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2017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 환경부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018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환경부는 법정부담금 채납업체 징수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독려 등 관리강화 뿐만 아니라, 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2019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징수실적 개선 방안 마련	- 환경부는 부담금의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20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 환경부는 수질배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취소 및 결손처분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방안”(21.11월)을 마련하였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담금 징수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우수 지자체의 업무추진 방식과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편람을 현행화하여 지자체에 배포(21.10월)하였으며, 최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62호)을 개정(2022.3.28.)하여 지자체에 지급하는 추가 징수비용 지급률을 상향 조정(기존 20% → 변경 30%)⁴⁾하는 등 지자체 대상 체납액 관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질배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⁵⁾ 등 관련 조항 개정(21.4.13.)을 통해 부과금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관허사업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을 통해 체납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경우, 과거에는 결손처분 규정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장기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1.4.13.)⁶⁾을

4) 기존에는 징수금액의 10%를 지자체에 교부한 후,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0%를 추가로 교부하였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30%를 추가 교부할 수 있도록 지급률이 상향 조정되었다.

5) 「물환경보전법」

제41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본다. <개정 2021. 4. 13.>

제41조(배출부과금)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 4. 13.>

6) 「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금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통해 채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과 같이 징수가 불가능한 채납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과기관(시·도)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40~60%)을 두어 부담금을 교부하는 등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인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 개선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경영 악화로 인한 업체의 도산이나 채납자의 거소지 불명, 납부능력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해 채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부담금 유형별 2년 이상 채납건수 및 미납부액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구 분	미납부액	업체(사업자) 수
대기배출부과금	1,171	147
수질배출부과금	44,976	577
재활용부과금 ¹⁾	7,405	396
수질개선부담금	4,450	155
생태계보전부담금	13,511	250
폐기물처분부담금	1,154	142
합계	72,667	1,667

주: 1)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각의 부담금을 합계한 수치임

1. 2020년 1월 1일 이전 징수건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채납된 현황 자료임

2.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개인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채납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제외하였음

자료: 환경부

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채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채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 4. 13.>

7) 기본징수율(60~70%)을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기본교부율(50%)을 기준으로 최대 10%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감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각 법정부담금 유형별 2년 이상 체납건수 및 미납부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징수된 부담금·부과금 중 총 1,667건이 체납되었으며 이에 따른 미납부액은 726억 6,7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된 바, 장기간 누적되는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⁸⁾

이처럼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되면 세외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위한 법정부담금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수납금의 장기화에 따른 불납결손은 체납자들의 의도적인 납부 회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체납업체 징수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지자체의 징수 독려 등 법정부담금 징수를 위한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부담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 등 법정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s)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⁹⁾ 및 동법 시행령 제4조¹⁰⁾ 등에 근거하여 경유자동차 사용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8) 다만, 환경부는 2021년 「자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에 따라 향후 부담금 납부회피자나 장기체납자에 대한 적정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②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징수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주요 부과대상¹¹⁾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경유자동차로서, 부담금 액수는 해당 기본 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환경개선부담금	- 해당 기본 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자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이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액 규모는 기본적으로 경유자동차의 차량 숫자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의 감소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 또한 2017년 1조 1,812억원에서 2021년 8,41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등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국가적 차원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의 절대적인 숫자가 2017년 기준 약 463.3만대에서 2019년 396.3만대로 감소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부과대상 차량 감소율이 대폭 증가하여 275.7만대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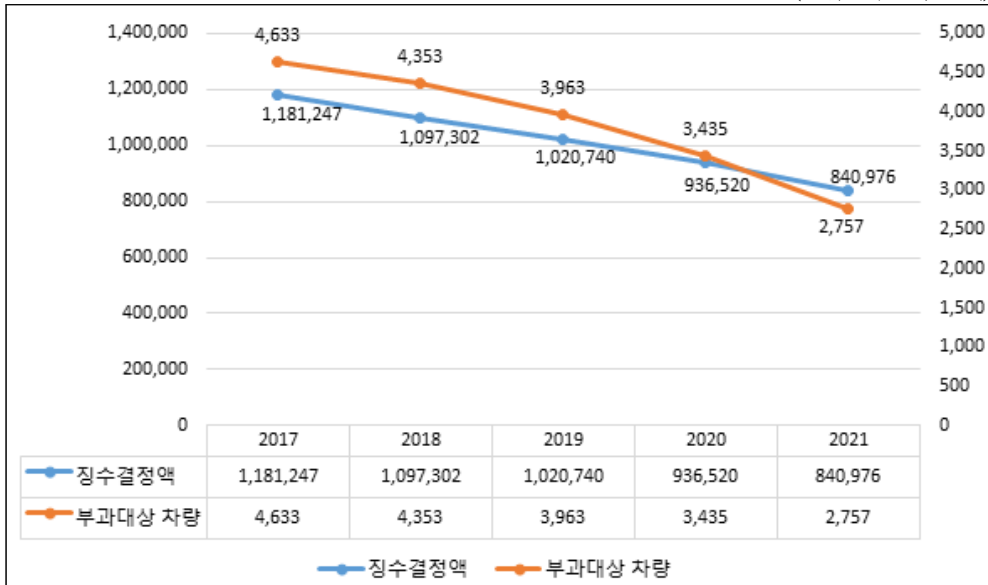
2015. 6. 9.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이하 생략)

11) 기존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외에 시설물도 있었으나, 20216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되면서 현재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부담금만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중 시설물 부문은 부담금 폐지 이전에 부과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체 징수액 중 매우 작은 비중(2020년 3.5%, 2021년 3.1%)을 차지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고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5년간(2017~202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 및 부과대상 차량 추이]

(단위: 백만원, 천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인 경유차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 소관 주요 특별회계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

12) 환특회계의 경우, 2021년까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았으며,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면서 환특회계로 배분되는 비율이 일부(2%p) 감소하여 2022년부터는 23%를 전입 받고 있다. 아울러,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 외에도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가. 현 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¹⁾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등의 스마트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9년 이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및 유충 발생 등 수돗물과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정수장 중심의 물 공급 관리체계를 급·배수관망으로 확대하며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예측·대응할 수 있는 ICT 기반의 상수도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부터는 도시침수나 지반침하 등 하수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처리장의 기능을 고도화하며 악취저감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2021년 예산 204억원 중 타 사업으로 이용²⁾하여 집행한 28억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76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0,400	20,400	0	△2,800	17,600	17,600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2-309

2) 환경부는 동 사업 예산 중 28억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및 집중대응 추진 등을 위한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으로 이용하였다.

동 사업은 첫째, 하수처리장 운영 과정의 주요요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제어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내역사업, 둘째, 하수관로에 실시간 수량·악취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ICT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도시침수와 악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하수관로 내역사업, 셋째, 하수도 시설(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등)의 내용연수 연장,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설물의 이력 관리, 자산상태를 데이터화 하는 등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하수도 자산관리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³⁾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스마트 하수처리장 운영 13개소, 하수관로 실시간 감시·제어 등 스마트 하수관로 10개소 및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에 10개소 등 총 3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325억원(국비 2,2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⁴⁾⁵⁾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하수처리 소과정에 대한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 제어·관리 등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 (총사업비) 3,325억원(국고 2,231억원)
- (사업기간) 2021 ~ 2024년
- (추진방식) 국고지원(보조율 50~70%)을 통한 지자체 시행
- (사업규모) 스마트 하수처리장 운영(13개소), 하수관로 실시간 감시·제어(수량, 악취 등)(10개소), 하수도 자산관리(10개소)

[연도별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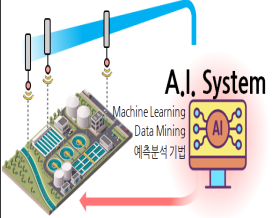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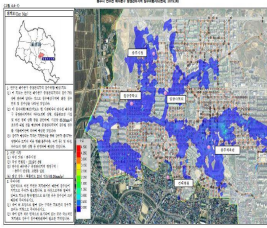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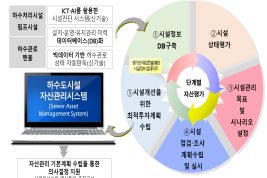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합계	2021	2022	2023	2024
소요예산(국비)	2,231	176	384	524	1,147

3) 환경부는 당초 2020년 예산의 '하수처리장 확충' 세부사업을 통해 지자체 2개소(공주, 김제)를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지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하수도시설 자산관리 체계구축' 세부사업(16억원)을 통해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시범적용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21년 예산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을 통합하여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세부사업에 관련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4)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70%로, 스마트 하수처리장 내역사업은 50%, 스마트 하수관로 및 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은 70%를 적용받는다.

5) 또한, 동 사업은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0호 나목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스마트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지능화	- 에너지 절감, 수질개선 등을 위해 ICT 기반 계측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 ('21) 중형(1만㎥/일 이하) 6개소 - ('22) 대형(1만㎥/일 초과) 7개소	
스마트 하수관로	도시침수 대응	- 강우 시 하수 월류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ICT 측정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수량 모니터링, 강우유출 시 물레이션, 하수도 시설 연계 운영 등 도시침수 대응체계 시범 구축 - 사업 대상: 총 5개소 - ('21~'22) 설계, ('23~'24) 공사	
	하수악취 관리	- 하수 악취저감을 위해 ICT 측정장비를 활용한 하수관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 저감장치 자동 운영 등 하수 악취 관리체계 시범 구축 - 사업 대상: 총 5개소 - ('21~'22) 설계, ('23~'24) 공사	
하수도 자산관리		- 하수도시설(처리장, 관로 등)의 내용연수 연장,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설물 이력 관리, 자산상태 빅데이터화, 데이터마이닝 등 자산관리체계 시범 구축 - ('22~'23) 5개소 ('23~'24) 5개소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추진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1년 중·소규모 하수처리장(1만㎥/일 이하) 6개소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비 94억원(국비), 도시침수 대응 5개소 및 하수악취관리 5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하수관로 구축 설계비 82억원(국비) 등 총 1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2021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추진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2021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노후화된 하수도로 인한 도시침수와 악취 발생 등 하수도 관련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20.7.28.)받은 후,⁶⁾ 2020년 9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스마트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관로,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등 각 내역사업별 사업대상을 선정하였다.⁷⁾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⁸⁾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7) 환경부에 따르면, 대상 시설의 적정성, 예산 확보방안, 지자체의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대상 선정기준]

구분	사업대상 선정기준
스마트 하수처리장	- 대상시설의 적정성, 시범사업의 적용성, 예산 확보방안, 지자체 추진의지 등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 침수위험, 피해이력, 하수도 전산화율 정도, 지자체 추진의지 등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	- 시설요건, 예산 확보방안, 지자체 추진의지 등
하수도 자산관리	- 시설용량 및 가동연수, 하수도 자산관리현황, 하수관로 정밀조사, 하수 도시설 기술진단, 예산 확보방안, 지자체 추진의지 등

자료: 환경부

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

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2020년 8월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동 사업의 총사업비 검토 결과⁹⁾가 환경부에 통보되었으나 검토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과정으로 인해 9월말이 되어야 국비가 교부되었다.

또한, 국비 교부 후 지자체 단위에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연말이 되어야 설계 발주 및 착수가 이루어져 전체 예산현액 176억원 중 6억 3,500만원(3.6%)만이 실집행되고 나머지 169억 6,400만원은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2022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1	스마트 하수처리장	9,422	9,422	9,422	9,422	-	9,422	635	8,786	0	6.7
	스마트 하수관로	8,178	8,178	8,178	8,178	-	8,178	0	8,178	0	0.0
	소계	17,600	17,600	17,600	17,600	-	17,600	635	16,964	0	3.6
2022	스마트 하수처리장	14,755	14,755	5,714	57,14	8,786	14,500	3,178	미정	미정	21.9
	스마트 하수관로	20,000	6,000	1,209	1,209	8,178	9,387	7,365	미정	미정	78.5
	하수도 자산관리	3,606	3,606	1,784	1,784	-	1,784	492	미정	미정	27.6
	소계	38,361	24,361	8,707	8,707	16,964	25,671	11,035	미정	미정	43.0

주: 2022년은 7월말 기준 집행 현황

자료: 환경부

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9)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당초 요구하였던 총사업비 3,642억원에서 318억원이 감액된 3,324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기준 2021년 스마트 하수처리장 사업대상 6개소 중 3개소는 공사 중, 2개소는 설계완료로 공사발주 준비 중, 나머지 1개소는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스마트 하수관로(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악취관리)는 사업대상 총 10개소 모두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도 연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스마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구축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 완료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약 6개월)을 고려할 경우, 2021년 예산 중 2022년으로 이월된 예산(약 170억원) 또한 2022년 하반기가 되어야 최종적인 실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을 통해 대규모(1만㎥/일 초과) 하수처리장 7개소에 대한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비 147억 5,500만원, 스마트 하수관로 구축 사업 대상에 대한 2차년도 공사비 총 200억원에 더해, 5개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36억 600만원 등 약 383억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2021회계연도의 사업 지연 문제는 2022년 당초 계획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진도율 및 예산의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¹⁰⁾

다만, 환경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동 사업의 불용예산액 약 140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로 예산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입장이나, 당초 예산 편성 시 지방비 편성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같은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 관련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0) 다만,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내용 중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은 대규모 하수처리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추진하며, 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사업 또한 5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에는 2021년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환경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집행 가능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¹¹⁾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 제17조제2항¹²⁾에서는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사업 부지확보, 관련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인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그러나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환경부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구축 사업 대상,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사업 대상 및 스마트 하수악취 관리 사업 대상 지자체 등 총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13) 이에 더해,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침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 지자체별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부처			보조사업자						
	예산액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강릉시	1,517	1,517	1,517	1,517	-	1,517	168	1,348	-	11.1
거창군	1,508	1,508	1,508	1,508	-	1,508	111	1,397	-	7.4
광양시	265	265	265	265	-	265	0	265	-	0.0
광주광역시	2,148	2,148	2,148	2,148	-	2,148	0	2,148	-	0.0
광주시	1,706	1,706	1,706	1,706	-	1,706	100	1,606	-	5.9
구례군	1,508	1,508	1,508	1,508	-	1,508	92	1,416	-	6.1
군포시	198	198	198	198	-	198	0	198	-	0.0
대구광역시	1,885	1,885	1,885	1,885	-	1,885	0	1,885	-	0.0
무주군	1,560	1,560	1,560	1,560	-	1,560	164	1,396	-	10.5
의성군	1,623	1,623	1,623	1,623	-	1,623	0	1,623	-	0.0
인천시	1,672	1,672	1,672	1,672	-	1,672	0	1,672	-	0.0
포항시	2,010	2,010	2,010	2,010	-	2,010	0	2,010	-	0.0
합계	17,600	17,600	17,600	17,600		17,600	635	16,964	-	3.6

주: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은 설계 완료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3~4개월)되고 설계 후 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였고,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 불용 시 2022년도 추가 편성이 곤란하여 2021년 하반기에 착수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전액 교부하였으며, 스마트 하수관로의 경우, 지자체의 연도내 사업 추진의지를 반영하고, 이월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불용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비를 전액 교부하였으나 재원협의 및 각종 행정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실적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예산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보조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 단위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상시 집행점검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및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차의 LPG차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현액 210억원 중 159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0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21,000	21,000	0	0	21,000	15,956	76.0	0	5,04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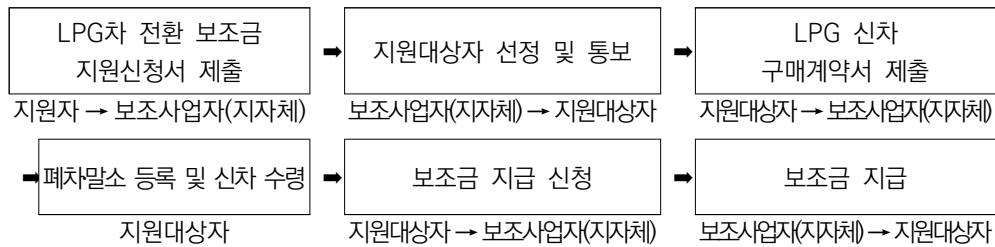
동 사업은 통학용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를 대상으로 LPG 신차 구입 시 해당 7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²⁾의 구매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0

2) LPG차량으로의 전환금 지원단가는 해당 500만원이었으나, 2021년 동 사업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단가를 해당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보조금 집행절차]



자료: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실질적인 수요 현황, 사업 추진여건 등을 검토하여 보급 계획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타 세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된 이래,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보급 계획 물량과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동 사업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주요과제 중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의 세부과제에 포함되었으며, 2025년까지 총 8만 8,000대의 어린이통학용 노후경유차³⁾를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하에 보급 계획 물량이 2017년 800대에서 최근 3년간 6,000대 규모로, 관련 예산(국고 기준)이 2017년 20억원에서 2021년 이후 210억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50호)」에 의거하여 배출가스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1~5등급을 부여받으며,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하여 0.560g/km 이상 발생하는 경유차를 의미한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연도별 보급 계획 물량 및 예산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계획 물량	800	1,806	2,272	6,000	6,000 ¹⁾	6,000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예산	2,000	4,516	5,700	15,000	21,000	21,000

주: 1) 당초 2021년 보급 계획 물량은 8,400대이었으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해당 지원 단가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급 물량이 6,000대로 조정되었음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은 최근 대폭 확대된 보급 계획물량 및 예산에 비해 사업 신청 유인 부족, 차량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예산 측면에서 최근 3년간(2019~2021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은 LPG차량 핵심부품 공급업체의 단산(19.4~8월)에 따른 차량 출고지연으로 인해 사업 신청자가 중도 포기하면서 실집행률(67.1%)이 저조하였다. 또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보육기관의 휴원이나 폐업 등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해 차량 교체수요가 부족하여 실집행 실적(45.1%)이 악화되었다.

이에 더해, 2021년은 환경부 차원에서 일부 예산(50억 4,4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159억 5,600만원을 지자체에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현액 200억 6,400만원 중 92억 7,600만원(46.2%)만이 집행된 상황으로, 부처 단위 불용액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집행률은 36.9% 수준으로 실집행 실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피보조-민간이전 기관 등)						
	예산	추경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8	4,516	4,516	4,516	4,516	75	4,591	4,471	30	107	97.4
2019	5,700	5,700	5,700	5,700	30	5,730	3,847	374	1,510	67.1
2020	15,000	15,000	14,063	14,063	389	14,452	6,512	2,374	5,565	45.1
2021	21,000	21,000	15,956	15,956	4,108	20,064	9,276	6,962	3,826	46.2
2022.3	21,000	21,000	11,361	11,361	6,962	18,327	2,289	미정	미정	12.5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사업 추진 중 LPG 통학차량의 모델이 변경되면서 약 6개월 간(‘21.4~’21.10월) 차량 공급이 중단되었고, 반도체 수급난으로 제작사의 월별 생산물량이 약 300~350대로 한정됨에 따라 공급이 지연되어 보조금 신청자의 구매의사 철회 및 사업 포기 또한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① LPG차 전환 지원금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300만원)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였고, ②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의 전제조건이었던 기존 노후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는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보유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과정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에도 실질적인 수요 현황이나 사업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매년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계획목표 대비 보급실적 부진 및 예산의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계획목표 대비 보급 실적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 본예산 계획물량(6,000대)과 전년도 이월물량(1,174대)을 합한 총 보급계획 물량 7,174대 중 2,637대(36.8%)가 보급되고 1,980대는 2022년으로 이월되는 등 보급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에도 3월말 기준 전체 보급계획 물량 7,980대 중 680대만이 보급되고 있는바, 수요 부족 및 사업 중도 포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목표 및 예산을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다.⁴⁾

4) 다만, 2022년에는 제작사의 생산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편성을 진행하였고, 동 사업의 예산을 210억원(6,000대)에서 120억원(3,429대)로 감액 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집행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대)

구분	보급계획 물량	전년이월 물량	추경증가 물량	총 보급계획 물량	실제 보급물량 (출고기준)	다음연도 이월물량
2018	1,800	30	0	1,830	1,781	8
2019	2,272	8	0	2,280	1,557	111
2020	6,000	111	0	6,111	2,245	1,174
2021	6,000	1,174	0	7,174	2,637	1,980
2022.3	6,000	1,980	0	7,980	680	미정

주: 일부 불용으로 인해 실제 보급물량 및 다음연도 이월물량의 합과 총 보급계획 물량과의 차이가 발생함

자료: 환경부

특히,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2021.4.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⁵⁾이 마련되면서 동 사업의 추진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예산 및 지원물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대기관리권역법」 부칙⁶⁾에 따라 2023년 4월 3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 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LPG차 등 친환경차가 아닌 경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과제로 노후경유차 감축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까지 5등급 노후경유차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일: 2023.4.3.)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7983호, 2021.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환경부 소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⁷⁾ 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송 부문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확대한다는 계획인 바,⁸⁾ 조기폐차 확대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인해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인 어린이통학차량 중 노후경유차⁹⁾ 물량 자체가 감소하는 등 보급 계획물량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요 확보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실질적인 수요 현황이나 사업 추진여건, 반도체 수급난 등에 따른 제작사의 차량 생산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급 계획물량을 현실화하고 예산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부가 운영 중인 타 세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필요성 및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21년 34만대(3,264억원) → 2022년 35만대(3,360억원)
(전기차) 2021년 23.8만대 → 2022년 43.3만대 → 2025년 113만대
(수소차) 2021년 1.9만대 → 2022년 6.7만대 → 2025년 20만대

9) 참고로, 최근 경찰청의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현황(2022.1.31. 기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인 어린이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대수는 24,074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타당성조사 절차 시행 전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 방지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¹⁾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유출 등으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²⁾의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국고보조율 70%)이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현액 666억 8,500만원 중 567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9억 4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1회계연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단지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66,685	66,685	0	0	66,685	56,781	100.0	9,904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당초 동 사업은 낙동강수계에 있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 3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³⁾으로 전국 수계의 일정 규모⁴⁾ 이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6

2) 완충저류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로 및 차단시설과 유출된 폐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저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現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생략)

가 의무화되면서 사업대상이 확대되었다. 2022년 5월말 기준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은 총 152개소로, 그 중 24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36개소는 설치 진행 중이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 및 추진현황]

구 분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근거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환경보전법」 ¹⁾ 제21조의4
설치범위	낙동강 수계	전국(낙동강 수계 포함)
국고보조율	100%	70%
대상시설	17개	152개
설치진행 또는 완료시설 ²⁾	17개	(설치 완료) 24개소 (설치 중) 36개소

주: 1) 2018년 1월 개정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2) 설치 완료 및 진행 중인 시설은 2022년 5월말 누적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2021년 예산을 통해 계속사업 23개소 및 신규사업 5개소 등 총 28개소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별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연도내 실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제외한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現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가 해당된다.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절차가 시행되기 전까지 실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경우,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2017년에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90.0%로 양호하였으나, 사업 대상 및 관련 예산 규모가 확대된 2018년 이후부터는 설계 또는 공사 착공 지연, 부지매입 지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설치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집행 실적이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예산현액 810억 1,900만원 중 551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7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억 700만원은 불용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68.1%로 전년 대비 일부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2018~2021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2021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본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7	9,769	9,769	9,769	500	10,269	9,240	1,029	-	90.0
2018	35,247	35,247	35,247	1,029	36,276	18,390	17,886	-	50.7
2019	32,567	32,567	32,567	17,886	50,453	24,276	26,177	-	48.1
2020 ¹⁾	53,686	46,378	46,378	26,177	72,555	47,855	24,238	462	66.0
2021	66,685	66,685	56,781	24,238	81,019	55,165	24,746	1,107	68.1

주: 1)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3억 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음

자료: 환경부

구체적으로, 환경부가 2021회계연도에 추진한 24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19개 지자체의 예산현액 790억 1,900만원 중 535억 8,500

만원(67.8%)이 실집행되었고, 신규사업 5개 지자체의 경우 부처 단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20억원 중 15억 7,800만원(78.9%)이 실집행되어 상대적으로 계속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실집행 실적이 70% 미만으로 부진한 총 8개 지자체 중 7개가 계속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로 확인된 바, 설치장소 변경이나 시설용량 조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확정 절차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실집행 부진(70% 미만) 지자체의 부진 사유]

(단위: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실집행률	실집행 부진 사유
광주광역시 (계속)	1.5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확정 절차(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하남일반산단)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1월 ~ '21.8월, 총사업비 신규 등록('21.10월, 833억원), '22년 사업 예산은 미편성
대전광역시 (계속)	0	- 실시설계('21.8월 완료), 설계 VE 및 자문 심의, 총 사업비 확정 절차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대전산업단지)
충북 제천시 (계속)	7.7	- 토지보상('20.6월), 설계 VE 및 자문 심의, 총 사업비 확정 절차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제천 제1산업단지)
경북 경주시 (계속)	19.9	- 실시설계 발주('20.6월 완료), 설계 VE 및 자문 심의, 총 사업비 확정 절차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건천일반산단) ※ '22년 사업예산 미 반영
전남 광양시 (계속)	12.5	- 시설용량 조정, 설계 VE 및 자문 심의, 총 사업비 확정 절차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광양국가산단)
인천광역시 (신규)	15.6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기간 미도래로 설계비 미집행(검단일반산단)
전남 영암군 (계속)	4.1	- 총사업비 관리대상(500억원 이상) 변경 절차 진행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지(대불국가산단) ※ '22년 사업예산 미 반영
충남 청양군 (계속)	63.0	- 철근 수급 부족 등으로 공사추진 지연(정산농공단지) ※ '22.8월 준공으로 전 사업비 집행 가능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및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는 완충저류시설 사업 절차상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자체가 수립한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체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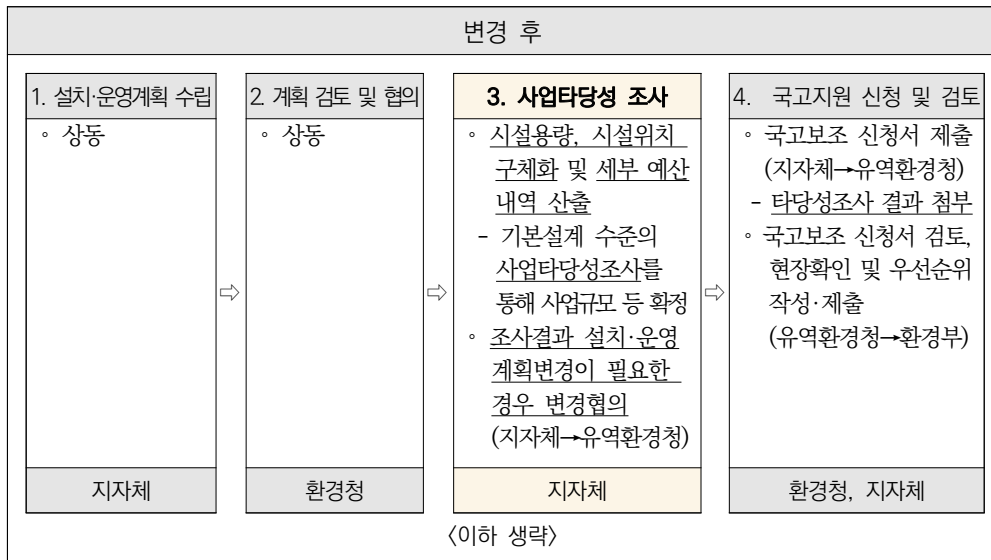
인 검토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동 사업은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시설용량 및 설치 예정부지를 바탕으로 수립한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근거하여 국고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의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유역환경청의 검토 절차 또한 지자체가 대략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한 계획에 근거하여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이 편성된 이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 또는 예산 규모의 변경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총사업비 변경협의 등의 추가적인 행정절차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절차(변경 전·후 비교표)]

변경 전		
1. 설치·운영계획 수립 ◦ 시설위치 및 용량산정 ◦ 저류 및 처리방안 검토 ◦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 요청 (지자체→유역환경청) 지자체	⇒	2. 계획 검토 및 협의 ◦ 계획 및 관련자료 검토 ◦ 협의결과 보고(통보) (유역환경청→환경부, 지자체)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3. 국고지원 신청 및 검토 ◦ 국고보조 신청서 제출 (지자체→환경청) ◦ 국고보조 신청서 검토, 현장확인 및 우선순위 작성·제출(유역환경청→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이하 생략〉		



자료: 환경부

다만,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환경부예규 제694호, 2021.8.24.)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검토·협의 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전에 시설용량이나 사업 부지, 소요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월별 추진실적이나 분기별 집행점검 회의 및 반기별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내역 간 예산 조정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는 2024년 예산 편성 시 국고 지원을 신청하는 신규사업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22년 사업 및 2023년 추진될 예정인 사업 대상은 동일한 문제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속 사업의 경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발주·계약 전에 설계 적정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유역환경청의 실시설계 협의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절차가 시행되기 이전에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점검, 국고보조금 교부 시 사업의 실현가능

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오염원 관리를 위한 동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가능성 및 위험성 정도,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인 조건, 경제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동 사업을 통해 완충저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관할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수가 적거나, 산업단지로 인한 수질오염 등 사고 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설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⁵⁾

실제로, 2022년 5월말 기준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대상 대비 현재까지 설치 완료 및 설치 중인 지자체와 미설치된 지자체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는 18개 사업대상 중 11개소에 설치가 완료되고 5개는 설치가 진행 중으로 향후 2개소에 대한 설치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7개 사업대상 중 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총 21개 사업대상 중 1개소에서만 설치가 진행 중이며, 충청남도는 총 16개 사업대상 중 2개소, 전라북도 또한 14개 사업대상 중 3개소에서만 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실적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5)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2021년) 연평균 약 5개소의 신규사업이 신청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분포 밀도가 높고 수질이나 폐수와 관련된 사고 경험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수요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사업 추진현황]

(단위: 개소)

구분	대상	설치			미설치			
		계	설치 완료	설치 중	소계	협의 완료	협의 중	계획 미제출
서울특별시	1	0	0	0	1	1	0	0
부산광역시	4	1	0	1	3	2	1	0
대구광역시	7	6	6	0	1	0	1	0
인천광역시	8	1	0	1	7	7	0	0
광주광역시	7	2	0	2	5	2	3	0
대전광역시	2	2	0	2	0	0	0	0
울산광역시	9	3	1	2	6	4	2	0
세종광역시	3	0	0	0	3	3	0	0
경기도	21	1	0	1	20	14	6	0
강원도	2	0	0	0	2	2	0	0
충청북도	22	12	1	11	10	7	3	0
충청남도	16	2	0	2	14	11	3	0
전라북도	14	3	0	3	11	6	5	0
전라남도	7	4	2	2	3	1	1	1
경상북도	18	16	11	5	2	0	1	1
경상남도	11	7	3	4	4	3	1	0
소 계	152	60	24	36	92	63	27	2

주: 2022년 5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자체는 단지 조성 시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하고 있으나,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12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동 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⁶⁾ 방식으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자

6) 민간투자사업은 도로·항만·철도·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해당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크게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시설 준공 이후 소

체의 초기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 사업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정읍과 여수 등 2개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 승인 후 지방의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개 지자체(창원)의 경우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쳐 2023년 한도액을 신청하는 등 아직까지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임대형 민자사업(BTL)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현황]

(단위: 억원, m³/일)

지자체 (방식)	대상 산업단지	사업비	시설용량	진행사항
정읍시 (민간제안)	정읍 제1~3 일반산단	302 (한도액)	10,458	- 적정성 검토완료('20.9.28.~'21.5., 한 국환경공단) - '22년 한도액 확정('21.12.) - 지방의회 의결 절차 준비 중
여수시 (민간제안)	여수 국가산단	3,058 (한도액)	180,300	- 적정성 검토완료('20.9.15.~'21.8.9.,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타 면제사업 선정('21.4.) - '22년 한도액 확정('21.12.) - 지방의회 의결 절차 준비 중
창원시 (민간제안)	창원시 산업단지	3,508 (제안액)	118,800	- 적정성 검토완료('21.4.12.~'22.5.18.,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타 면제사업 선정('21.8.) - '23년 한도액 신청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기존의 국고 지원 방식에 더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등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지자체의 사업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오염원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민간)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며,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추가적인 지연 방지 노력 필요

가. 현 황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¹⁾은 전기차 보급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 및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2021년 예산 현액 16억 1,200만원 중 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1,520	1,520	92	0	1,612	918	56.9	476	21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88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경북 포항 일대의 산업단지 지역에 개별 기업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시험, 안전성 테스트 등을 지원하는 진흥시설 및 연구시설과,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집적기반을 조성하고 연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 및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는 기업집적단지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8-319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개요 및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용																																								
총사업비	- 48,824 (국비 100%)																																								
사업기간	- (당초) 2020 ~ 2023년																																								
조성지역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및 영일만1·4 일반산단(총 309만㎡)																																								
주요시설	- (시설구성) 연구지원단지(진흥시설, 연구시설) + 기업집적단지 ◦ 진흥시설(종합정보지원센터) : 클러스터 통합관리, 성능평가 인증, 폐배터리 이력관리, 전시·홍보 및 거버넌스 운영 ◦ 연구시설(자원순환연구센터) : 유가금속 분리 실증시험, 안전성 테스트, 폐수처리공정 등의 연구시설 구축																																								
연도별 소요예산 ¹⁾	<table><tr><th>구 분</th><th>합계</th><th>2021</th><th>2022</th><th>2023</th></tr><tr><td>합 계</td><td>48,824</td><td>1,520</td><td>22,072</td><td>25,232</td></tr><tr><td>건축공사비</td><td>43,284</td><td>-</td><td>18,634</td><td>24,650</td></tr><tr><td>연구장비비</td><td>-</td><td>-</td><td>-</td><td>-</td></tr><tr><td>용지구입비</td><td>3,000</td><td>-</td><td>3,000</td><td>-</td></tr><tr><td>실시설계비</td><td>1,520</td><td>1,520</td><td>-</td><td>-</td></tr><tr><td>감리비</td><td>970</td><td>-</td><td>388</td><td>582</td></tr><tr><td>시설부대경비</td><td>50</td><td></td><td>50</td><td>-</td></tr></table>	구 분	합계	2021	2022	2023	합 계	48,824	1,520	22,072	25,232	건축공사비	43,284	-	18,634	24,650	연구장비비	-	-	-	-	용지구입비	3,000	-	3,000	-	실시설계비	1,520	1,520	-	-	감리비	970	-	388	582	시설부대경비	50		50	-
구 분	합계	2021	2022	2023																																					
합 계	48,824	1,520	22,072	25,232																																					
건축공사비	43,284	-	18,634	24,650																																					
연구장비비	-	-	-	-																																					
용지구입비	3,000	-	3,000	-																																					
실시설계비	1,520	1,520	-	-																																					
감리비	970	-	388	582																																					
시설부대경비	50		50	-																																					

주: 1)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5억원은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로드맵 연구를 위해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총사업비에는 미포함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설계 용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향후 공사 계약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등에 대한 사전준비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9년 7월 규제샌드박스를 핵심으로 하는 총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선정·발표하면서 경북 포항 지역을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규제자유특구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차 폐배터리 연구 및 실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동 사업의 입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1년 예산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클러스터 실시설계비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0년 추진한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5월 7일로 계약 체결됨에 따라 2021년 실시설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는 동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2021.5.14.)한 이후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2021년 7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후, 8월 23일 조달청의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다. 하지만 이후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사업 예산 승인(2021.9.27.) 및 총사업비 신규등록(2021.10.2.) 절차, 실시설계 공모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경과]

일정	구분
'20.7월	-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타당성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비)
'20.9.8. ~ '21.5.7.	- 클러스터 구축 입지 타당성 및 로드맵 마련 연구 추진
'20.12월	- 2021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수시배정사업)
'21.5.14.	-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21.7.6.	- 대형공사 입찰방법(기타공사) 결정(국토교통부)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건축공간연구원)
'21.7.28.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기획·설계관리)
'21.8.23.	- 공공건축 심의 완료(조달청)
'21.9.27.	- 2021년 예산 수시배정 사용 승인(기획재정부) - 조달청 설계용역 발주의뢰
'21.10.2.	- 총사업비 등록(기획재정부)
'21.12월	- 클러스터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21.12. ~ '22.10.)

자료: 환경부

이로 인해, 2021회계연도의 경우, 실시설계비로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 15억 2,000만원 중 계약낙찰액(11억 9,000만원)의 70%인 8억 4,9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친 실정이다.

특히, 2022년 예산에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 등 총 190억 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므로 실시설계 완료 이후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 계약체결 여부 등에 따라 2022년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0	500	500	370	74.0	92	38
2021	1,520	1,520	1,612	918	56.9	476	218
2022.5	19,072	0	476	0	0.0	0	0

자료: 환경부

다만, 환경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 190억 7,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는 등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로 예산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입장이나, 이 경우 클러스터 구축 및 완공까지 필요한 사업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초 전기차 보급 및 관련 산업 확대에 따른 전기차 사용후 폐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대응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 하에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히 편성하여 추진한 동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설계 용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향후 공사 계약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¹⁾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되었던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7.1)에 따라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현액 391억 3,700만원 중 295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83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2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28,665	28,665	10,472	0	39,137	29,578	75.6	8,310	1,249
통합허가 운영기반 구축	17,846	17,846	10,062	747	28,656	20,447	71.4	7,704	50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지자체에서 물·대기·폐기물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하고 관리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제도(2017.1.1. 시행)로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인·허가,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주기적인 허가 재검토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장²⁾은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 사업장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2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

(수질 또는 대기 1·2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배출사업장 8만여개 중 약 1,300여개(1.6%)에 불과하지만 배출량은 전체 사업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기존에 오염매체별로 최대 73종에 달했던 환경허가 신청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시키고, 19개 업종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³⁾을 마련·보급하며, 통합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 등에 관한 주기적인 재검토 및 사후관리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세부내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 (허가통합) 수질·대기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 최대 73종의 신청서류가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 - (허가검토) 사업장의 전체적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및 '허가조건' 부여 ※ 허가기준: ①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②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 환경오염사고대책 적정 수립
19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마련·보급	- 업종별 기술작업반(산업계 참여)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마련 및 주기적으로 검토·보완 ※ 선정기준: 현장적용 가능성, 경제성, 환경개선 효과, 에너지 및 자원이용 효율 등
허가조건 등 주기적 재검토로 시설 적정운영 지원	- 최초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5~8년)하고 필요시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여건 변화 반영 - 허가정보(신청서·허가서 등)를 적극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허가 소과정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구축·운영

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을 의미한다.

구 분	세부내용
사후관리 선진화를 통해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로 전환	- 사후관리 빈도는 하향(연 4~20회 → 1~3년 1회)하되 정밀진단(0.5일 → 5~8일 수준)을 실시하고, 적발이 아닌 기술지원 방식으로 전환 - 자가측정 최소 측정빈도(분기 1회~연 1회)를 규정하고, 사업자는 최소 측정빈도 내에서 자율적인 모니터링 계획 수립·이행 - TMS 및 자가측정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설 운전조건과 오염배출 등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 오염 과다배출 원인 분석·제시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첫째,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연도별 적용대상 업종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등 동 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통해, ①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허가 검토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사업장 현장조사, 회의 지원 등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관리’ 내역사업, ② 대기·수질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실 구축 및 관련 장비 구입 등을 위한 ‘통합허가 운영기반 구축’ 내역사업, ③ 통합허가 사업장의 공정 전과정에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허가사업장 혁신기반 구축’ 내역사업, ④ 통합허가제도 발전방안 관련 연구용역 및 담당자 교육·홍보 등 ‘통합허가제도 운영’ 내역사업, ⑤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검토, 사업장 확인, 오염도검사 등 업무지원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정책 지원’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사업 내용 및 2021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집행액	사업 내용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관리	649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변경)허가 검토를 위한 협의체 운영, 사업장 현장조사, 회의, 자문 등을 지원
통합허가 운영기반 구축	20,447	-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한 대기·수질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실 구축 및 유지관리 지원
통합허가사업장 혁신기반 구축	1,522	- 통합허가 사업장의 공정 전과정에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IoT 등 측정기기 부착 시범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집행액	사업 내용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관리	649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변경)허가 검토를 위한 협의체 운영, 사업장 현장조사, 회의, 자문 등을 지원
통합허가제도 운영	3,155	- 통합허가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용역, 담당자 교육·홍보 등 제도운영 및 고도화 지원
통합환경관리정책 지원	3,805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검토, 사업장 확인, 오염도검사 등 업무지원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업종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2017년 1차 적용대상은 전기업(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소각) 관련 업종, 2018년 2차 적용대상은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유기) 관련 업종, 2019년 3차 적용대상은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 비료 등, 2020년 4차 적용대상은 펄프, 종이, 전자제품 관련 업종, 2021년 5차 적용대상은 플라스틱, 반도체 등으로 총 19개 업종의 1,305개 사업장(21.12월 기준)을 대상으로 통합허가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 업종 및 사업장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종수(19개)	3개	3.5개	3.5개	3개	6개
사업장수	251개	241개	153개	142개	518개
업 종	전기업 (발전) 증기공급 폐기물처리업 (소각)	비철금속 철강제조 합성고무 기초화학 (유기)	석유정제 비료제조 화학제품 기초화학 (무기)	펄프·종이 기타 종이 전자제품	플라스틱 섬유제품 알루미늄 도축·육류 자동차부품 반도체

주: 2021년 12월 기준

자료: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연도별 허가검토 및 완료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행 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에 따라 4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허가 검토 및 완료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1차

적용대상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2020년을 기점으로 통합허가 완료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은 허가완료 실적이 전무하였으나, 2018년 2개소, 2019년 68개소, 2020년 224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239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검토 및 허가완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상)	2023 (예상)	2024 (예상)
허가검토 사업장 (총계)	-	12	182	542	786	669	834	1,820
허가완료 사업장 (총계)	-	2	68	224	239	155	186	515
1차 적용대상	-	2	63	212	15	-	-	-
2차 적용대상	-	-	3	9	217	-	-	-
3차 적용대상	-	-	2	3	4	155	-	-
4차 적용대상	-	-	-	-	-	-	186	-
5차 적용대상	-	-	-	-	3	-	-	515

주: 1. 2018~2021년은 실제 허가가 완료된 건수 기준이며, 2022~2024년은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사업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예측치(신규사업장은 제외) 기준임

2. 상기 허가변경허가 등 건수는 추후 허가과정에서 종류모 변경, 폐업, 신설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자료: 환경부

또한, 2019년 3차 적용대상 업종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의 경우, 5월 말 기준 17개 사업장이 허가를 완료하여 당초 2022년 통합허가 완료 목표(예측)인 155개 사업장에 비해 미진한 측면이 있으나, 허가 완료에 필요한 절차 및 절차별 소요기간(1개 사업장별 허가 완료까지 평균 약 35~40일 소요) 등을 고려하면 연도 말에는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별 허가완료 실적]

(단위: 개소)

구분	1차 적용 (‘17~’20)		2차 적용 (‘18~’21)		3차 적용 (‘19~’22)		기타 ¹⁾	합 계
	발전·증기	소각	철강비철	합성고무 플라스틱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반도체 등	
허가 완료	300		233		17		4	554

주: 1) 4차년도(펄프종이, 전자제품 등) 및 5차년도(플라스틱, 섬유제품, 알콜음료, 반도체 등) 적용업종

1. 허가완료 실적은 2022년 5월말 기준임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 및 제도의 운영에 따른 성과 및 환경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허가완료 사업장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환경설비 투자유도액 규모(누적 기준)는 2019년 2조 2,000억원에서 2021년 12조 6,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실적(누적 기준)은 2019년 88.4%에서 2021년 83.3%로 감소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율(누적 기준) 또한 2020년 39.5%에서 2021년 32.9%로 감소하는 등 동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환경지표에 대해서는 개선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연도별 성과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허가완료 실적	누적	70개소	294개소	533개소
	당해연도	68개소	224개소	240개소
최적가용기법 적용실적	누적	88.4%	87.7%	83.3%
	당해연도	88.9%	87.7%	78.0%
미세먼지 저감율	누적	29.3%	39.5%	32.9%
	당해연도	29.3%	35.2%	10.4%
환경설비 투자유도액	누적	2조 2천억원	7조 4천억원	12조 6천억원
	당해연도	2조 2천억원	5조 2천억원	5조 2천억원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1차 적용대상인 발전소나 폐기물 소각시설 등은 대표적인 환경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에 해당하여 타 업종에 비해 강화된 배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적가용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철강, 비철 금속, 합성고무·합성수지 제조업 등 2021년 유예기간이 종료된 2차 적용대상의 경우, 발전소 또는 소각시설에 비해 배출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최적가용 기법 적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⁴⁾

또한, 미세먼지 저감율의 경우,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시 발전과 증기, 폐기물 소각 업종의 ‘먼지’ 항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였고,⁵⁾ 해당 업종들이 2020년에 집중적으로 통합허가를 완료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율이 증가 하였으나, 2021년에는 철강·비철·기초화학 업종에 대한 허가가 주로 진행되면서 전년 대비 미세먼지 저감율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및 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장별 최적의 환경관리방안을 적용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통합허가를 완료하는 것에 더해 최적가용기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검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각 연도별로 상이한 상황이므로, 적용대상 업종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활용하여 동 제도의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험실 등 측정분석체계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동 제도가 안정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예시)

구 분	먼지(mg/Sm³)	황산화물(ppm)	질소산화물(ppm)
발전소(석탄)	5	25	15
소각시설	10	20	50
철강 제조업 (가열로 기준)	10	45	80
비철금속제조업	10	45	60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를 바탕으로 일부 항목 재작성

5)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2020-119호)

- 발전·증기·소각업의 먼지항목 한계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의 40~60%
- 나머지 업종의 먼지항목 한계배출기준은 최대배출기준의 70%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으로 전국 대형사업장(1~2종)에 대한 허가 및 관리 권한이 지자체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9년부터 '통합허가 운영 기반 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수도권과 호남권역, 영남권역, 중부권역 등 권역별 오염물질 측정·분석 및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검토·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실 구축 및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 내역사업 예산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된 수도권유역환경청의 실험실 구축 및 장비도입 지연으로 인해 집행률이 78.3%에 그쳤고, 2020년의 경우, 수도권에 더해 호남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실험실 구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확대되었으나 경관심의, 시설보완 관련 협의, 내진설계 미비에 따른 설계변경, 공공건축물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3.7%로 더욱 악화되었다.

[통합허가 운영기반 구축(실험실 등 측정분석체계 구축) 사업 연도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9	-	5,694	-	-	5,694	4,456	78.3	1,009	229
2020	21,294	17,486	1,009	-	18,495	8,076	43.7	10,062	357
2021	17,846	17,846	10,062	748	28,656	20,447	71.3	7,704	505
2022	10,705	10,705	7,704	-	18,409	5,590	30.4	미정	미정

자료: 환경부

이에 더해, 2021회계연도에는 전국 단위로 증가하는 통합허가사업장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측정·분석·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부권역(금강유역환경청)의 실험실 구축을 신규 추진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 건물 하중이나 건폐율 초과 등 건축공사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 공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현액 286억 5,600만원 중 71.3%인 204억 4,700만원이 집행되었고 77억 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억 5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다.

[권역별 실험실 구축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현황]

구 분		당초 계획	실제 추진현황
수도권청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준공	'19.8 ~ '19.11 '19.12 ~ '20.6 '20.7	(2층) '19.8 ~ '19.11 / (3층) '20.2 ~ '20.5 (2층) '20.2 ~ '20.11 / (3층) '20.12 ~ '21.1 '21.04
낙동강청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준공	'20.1 ~ '20.3 '20.2 ~ '20.6 '20.2 ~ '20.6	'20.1 ~ '20.12 '20.11 ~ '21.8 '21.8
대구청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준공	'20.3 ~ '20.5 '20.6 ~ '20.12 '20.12	'20.4 ~ '20.8 '20.10 ~ '21.5 '21.6
영산강청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준공	'20.4 ~ '20.6 '20.7 ~ '20.12 '20.12	'20.3 ~ '20.10 '20.11 ~ '21.8 '21.8
금강청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준공	'21.2 ~ '21.5 '21.6 ~ '21.11 '21.12	'21.3 ~ '21.11 '22.1 ~ '22.7 '22.7(예정)

자료: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 이후, 1) 적용대상 업종 및 허가대상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 물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⁶⁾ 2)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추후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⁷⁾ 등을 고려할 경우, 권역별로 추진 중인

6)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전협의, 변경허가 및 신고, 허가재검토 등 환경부에서 검토해야 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 사업장 수가 총 3,323개소로 예측되는 등 오염물질 측정·분석 물량 소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검토 및 허가완료]

(단위: 개소)

구분	1차 적용대상	2차 적용대상	3차 적용대상	4차 적용대상	5차 적용대상	합계
2022~2025년 허가검토 사업장 예측치	541	369	556	572	1,285	3,323

자료: 환경부

7)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허가완료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은 2019년 2개소, 2020년 70개소,

실험실 및 장비 구축 사업의 지연 문제로 인해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부는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험실 등 측정분석체계 구축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동 제도가 안정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1년 294개소에서 대폭 증가하여 2022년 533개소, 2023년 688개소, 2024년 874개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검토 및 허가완료]

(단위: 개소)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상)	2023 (예상)	2024 (예상)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수	-	-	2	70	294	533	688	874

자료: 환경부

가. 현 황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사업¹⁾은 홍수에 취약한 지류·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홍수정보 수집센서를 확충하고, 수위·강수량 등 정보를 수집·저장하여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며,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홍수 분석 및 예측으로 홍수예보의 시간적·공간적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환경부는 2021년 신규 편성된 동 내역사업의 예산현액 108억원 중 10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49,851	49,851	89	-	49,940	46,556	93.2	2,446	938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10,800	10,800	-	-	10,800	10,680	98.9	39	8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규모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나, 홍수·치수대책은 큰 규모의 하천 또는 국가하천 본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규모의 지류 및 지방하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²⁾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2038-319

2) 환경부에 따르면, 2017~2019년 하천에서 발생한 총 231건의 홍수피해 중 제2지류 이하(제3지류 포

특히, 현재 홍수특보지점은 인구 및 재산이 집중된 국가하천 본류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지류·지방하천의 홍수대응이나 주민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바, 환경부는 2021년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2023년까지 총사업비 498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홍수 취약하천을 중심으로 홍수정보 수집센서를 확충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적용한 홍수분석 및 예측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사업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총사업비		- 498억원 (국비 100%)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 2021 ~ 2023년 - 홍수 취약하천(100개소)에 홍수정보 수집 센서 확충 및 홍수대응 빅데이터 구축 - AI 분석을 통한 홍수예보의 시간적·공간적 확대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비 고		
홍수센서	빅데이터 수집	• 전국 3,855개 지류·지천 중 홍수 발생우려가 높은 100개소를 대상으로 수위관측소 설치					
전파강수계	정보수집 고도화	• 면적단위 실시간 강수량 관측을 위한 전파강수계 28개소 설치					
AI 홍수예보 플랫폼	홍수예보 자동화	• 수집된 홍수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기반 홍수분석·예보 시스템 개발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98	-	108	183	207
		① 홍수센서	340	-	102	102	136
		② 전파강수계	56	-	4	26	26
		③ AI 홍수예보 플랫폼	102	-	2	55	45

자료: 환경부

함)에서 발생한 홍수는 167건(72%)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류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 분석의견

2021년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2021년 동 내역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① 지류·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위관측소(홍수센서) 30개소 및 전파강수계 2개소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예산 106억원과, ② AI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ISP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 등 총 1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106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1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코드)	예산액	추경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420-02	400	400	-	400	355	88.8	39	6
420-03	10,300	10,300	-	10,300	10,235	99.4	-	65
420-05	100	100	-	100	90	90.0	-	10
합 계	10,800	10,800	-	10,800	10,680	98.9	39	81

주: 1.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 각 내역사업별 설계비와 공사비 등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세부 비목별 현황으로 제시

자료: 환경부

동 내역사업 중 ‘AI 홍수예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홍수대응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으로, 환경부는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도 예산(2억)을 확보하였다.³⁾

3)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 내에 편성된 지류·지방하천 수위관측소(홍수센서) 설치 사업(총 100개소)은 기존 세부사업(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위관측소 신규 설치 사업을 ‘수문조사 기본계획’ 및 ‘국가수문조사망’ 계획에 따라 3년 내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수위 데이터는 환경부 소속기관인 각 유역별 홍수통제소에서 기 운영 중인 수위 데이터를 보강하는 차원의 사업이므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법」(現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⁴⁾ 등에 따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現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⁵⁾에 반영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보화사업에 해당하므로,⁶⁾ 환경부는 2021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 동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비롯한 관련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⁷⁾

또한, 환경부는 신규사업 추진 이전에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관련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고 2021년 예산을 통해 기본계획 및 ISP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ISP 설계 및 검토,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조달청을 통한 용역

하고 있다.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과 시행계획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항을 점검·분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확인 결과,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새로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1년 추진된 정보화사업들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6)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7)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규 추진되는 사업과 기존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정보화시스템 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의 방향성이나 지침 등에 부합하여 정보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계약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해 2021년 10월 계약이 체결되어 2022년 4월이 되어서야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사업 기본계획/ISP 용역 계약 현황]

구분	세부내용
용역명	- AI 홍수예보 플랫폼 기본계획 수립
과업기간	- 2021.10.6. ~ 2022.4.4.(180일)
계약금액	- 194,000,000원
계약방법	- 일반경쟁(수의)
과업수행사	- 한국토코넷(주), 주식회사 에이치투알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절차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검토 절차 등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¹⁾은 미세먼지 환경현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대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 및 사업화까지 연계·융합할 수 있는 청정대기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사비와 감리비, 부지매입비 등으로 편성된 2021년 예산 146억원 중 타 사업으로 이용²⁾하여 집행한 52억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00억 700만원 중 7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5억 2,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00	14,600	607	△5,200	10,007	7,482	74.8	0	2,52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사업비 493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개별 기업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및 성능시험 시설, 산업·수송 등 분야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 저감을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 시설 및 진흥시설 등을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의 주요 소재·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3

2) 환경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공사비 예산 중 52억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및 집중대응 추진 등을 위한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으로 이용하였다.

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제품화·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³⁾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및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산업 관련 연구개발·실증화, 진흥 및 생산시설 등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총사업비		- 49,328(국비 100%) ¹⁾	
사업기간		- 2020 ~ 2023년(당초: 2020 ~ 2022년)	
사업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원	
사업규모		- 건축물 3개동, 부지면적 29천㎡, 연면적 13천㎡	
주요시설		- 실증화시설(산업·수송분야), 테스트베드, 입주기업지원 등 진흥시설	
연차별 예산	2020	1,899	-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021	14,600	- 부지매입비(7,500) - 공사비(6,842): 총 공사비 34,210백만원의 약 20%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258)
	2022	14,200	- 공사비(13,684): 총 공사비 34,210백만원의 약 40% -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516)
	2023	미정	-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500억원 이상)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 있어 '23년 예산은 미정
	합계	49,328	

주: 1) 환경부는 당초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45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감액분 등을 고려하여 3차에 걸쳐 총사업비를 493억원으로 조정하였음

자료: 환경부

3) 동 사업의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부의 국고지원을 통해 수송·산업 분야의 실증화시설 및 테스트베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한 후 향후 전문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클러스터가 조성된 지자체(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대기분야 기업의 입주방안을 마련하고 생산기업 유치를 통해 실제 산업화를 도모하는 등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당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이래 설계 변경, 총사업비 협의 및 향후 진행될 예정인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에 따른 장기간의 사업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점검·검토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련 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바, 환경부는 산업·수송 등 대기환경 분야의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제품화·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1년 예산에서는 설계 용역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클러스터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건설보상비(부지매입비) 등 146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0년 추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심의 절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를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2020년 12월말에 체결되면서 설계비 20억원 중 설계용역 선급금과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13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예산(6억 700만원)은 2021년으로 이월되었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절차별 추진계획 및 실제 추진현황]

구분	내 용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현황	비 고
1	사업추진방식 심의	'20.7월	'20.7월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9~10월	'20.10월	
3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20.10월	'20.11월	
4	설계공모 및 계약체결	'20.10 ~ '20.12월	'20.11 ~ '20.12월	
5	기본 및 실시설계 ¹⁾	'20.12 ~ '21.8월	'20.12~'22.6월	설계기간 변경
6	부지매입	'21.10월	'21.12월	
7	시설공사 발주	'21.10 ~ 12월	미정	타당성 재조사 결정시기 에 따라 유동적
8	감리용역 발주	'21.10 ~ 12월		
9	공사 착공 및 완료	'21.12 ~ '23.2월		

주: 1)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0.12.28.~2021.8.24.이었으나 설계 추진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음

자료: 환경부

특히, 2021년의 경우,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시점이 2021년 8월 24일이었으나, 원자재 비용과 건축공사 단가 변경 등으로 인한 중간설계 변경, 중간설계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재원 협의 등의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용역 수행기간이 2022년 6월 1일로 연장됨에 따라 전년도 이 월예산 6억 700만원 중 기성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억 3,0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억 7,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0~2022년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집행 및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2020	기본조사설계비 (420-01)	0	2,000	0	0	2,000	1,393	69.7	607	0
	소계	0	2,000	0	0	2,000	1,393	69.7	607	0
202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0	0	607	0	607	330	54.4	0	277
	공사비 (420-03)	6,842	6,842	0	△5,200	1,642	0	0.0	0	1,642
	감리비 (420-04)	244	244	0	0	244	0	0.0	0	244
	시설부대비 (420-05)	14	14	0	0	14	0	0.0	0	14
	건설보상비 (410-00)	7,500	7,500	0	0	7,500	7,152	95.4	0	348
	소계	14,600	14,600	607	△5,200	10,007	7,482	74.8	0	2,525
2022	공사비 (420-03)	13,684	13,684	0	△6,669 ⁴⁾	7,015	0	0.0	미정	미정
	감리비 (420-04)	487	487	0	0	487	0	0.0	미정	미정
	시설부대비 (420-05)	29	29	0	0	29	0	0.0	미정	미정
	소계	14,200	14,200	0	△6,669 ⁴⁾	7,531	0	0.0	미정	미정

주: 1)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공사비 예산 중 66억 6,900만원을 이용하였음

1. 2022년 집행 실적은 5월말 기준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추진지연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편성된 건설비 예산의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부지매입을 위해 편성된 75억원 중 71억 5,200만원만 집행되었을 뿐, 타 사업으로 이용된 52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16억 4,2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9억원은 전액 불용하였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및 추가적인 비용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다는 초안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4)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성재조사 대

4)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

상에 해당하는바, 환경부는 2022년 4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사전 재원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된 건설비 예산 142억원 또한 집행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검토 절차를 비롯하여 실제 타당성재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그에 근거한 총사업비 재협의, 실시설계 재개 등으로 인해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향후 추진일정 또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분야의 환경현안에 대응하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동 사업을 신규 추진 하였으나, 설계 변경이나 총사업비 협의 및 향후 진행될 예정인 타당성재조사 절차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초 목표로 한 클러스터 구축 일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으며, 당초 수립한 사업 계획이 변경⁵⁾되면서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법적 절차인 타당성재조사 절차를 비롯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점검·검토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의 사업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5) 특히, 동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요건에 해당되므로 총사업비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가. 현 황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¹⁾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²⁾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담금 성격의 생태계보전부담금³⁾을 징수한 후, 해당 개발사업자 등이 대체자연의 조성,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법 제50조⁴⁾에 근거하여 기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자연생태계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21년도 예산현액 158억원 중 148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태계 훼손지 복원	15,000	15,000	800	0	15,800	14,882	94.2	850	6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2-304

2)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1. 5.>

3)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1.1.5., '22.1.6. 시행)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되었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단서 생략)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개발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계보전 부담금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한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이 3만 m² 이상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면적이 3만m² 이상인 사업, 광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등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 해당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환경부는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대체자연의 조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8항⁵⁾ 등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 내에서 그

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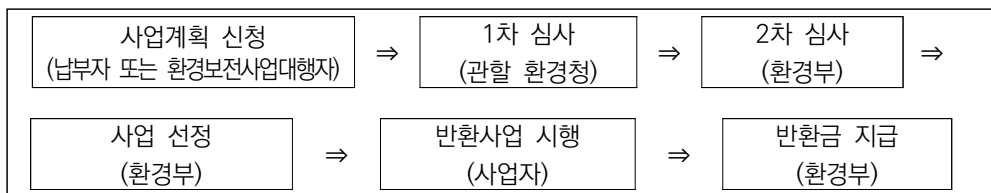
⑧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 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전: 승인받은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반환을

일부를 반환하여 줌으로써 사업자 등⁶⁾이 자발적으로 생태계 복원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사업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당해지역 외에 타 지역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이 보전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반환대상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며, 사업자가 보전사업 준공 후 사업완료 결과를 포함하여 반환금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금을 지급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선정절차]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사례(서울 구로구)]



자료: 환경부

신청한 금액

2. 승인받은 사업의 완료 후: 승인받은 사업에 투자된 금액(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반환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제외한다)

- 6)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도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당초 예산 편성 시 21.4개소에 개소당 7억원씩 반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사업 추진결과 34개소에 개소당 약 4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0억원 중 140억 8,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회계연도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m², 백만원)

당초 추진계획	실제 추진현황	면적	예산	집행	이월	불용
21.4개소 (개소당 700백만원)	34개소 (개소당 441백만원)	361,657	15,000	14,082	85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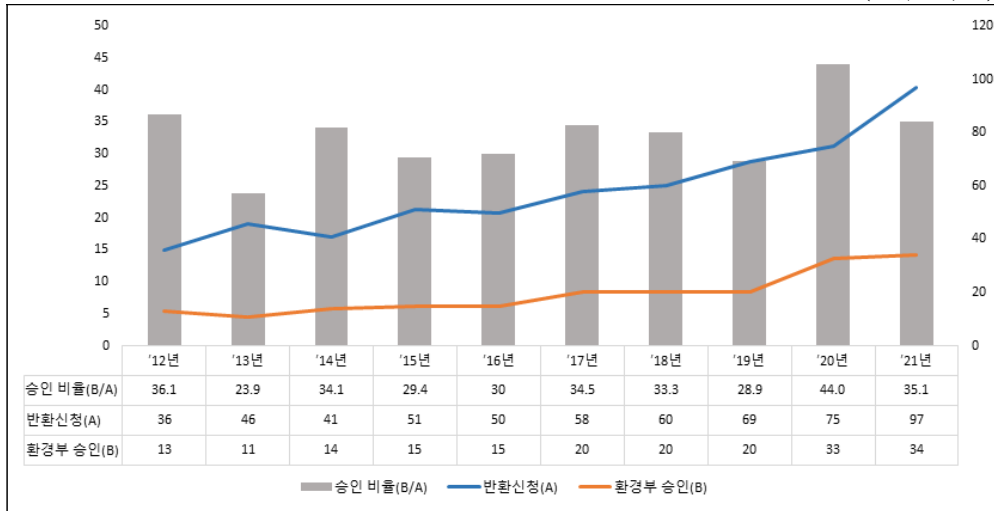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특히, 동 사업의 경우, 생태공원이나 생태하천 등 대체자연 조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동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 규모의 한계로 인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 건수는 2012년 36건에서 2021년 9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환경부의 반환 승인 또한 2012년 13건에서 2021년 34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기준 반환 신청 대비 승인 비율은 35.1% 수준으로 개발사업자 등이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반환금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연도별 신청 대비 승인 현황]

(단위: 건, %)



자료: 환경부

또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부담금 반환신청액 대비 승인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 반환신청액 483억원 중 102억 6,000만원이 반환승인되어 반환신청액 대비 승인비율이 21.2%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예산 규모가 일부 확대됨에 따라 반환신청액 대비 승인비율이 28.2%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반환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총 668억원이 신청되었으나 그 중 150억원이 승인되는 등 승인비율이 22.5%로 재차 감소하는 등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 사업 연도별 반환신청액 대비 승인액 현황: 2014~2021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평 균
반환신청액(A)	33,700	36,200	35,700	39,600	41,700	48,300	51,400	66,800	44,175
반환승인액(B)	7,000	7,000	7,100	9,400	10,800	10,260	14,490	15,000	10,131
반환비율(B/A)	20.7	19.3	19.9	23.7	25.9	21.2	28.2	22.5	22.9

자료: 환경부

이는 주어진 예산 규모 하에서는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을 신청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담금을 지원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

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⁷⁾

따라서 환경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보전사업 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등 생태계 복원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참고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연평균 징수액은 약 576억원 규모이고, 동 사업의 연평균 예산액은 약 120억원 규모로 부담금 징수 대비 반환금 지급 비율이 20.8% 수준이다. 다만,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되어 기타 환경보전 관련 사업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 현 황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¹⁾은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물·에너지 집적단지 등 친환경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천수와 광역상수도 원수 등을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5억 5,100만원 중 1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1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5,540	5,540	1,011	0	6,551	1,332	20.3	49	5,170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5,040	5,040	1,011	0	6,051	891	14.7	0	5,16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환경부는 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부족으로 인해 사업 중단이나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해수를 활용하여 얻은 에너지가 수열에너지에 해당하였으나, 2019년 10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천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3

수의 열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에너지가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6월 범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관련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의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 추진되었다.

특히,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내역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강홍수통제소, 한강물환경연구소, 종합환경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하천수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대상별 사업비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합 계		14,560	2,020	5,040	7,500
한강홍수 통제소	소계	900	900	-	-
	설계	20	20	-	-
	공사	880	880	-	-
한강물환경 연구소	소계	620	620	-	-
	설계	30	30	-	-
	공사	590	590	-	-
종합환경 연구단지	소계	13,040	500	5,040	7,500
	설계	500	500	-	-
	공사	12,540	-	5,040	7,500

자료: 환경부

그 중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강물환경연구소는 2020년 설계 이후 공사를 추진하여 각각 2021년 4월과 6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종합환경연구단지는 2020년 설계를 추진한 이후 2021년 예산을 통해 공사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 산출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이 보류되는 등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합환경연구단지 대상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환경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기본설계

중간보고 결과, 예산 편성 시 고려되지 못한 연약지반 문제, 노후 전기설비 교체, 기계실 신설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약 511억원 규모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1차 설계안), 이후 당초 계획한 사업비(130억원)에 맞춰 사업 규모(2,000RT → 300RT)²⁾를 조정(1차 수정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성과 관련 전문가회의를 통해 수열에너지 발전량 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여 공사방법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2차 수정안에서는 부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정하여 총 10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나, 시범사업 타당성 관련 전문가회의 시 추가 공사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예산 투자 대비 편익이 낮아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2021년 8월 설계를 종료하고 사업을 보류하였다.

[종합환경연구단지 시범사업 추진경과]

구분	예산 편성시	1차 설계안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사업규모	2,000RT	2,000RT	300RT	300RT
총사업비	130억원	511억원	130억원	100억원
수열설비 (히트펌프 등)	47억원	109억원	25억원	25억원
부대시설 (연약지반 개량 등)	83억원	402억원	105억원	75억원

자료: 환경부

이후, 환경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을 비롯하여 시범사업 대체지를 검토하고 동 내역사업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상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불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종합환경연구단지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편성된 건설비 예산 50억 4,0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다.

2) 수열에너지는 물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로, 측정단위로는 냉동톤·제빙톤(RT)을 활용한다. 1RT는 0℃의 물 1ton을 24시간 동안 0℃ 얼음으로 만드는데 제거해야 하는 열량을 의미한다.

[2021회계연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종합환경연구단지)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종합환경연구단지)	5,040	5,040	5,040	0	0	5,040
- 공사비(420-03)	4,920	4,920	4,920	0	0	4,920
- 감리비(420-04)	80	80	80	0	0	80
- 시설부대비(420-05)	40	40	40	0	0	40

주: 종합환경연구단지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2021년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내역 기준임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종합환경연구단지에 대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이 중단되고 관련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은 당초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수의 확보 가능여부 등 수열에너지 발전량 측면에서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였을 뿐, ① 당초 예산 편성 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정함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 등 부대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고, ② 1999년에 준공된 종합환경연구단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전기용량 및 기존 기계실 면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③ 당초 정부의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상지 선정을 비롯하여 수열에너지 사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동 시범사업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는 민간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민간위탁(한국수자원공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³⁾ 정부는 수열에너지 활성화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민간위탁기관이 사업 타당성검토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별 예산 규모 산출, 사업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3) 정부 산하 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기존의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2022년 예산부터는 민간 및 지자체 소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341억원(국비 50%)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및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개요]

구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사업대상	- 정부(환경부) 산하 건축물	- 민간·지자체 건축물 등
대상자 선정	- 환경부 직접 선정 〈2020년 대상〉 ① 한강홍수통제소(준공) ② 한강물환경연구소(준공) ③ 종합환경연구단지(중단)	-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2022년 대상〉 ① 삼성서울병원 ② 신한은행 ③ (주)엔씨소프트 ④ 코엑스 ⑤ 상주시 스마트팜 ⑥ 청주전시관 ⑦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⑧ 신방초등학교 ⑨ 한국전력거래소
기간	- 2020~2021년(2년)	- 2022~2024년(3년)
수행기관	- 환경부 직접시행	-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내용	- 환경부 산하 건축물에 하천수 수열에너지 적용(국비 100%)	- 민간·지자체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사업비를 지원(국비 50%)

자료: 환경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향후 2025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므로, 환경부는 종합환경연구단지 사례와 같이 사업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점검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이나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검토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¹⁾은 국가에서 개발한 우수 생물소재 대량증식 관련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생물소재의 품질관리 및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등 생물소재의 대량증식 및 제품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된 2021년 예산현액 59억 6,600만원 중 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7억 6,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5,684	5,684	282	±195	5,966	201	3.4	0	5,76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월 발표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에 따라 추진방향이 논의된 이후,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으며, 환경부는 2020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400억원(국고 100%)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생물소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5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사업내용	- 대량증식 기술이 확보된 생물 소재의 품질관리(QC) 및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 등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
총사업비	- 400억원(국비 100%, 자산취득비 99.8억원 포함)
사업기간	- 2020 ~ 2023년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건축연면적, 13,800㎡)
사업시행주체	- (시행) 환경부, (운영) 환경부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주요시설	- (증식시설) 벤로형 유리온실, 미생물 발효실, 천연물추출실 - (연구실험동) 기초분석연구실, 분리정제실, 질량구조분석실 등

자료: 환경부

나. 분석의견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은 미흡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설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변경되고 이로 인한 타당성재조사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경예산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생물소재에 기반한 바이오산업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그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개발한 우수한 생물소재 대량증식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이를 제품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소재증식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동 사업의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예산 16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 예산에서는 설계 용역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지연,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 증가에 따른 설계 중단 및 이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시행 절차 등으로 인해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0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용역 공모를 위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이 2020년 12월말에 체결되면서 설계비 예산 16억원 중 설계용역 선급금 등으로 11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 8,200만원은 2021년으로 이월되었다.

[2020회계연도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실시설계비 (420-02)	-	1,600	-	-	1,600	1,160	282	158

자료: 환경부

또한, 2021년에는 2020년 12월 설계 용역 계약 후 2021년 2월 단지 조성 사업 감리를 위해 조달청의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5월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건축 인·허가 관련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7월 중간설계 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증액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 8월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추진하였다.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절차별 추진계획 및 실제 추진현황]

구분	사업추진절차	추진일정
1	공공건축심의위 심의(서면)	'20.10.19. ~ 23.
2	기본구상 수립	'20.10.16. ~ 12.14.
3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체결 - (계약기간) '20.12.24.~'21.03.23.	'20.12.24.
4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 (계약기간) '20.12.23.~'21.10.18.	'20.12.23.

구분	사업추진절차	추진일정
5	기본설계 중 계획·중간설계 실시	'20.12.23. ~ '21.8.5.
6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21.2.24.
7	기술용역 수행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협의대상 제외	'21.5.21. ~ '21.9.7.
8	중간설계결과, 총사업비 증액 사유 발생으로 설계용역 일시정지	(일시정지기간) '21.8.6. ~ 추후협의
9	총사업비 조정 심의결과 타당성재조사 시행 결정(기획재정부)	'21.10.28.
10	타당성재조사 시행(KDI)	'21.12. ~ 최대 9개월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중간설계 결과 당초 편성한 공사비 300억원으로는 골조나 공조 등 기본적인 건축 요소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약 231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며, 부실공사 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 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대행(전면 책임감리) 및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확보 등 공사비 증액에 따른 기타 시설부대경비 약 43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제시되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총사업비 증액 사유에 따라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2) 및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제1항제1호3) 등의 요건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해당하는바,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 심의를 거쳐 2021

2)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3)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년 10월 28일 타당성재조사 시행 결정 통보를 받았으며,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한 이후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해 2021년 및 2022년에 걸쳐 편성된 공사비 등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예산현액 59억 6,600만원 중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기술용역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한 예산 1억 2,700만원과 감리 용역비 7,300만원 등 총 2억 100만원 외의 나머지 예산 57억 6,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또한, 2022년의 경우에도 2차년도 공사비 등 총 113억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재조사가 2022년 9월 이후 완료될 예정으로 2022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2년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기본조사설계비	0	0	0	195	195	127	0	68
	실시설계비	0	0	282	0	282	0	0	282
	공사비	5,600	5,600	0	△195	5,405	0	0	5,405
	감리비	73	73	0	0	73	73	0	-
	시설부대비	11	11	0	0	11	1	0	10
	소계	5,684	5,684	282	±195	5,966	201	0	5,765
2022	공사비	11,200	11,200	0	△10,000	1,200	0	미정	미정
	감리비	146	146	0	0	146	0	미정	미정
	시설부대비	45	45	0	0	45	0	미정	미정
	소계	11,391	11,391	0	△10,000	1,391	0	미정	미정

자료: 환경부

즉, 환경부는 바이오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 하에 추경예산을 통해 동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타당성재조사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의 시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환경부는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동 사업 예산 100억원을 이용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로 예산을 조정하였다는 입장이나, 이 또한 당초 2022년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실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에 불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부는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도출된 이후 총사업비 조정이나 설계 재개 및 공사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경예산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63억 2,200만원이며, 4,942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2.1%인 3,562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1,354억 1,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5억 6,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5,961	85,961	85,961	470,681	339,545	128,572	2,564	72.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61	361	361	760	162	598	0	21.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0	0	0	22,782	16,539	6,243	0	72.6
합계	86,322	86,322	86,322	494,223	356,246	135,413	2,564	72.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조 1,799억 6,400만원이며, 이 중 92.8%인 9조 4,472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308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529,928	9,366,749	9,794,626	9,083,729	1,866	709,031	92.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2,211	92,211	92,211	78,863	0	13,348	85.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1,612	291,612	293,127	284,685	0	8,443	97.1
합계	7,883,751	9,750,572	10,179,964	9,447,277	1,866	730,821	92.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5조 5,514억 9,300만원이며, 73조 1,823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2%인 66조 7,298억 1,900만원을 수납하고 6조 1,482억 3,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043억 3,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2,434,761	24,158,365	24,158,365	39,310,502	37,513,261	1,736,159	61,083	95.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8,196,438	18,197,278	18,197,278	25,540,457	23,947,286	1,496,289	96,882	93.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677,204	1,677,804	1,677,804	2,380,755	2,352,043	28,534	178	98.8
임금채권보장기금	1,008,284	1,008,284	1,008,284	4,184,869	1,234,886	2,807,963	142,020	29.5
근로복지진흥기금	510,362	509,762	509,762	1,765,805	1,682,343	79,293	4,170	95.3
합계	43,827,049	45,551,493	45,551,493	73,182,388	66,729,819	6,148,237	304,332	91.2

자료: 고용노동부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45조 5,519억 3,000만원이며, 이 중 96.1%인 43조 7,748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6,839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2,434,761	24,158,365	24,158,782	24,807,332	149	1,349,272	102.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8,196,438	18,197,278	18,197,298	15,983,361	4	149,702	8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677,204	1,677,804	1,677,804	1,717,843	0	2,025	102.4
임금채권보장기금	1,008,284	1,008,284	1,008,284	844,279	0	106,582	83.7
근로복지진흥기금	510,362	509,762	509,762	422,043	0	76,331	82.8
합계	43,827,049	45,551,493	45,551,930	43,774,858	153	1,683,912	96.1

자료: 고용노동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5,067억 1,100만원(3.3%)이 감소한 44조 1,311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조 3,721억 7,700만원(8.3%)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40,051	86,322	86,322	356,246	269,924	216,195
기금	40,618,876	43,827,049	45,551,493	43,774,858	△1,776,635	3,155,982
합계	40,758,927	43,913,371	45,637,815	44,131,104	△1,506,711	3,372,17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9,319억 600만원 (4.7%)이 감소한 38조 9,338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2,777억8,100만원(3.2%)이 감소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1,184,426	7,067,169	8,668,803	8,365,507	△303,295	△2,818,919
기금	29,027,203	28,581,485	32,196,952	30,568,341	△1,628,611	1,541,138
합계	40,211,629	35,648,654	40,865,755	38,933,848	△1,931,906	△1,277,78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고용노동부의 자산은 42조 2,800억 1,800만원, 부채는 43조 9,480억 1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6,679억 8,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9조 4,448억 8,000만원, 투자자산 29조 3,140억 4,6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조 4,263억 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조 547억 3,300만원(2.6%) 증가하였다.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1조 1,719억 2,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861억 1,400만원, 장기차입부채 9조 3,690억 2,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4조 4,656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조 6,797억 2,200만원(14.8%)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4조 6,535억 7,800만원 증가, 보험료 법정 적립금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1조 1,057억 5,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2,280,018	41,225,285	1,054,733	2.6
Ⅰ. 유동자산	9,444,880	8,272,956	1,171,924	14.2
Ⅱ. 투자자산	29,314,046	29,856,532	△542,486	△1.8
Ⅲ. 일반유형자산	3,426,302	3,012,802	413,500	13.7
Ⅳ. 무형자산	11,812	12,896	△1,084	△8.4
Ⅴ. 기타비유동자산	82,978	70,100	12,878	18.4
부 채	43,948,001	38,268,279	5,679,722	14.8
Ⅰ. 유동부채	86,114	163,570	△77,456	△47.4
Ⅱ. 장기차입부채	9,369,029	4,715,451	4,653,578	98.7
Ⅲ. 장기충당부채	27,163	29,316	△2,153	△7.3
Ⅳ. 기타비유동부채	34,465,695	33,359,943	1,105,752	3.3
순 자 산	△1,667,983	2,957,006	△4,624,988	△156.4
Ⅰ. 기본순자산	1,643,105	1,643,105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8,385,884	△3,428,227	△4,957,657	△144.6
Ⅲ. 순자산 조정	5,074,796	4,742,127	332,669	7.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4조 2,120억 9,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8조 411억 1,700만원, 관리운영비 1조 2,505억 1,400만원, 비배분비용 5,976억

6,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612억 8,500만원, 비배분수익 2조 4,618억 1,8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2조 7,540억 9,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조 9,965억 8,300만원(21.3%) 감소한 36조 9,661억 9,500만원이며, 이는 정책 사업 비용 감소 등에 따라 프로그램 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9조 5,383억 3,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고용안전망확충 프로그램(16조 9,118억 4,100만원)과 고용창출및훈련 프로그램(9조 1,691억 4,400만원), 산재보험 프로그램(6조 8,777억 7,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556억 3,400만원과 경비 7,948억 7,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3,164억 400만원과 이자비용 1,026억 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7,579,832	47,118,165	△9,538,333	△20.2
가. 프로그램 총원가	38,041,117	47,392,183	△9,351,067	△19.7
나. 프로그램 수익	461,285	274,019	187,266	68.3
II. 관리운영비	1,250,514	1,133,195	117,319	10.4
III. 비배분비용	597,667	408,167	189,500	46.4
IV. 비배분수익	2,461,818	1,696,749	765,069	45.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6,966,195	46,962,778	△9,996,583	△21.3
VI. 비교환수익 등	22,754,096	21,884,732	869,364	4.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4,212,099	25,078,045	△10,865,947	△43.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조 9,570억 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6,679억 8,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조 6,249억 8,800만원(156.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4조 2,120억 9,9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3,326억 6,9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9조 2,544억 4,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9조 6,106억 8,8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562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719억 6,8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5,046억 3,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957,006	14,246,717	△11,289,711	△79.2
Ⅱ. 재정운영결과	14,212,099	25,078,045	△10,865,947	△43.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254,441	12,354,333	△3,099,892	△25.1
Ⅳ. 조정항목	332,669	1,434,001	△1,101,332	△76.8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667,983	2,957,006	△4,624,988	△156.4

자료: 고용노동부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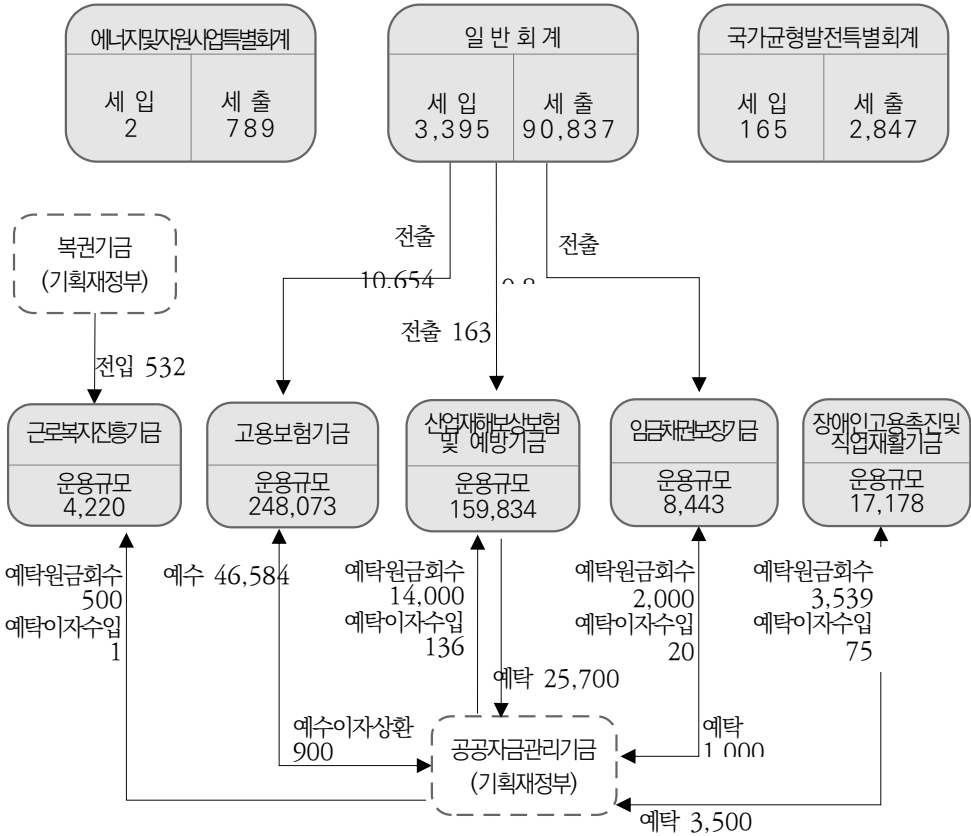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1조 654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163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0.8억원 전출되었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4조 6,584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이자 900억원을 상환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1조

4,000억원, 예탁이자수입 136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조 5,700억원을 예탁하였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2,000억원, 예탁이자수입 20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000억원을 예탁하였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3,539억원, 예탁이자수입 75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500억원을 예탁하였다. 한편, 근로복지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532억원을 전입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500억원, 예탁이자수입 1억원을 받았다.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② **취업성공패키지지원**, ③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 등이 있다.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집행가능한 목표인원을 고려하여 35억 2,300만원이 감액(473억 4,900만원 → 438억 2,600만원)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은 2020년 지원인원에 대한 잔여지급분이 반영되었는데, 추진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잔여지급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394억 2,300만원이 감액(3,666억 5,400만원 → 3,272억 3,100만원)되었다. 중장년층취업지원사업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건비·사업운영비를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으로 이관(84억3,600만원)하고, 신설 사업인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사업 컨설팅 사업장의 수가 축소(500 → 450개소, 4억2,500백만원)됨에 따라 8,861억원이 감액(311억 1,300만원 → 222억 5,2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고용센터인력지원 사업**, ②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 등이 있다.

고용센터인력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업무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을 위하여 96억 3,300만원이 증액(788억 9,800만원 → 885억 3,100만원)되었고, 노사발전재단지원 사업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여러 보조·위탁 사업비 내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노사발전재단 일반관리비로 이관·통합하여 116억 6,100만원이 증액(95억 2,900만원 → 211억 9,000만원)되었다.²⁾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 ②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은 “고용노

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2)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기업 위탁을 특정사회적기업과 특정협동조합에 몰아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②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저조한 집행률을 고려해 361억 6,000만원이 감액(1,747억 1,500만원 → 1,385억 5,500만원)되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집행률 저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을 고려하여 100억원이 감액(520억원 → 420억원)되었다.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피해가 지속되어 일반택시기사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640억원이 증액(560억원 → 1,200억원)되었다.⁵⁾

3)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3.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7.

고용노동부는 ①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②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확산, ③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④ 안전한 일터 조성지원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디지털 분야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청년들이 IT 분야로 취업하거나 일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콘텐츠 기획 유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동 사업의 1년 고용유지율은 42.3%로 민간고용으로의 마중물 역할 수행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둘째, 2021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추가 확보 시 유사 사업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동 사업의 예산이 상당수 불용되었다.

셋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인지도가 부족하여 2021년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일경험 프로그램의 경우 인턴형에 대한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불용을 초래하였으며,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취업률 70%를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K-MOVE 스쿨과 민간해외취업알선 전체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통계를 조사하여 동 사업이 실효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용노동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20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지원목표 인원을 설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충분한 훈련과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이 부진하였고, 2021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수요부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4.6%로 매우 부진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으로 2020년의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은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2021년 1분기에도 2020년보다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이 상승하였다. 또한, 공식 실업자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고려한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¹⁾의 경우에도 2020년, 2021년 1분기에는 각각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21년 3분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이 하락하여 2022년 1분기에는 고용상황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2022년 전체 및 청년층 실업률]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체	실업률	3.8	4.0	5.0	3.9	2.8	2.9	3.5
	고용보조지표3	11.8	13.6	15.6	13.4	12.4	11.7	12.2
청년 (15~29세)	실업률	8.9	9.0	9.9	9.4	6.1	5.6	6.7
	고용보조지표3	22.9	25.1	26.5	24.3	21.8	19.8	20.0

주: 1.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2. 고용보조지표3 = [(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현 통계방식에 따르면 한 주 동안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며, 취업 대기자 또는 취업 예정자가 구직활동이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이 체감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보조지표3을 통해 체감 실업률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조지표3 = [(실업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란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자(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하고, 잠재경제활동인구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나 잠재적으로 취업·구직이 가능한 자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장려금, 업종별 지원, 돌봄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다.

[2021년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877,247	1,302,740	69.4
	청년디지털일자리	1,121,166	1,120,319	99.9
	청년채용특별장려금	136,596	129,794	95.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98,510	464,387	93.2
업종별 지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856,309	786,148	91.8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60,000	153,500	95.9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76,900	51,389	66.8
돌봄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42,048	9,137	21.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먼저, 고용장려금 사업을 살펴보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조 8,772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디지털일자리로 1조 1,2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4,985억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으로 1,36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으로 8,563억원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600억원을 편성하였고,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으로 769억원을 편성하였다. 더불어, 돌봄지원을 위하여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으로 420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이 2021년에는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이 편성되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이 부진하거나, 고용유지율이 낮아 고용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요건 및 예산 추계 분석

가. 현 황

고용유지지원금 사업²⁾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1조 8,772억 4,700만원 중 69.4%인 1조 3,02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745억 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유지지원금	1372832	1,877,247	0	0	1877247	1302740	69.4	0	57450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21조³⁾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⁴⁾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2)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5-350

3)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당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 또는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⁵⁾ 유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에 대하여 정부가 사업주에게 그 수당액의 50%(대규모기업) ~ 67%(우선지원대상기업)⁶⁾를 지원한다. 지원금 상한액은 1일 6.6만원(월 최대 198만원)이고,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무급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1일 6.6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다만, 2020년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먼저, 유급휴업·휴직시 지원수준을 50~67%에서 최대 90%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기간을 연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제한·금지명령이 장기화 되면서 2021년 6월말까지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율을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67% → 90%, 대규모기업 50~67% → 67%) 조정하였다. 그리고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기간 중 지원수준을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67% → 90%, 대규모기업 50~67% → 67~75%)하여 지원하였으며, 해당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021년내 최대 300일까지 연장하였다.

5) 「근로기준법」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에 대하여 정의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급 휴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지원 수준은 2/3(대규모기업) ~ 9/10(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지원금 상한액은 일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이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영화업, 수련시설업, 유원시설업,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업, 조선업이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군산, 통영, 거제, 울산(동구), 창원(진해), 고성군, 목포, 영암이다.

[유급휴업 및 휴직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구 분		기 준	코로나19 대응
지원 수준	일반업종	사업주가 지급하는 수당액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67% ·(대규모기업) 50~67%	·지원수준 한시 상향('20.2.1~3.31) (우선지원대상기업 75%, 대규모기업 67%) ·지원수준 한시 상향('20.4.1~9.3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67%) ·집합제한금지업종 한시 상향('20.11.24~'21.6.3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67%) ·경영위기업종 한시 상향('21.4.1~6.3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67%)
	특별고용 지원업종	사업주가 지급하는 수당액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67~75%	좌동
지원 기간	일반업종	연 최대 180일 지원	연 최대 240일 지원('20년 한정)
	특별고용 지원업종		연 최대 240일 지원('20년 한정) 연 최대 300일 지원('21년 한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도입하였다(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도입하여 2021년까지 한시 지원).

지원요건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재고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며,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로, 2020. 1. 1. ~ 2021. 11. 1. 에 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한다.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지원 요건	① 임금삭감 및 고용안정 보장 등 조건을 포함한 고용유지 합의 체결 ¹⁾ ② 지원금 수령 기간(6월 내) + 1개월(감원방지기간) 인력감축 불가 ²⁾
지원 수준	임금감소분의 50%(개인별 월 50만원, 기업별 20억원 한도)
지원 기간	6개월 이내, 매월 지급
지원금 용도	부당한 용도가 아닌 한 “노사가 합의한 용도”(협약서에 명시) ³⁾ 를 인정 노사합의 용도의 적정성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지원 제한	유사 취지인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완료 후에는 지원요건 충족시 지원 가능

주: 1) 고용유지 합의는 노사의 고용유지 노력이 표현된 경우라면 그 형식·방법을 불문하고, 2020년 1월 이후 2021년 11월 1일까지 합의한 협약은 모두 해당됨

2) 자연감소(정년, 계약만료,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인력규모 축소는 해당되지 않음

3) 지원금은 대부분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 용도로 사용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유급휴업·휴직과 무급휴업·휴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휴업 지원금의 실질행불은 44.9%에 불과하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관련 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세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고용노동부는 자체변경, 제1·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기금운용계획 변동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계획 현액 (A)	당초 계획	세목 변경 (1.5)	1회 자체 변경 (1.14.)	1회 기금운 용계획 변경 (3.25.)	2회 기금운 용계획 변경 (7.24.)	세목 변경 (9.2)	세목 변경 (12.13)	실집 행액 (B)	실집행 률 (B/A)
합계	18,552	13,658	0	+1,758	+2,033	+1,103	0	0	12,818	69.1
유급 휴업	7,932	5,775	△400	+1,028	+1,220	+662	△229	△124	3,562	44.9
유급 휴직	9,816	7,877	-	+685	+813	+441	-	-	8,498	86.6
무급 휴업· 휴직	804	6	+400	+44	-	-	+229	+124	758	94.2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휴업의 경우 2021년의 실집행액은 3,562억원으로, 결과적으로는 당초계획(5,775억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집행률은 44.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제1·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집합제한·금지명령 업종 지원수준의 한시 상향(3월)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 연장(7월)을 위해 지원목표인원에 2020년도 유급휴업과 휴직의 지원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증액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사업장들이 단기간의 휴업보다는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유급휴직을 더 많이 활용하여 휴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다.⁷⁾

유급휴업은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급휴직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시간을 100% 단축하는 경우를 의미하여 해당 사업장이 유급휴업과 유급휴직 중 어떤 고용유지조치를 행할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향후 코로나 19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분기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을 통한 잔여 예산 현황, 1~2분기부터 이어졌던 유급휴직 활용 경향 및 휴업 감소 영향 등을 살펴본다면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7)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업과 휴직은 근로시간 단축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에 대해 같은 비율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도 별도 구분 없이 동일 비목(320-04, 보험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을 통한 휴업지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기존 관련 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세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분기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급휴업	1,219	976	784	582
유급휴직	2,454	2,496	2,030	1,517
무급휴업· 휴직	269	92	110	287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소규모 업체일수록 무급휴업 및 휴직 지원금 지급 요건이 엄격하여 동 지원금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 요건이 적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급휴업 지원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 유급휴업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 지급되고, 무급휴직 지원금은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하거나 피보험자 20% 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 30일 이상 실시하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 지급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유급휴업·휴직에 비해 무급휴업·휴직의 요건이 엄격한 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업 및 휴직과 달리 무급휴업 및 휴직은 사용자의 부담이 감소되는 반면, 근로자의 생계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유급 휴업·휴직 및 무급 휴업·휴직의 지원 요건]

유급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무급	휴업	일정규모*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 유급휴업을 30일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실시 규모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실시인원
		19인 이하	전체 피보험자의 50% 이상
		20~99명	10명 이상
		100~999명	전체 피보험자의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휴직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휴직 실시, 일정 규모**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 30일 이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실시 규모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실시인원
		99명 이하	10명 이상 (기존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2021~2022년에 한정하여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1명 이상에 대해 지원하였음)
		100~999명	전체 피보험자의 10%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유급 휴업·휴직 및 무급 휴업·휴직의 지원 수준]

구분	유급 휴업·휴직		무급 휴업·휴직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 종	사업주가 지급하는 수당액 중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 종 고용위 기지역	사업주가 지급하는 수당액 중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30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 사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고용노동부는 19명 이하 사업장은 전체 피보험자의 50%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100~999명 사업장은 전체 피보험자의 10% 이상 무급휴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무급휴업·휴직 실시요구 인원 비율을 높게 설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⁸⁾ 2021년 기업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무급휴업·휴직 전체 지원인원(2만 2,989명)의 71.3%(1만 6,399명)가 300인 이상 기업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기업이 다수인 항공여객운송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유급휴업·휴직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후 노사 합의하에 무급휴업·휴직신청이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휴직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존과 달리 1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면서 2021~2022년에 한정하여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1명 이상에 대해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이 역시 사업주의 부담이 드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 동안 받은 경우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업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규모	유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업·휴직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10인 미만	46,160	127,550	59,682	372,091	1,737	5,580
10~29인	43,080	94,812	19,863	100,608	956	4,351
30~99인	38,612	58,713	9,833	34,627	2,277	9,838
100~299인	20,023	29,447	9,761	44,386	1,620	7,491
300인 이상	27,495	45,635	41,423	298,135	16,399	48,510
합계	175,370	356,157	140,562	849,847	22,989	75,770

자료: 고용노동부

물론, 무급휴업 및 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경감되며 근로자 임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은 위기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업·휴직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동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고용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⁹⁾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무급휴업·휴직 요건이 적정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0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는 47만 3,254명으로, 전체 128만 8,698명의 36.7%에 달하였다.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수급자]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10인 미만	421,810	498,153	473,254
10~29인	214,561	250,539	226,183
30~49인	78,165	95,211	83,259
50~99인	91,535	108,260	94,386
100~299인	117,089	133,950	124,317
300~999인	111,425	132,934	122,345
1,000인 이상	113,313	152,674	164,954
계	1,147,898	1,371,721	1,288,698

주: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자영업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셋째,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에 따른 초과지출액을 적절히 회수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건수 및 부정수급액¹⁰⁾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7~2019년 매년 30건 미만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534건, 2021년 949건으로 증가하였고, 부정수급액도 2017년에는 1억 6,5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에는 229억 5,5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 환수율은 96.8%에 달하나 2019년에는 43.7%, 2021년에는 31.8%에 불과하다.

[2017~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건수 및 부정수급액]

(단위: 건수,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부정수급 건수	15	17	28	534	949
부정수급액	165	420	800	9,306	22,955
납부할 금액(A) ¹⁾	420	815	2,291	18,457	61,921
환수액(B) ²⁾	406	701	1,002	13,156	19,682
환수율(B/A)	96.8	86.0	43.7	71.3	31.8

주: 1) 납부할 금액 = 부정수급액 + 추가징수액(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해 부정수급 사유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5배 징수)

2) 해당연도 적발된 건에 대한 부정수급액 및 환수금액임

1.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 포함

2. 2021년 12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9년의 경우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장(조선업)의 파산 등의 사유로 환수율이 다소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며,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기간¹¹⁾을 부여하고 있어 2021년에는 최근 적발건에 대한 환수율이 낮은 편이라는

10)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에도, 실제 근로하고 마치 휴업·휴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속여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 근무 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령

11)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납부를 명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납

입장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부정수급 환수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분할 납부 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납부반아야 할 금액을 적절히 회수할 필요가 있다.

부횡수를 조정하고 있다.

1-2. 일자리의 질 및 고용안정성을 고려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제도 설계필요

가. 현 황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¹²⁾은 청년들을 IT 활용가능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최대 6개월 동안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1조 1,211억 6,600만원 중 99.9%인 1조 1,203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년일자리창출지원	467,600	1,121,166	0	1,121,166	1,120,319	99.9	0	847
청년디지털일자리	467,600	1,121,166	0	1,121,166	1,120,319	99.9	0	847

주: 1.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2. 2020년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내에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2021년에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만이 편성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20.5.20.)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도입된 사업으로,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인건비+간접노무비)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사업 운영체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탁기관이 참여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일반분야’와 중앙부처(청)에서 수행기관으로 별도로 추천한 기관이 해당 산업에 특화해서 지원하는 ‘특화분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동 사업의 2021년 목표 지원인원은 일반분야 11만 8,800명, 특화분야 1,200명이다.

12) 코드: 일반회계 1043-301의 내역사업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내용]

구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내용		
개요	IT 활용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		
지원대상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¹⁾		
지원기간	6개월		
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3개월 이상 근로계약 등		
지원수준	월보수총액에 따른 인건비+간접노무비		
	월 보수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자급임금의 90%	
운영체계	특화 분야는 전문성 높은 협회·단체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특화 분야를 제외한 민간기업 수요는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		
	총 120,000명 지원 목표 협회·단체 활용 1,200명 민간운영기관 활용 118,800명		

주: 1)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참여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내에 미래청년인재 육성사업을 편성하였다. 미래청년인재 육성사업은 만 15~34세 미취업청년이 미래유망기업에 취업한 경우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내 IT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유망기업¹³⁾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다.

13) 미래유망기업이란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약 6.5만개).

부처	혁신기업 인정 사업 목록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수기업연구소(과기정통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K-ICT 해외진출사업,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
중소벤처 기업부	벤처기업 확인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등
산업통상 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산업부),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스타일테크 유망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해양수산부	신기술(NET) 인증 보유 기업, 예비오션 스타기업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환경부)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내 미래청년인재 육성사업 내용]

구분	미래청년인재 육성사업 내용		
개요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미래유망기업		
지원기간	6개월		
근로조건	주 15~40시간,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3개월 이상 근로계약 등		
지원수준	월보수총액에 따른 인건비+간접노무비		
	월 보수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자급임금의 90%	
지원목표	총 10,000명 지원 목표		
운영체계	민간운영기관을 통한 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높은 수요로 인하여 본예산 및 제1회·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예산을 통하여 5만명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6만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제2회 추경을 통하여 1만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실제 참여인원은 10.7만명이다.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기업지원금) 예산편성 내역 및 결산]

구분	예산편성	결산
본예산	민간경상보조(기업지원금): 451,030백만원 - (산출) 5만명×지원금액 평균 164만원 ¹⁾ ×지원기간 평균 5.5개월 ²⁾	기업지원금 1,082,238백만원 (참여인원: 10.7만명)
1회 추경	민간경상보조(기업지원금): 541,236백만원 - (산출) 6만명×지원금액 평균 164만원×지원기간 평균 5.5개월	
2회 추경	민간경상보조(기업지원금): 90,200백만원 - (산출) 1만명×지원금액 평균 164만원×지원기간 평균 5.5개월	

주: 1)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청년의 근로시간(15시간 이상) 및 기업의 지급 임금을 고려하여 평균 164만원 수준으로산정(간접노무비 10만원 포함)

2) 지원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청년의 고용유지율을 고려하여 평균 5.5개월로 산정

1. 운영기관 위탁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제외한 기업지원금에 한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디지털 분야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청년들이 IT 분야로 취업하거나 일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콘텐츠 기획 유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동 사업의 1년 고용유지율은 42.3%로 민간고용으로의 마중물 역할 수행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용위기 상황에서의 유사 예산 편성 시 일자리의 질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내 일반분야의 직무 유형은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기타의 4가지로 직무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별 개요 및 직무 예시]

구분	개요 및 직무예시
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 기업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개발·관리·지원 - 설명·홍보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관리·지원 - 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관리·운영·지원 -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기획·제작·관리·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빅데이터 활용형	◦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¹⁾ - 새로운 IT 기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 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지원 -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신산업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 - 중간·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 지리·인물정보 등 비제조물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기타형	◦ 위 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 기타 위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직무(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

주: 1)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기술·프로그램·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2021.1.을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일반분야의 2021년 유형별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분야 기획·관리·운영 직무인 '콘텐츠 기획' 직무에 채용된 인원이 68.1%로 나타났고, AI,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채용된 인원은 각각 전체 채용 인원의 16.9%,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분야인 기록물 정보화형의 경우 9.4%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2020년에도 유사하여, 콘텐츠 기획으로 채용된 경우가 56.8%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내실 있는 채용을 위해 채용 유형을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 업무로 보이는 콘텐츠 기획 유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유형별 채용인원]

(단위: 명, %, %p)

채용 유형	2020		2021		B-A
		비중 ¹⁾ (A)		비중 ¹⁾ (B)	
콘텐츠 기획	29,218	56.8	66,692	68.1	11.3
빅데이터 활용	12,505	24.3	16,551	16.9	△7.4
기록물 정보화	5,659	11.0	9,187	9.4	△1.6
기타	4,032	7.8	5,572	5.7	△2.1
합계	51,414	100.0	98,002 ²⁾	100.0	-

주: 1) 연도별 실제 채용 전체 인원 대비 유형별 채용 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2) 2021년 제2회 추경으로 추진된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은 채용 유형 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 참여자(8,926명)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 사업 참여 청년의 고용유지율 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 고용유지율은 87.1%, 6개월 고용유지율은 71.7%, 12개월 고용유지율은 42.3%로, 지원금 지원기간(6개월)이 지난 후 고용유지율이 감소하고 있다.

[2020년~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고용유지율]

(단위: %)

구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고용유지율	87.1	71.7	42.3	24.3

주: 18개월 고용유지율의 경우에는 2020년 채용청년을 대상으로 추출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청년의 IT분야 일경험과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므로 정규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물론, 동 사업은 2020~2021년 한시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 채용시 월 190만원을 지급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고용유지율은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 대상자가 얼마나 민간일자리로 안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년 고용유지율이 42.3%에 불과하다는 것은 동 사업이 민간고용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디지털 분야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 영역의 다양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첫 지원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고용해지(자발적 퇴직 등 포함)된 경우는 12.9%, 6개월 이내는 28.3%에 달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고용이 종료된 청년들의 경우 직무능력 및 취업역량이 제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자(15만 7,997명) 중 고용보험 상실자(2022. 6월 기준 9만 5,920명)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6만 6,758명(69.6%)이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자의 상당수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단위: 건, %)

상실 사유	건수	비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66,758	69.6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790	0.8
폐업, 도산	615	0.6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4,467	4.7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74	0.4
정년 ¹⁾	5	0.0
계약만료, 공사기간 종료	22,775	23.7
고용보험 비적용 ²⁾	37	0.0
이중고용 ³⁾	99	0.1
계	95,920	100.0

주: 1) 정년은 계약기간 만료를 잘못 신고한 경우임

2) 고용보험 비적용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내이사 또는 대표자로 취임하여 고용보험 적용제의 근로자가 된 경우 등 포함

3) 이중고용은 근로 도중 다른 사업장에도 취업하여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임

1.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자발적 퇴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직이 잦은 IT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퇴사를 한 경우, 보수 및 복지 등의 문제로 퇴사를 하는 경우¹⁴⁾ 등 기업과 청년의 매칭이 잘 이루어

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청년 이직자)' 중 그만둔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따른 이직사유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보수복지 및 안정성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300인 이상은 적성 기술 불일치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둔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따른 이직 사유]

(단위: %)

그만둔 일자리 특성 (기업 규모)	응답률	이직 사유						
		보수 복지	개인 발전	근무 환경	안정성	적성기술 불일치	개인 사업	건강육아 가사
5인 미만	28.3	22.8	10.6	18.2	16.5	13.8	8.5	9.7
5인 이상 30인 미만	45.2	23.1	8.4	22.1	10.6	14.5	4.1	17.2

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고용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고용위기 상황에서의 유사 예산 편성 시 양질의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등 일자리의 질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그만둔 일자리 특성 (기업 규모)	응답률	이직 사유						
		보수 복지	개인 발전	근무 환경	안정성	적성기술 불일치	개인 사업	건강육아 가사
30인 이상 100인 미만	12.8	21.3	7.9	22.0	15.7	14.0	3.4	15.8
100인 이상 300인 미만	6.6	31.6	4.1	17.8	15.2	11.9	4.6	14.7
300인 이상	7.2	16.9	11.8	20.9	6.6	30.1	2.9	10.9

주: 응답자 734명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청년 이직자)', 2020. 12.

1-3. 관련 사업으로의 수요 분산을 고려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이다.¹⁵⁾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1,365억 9,600만원 중 95.0%인 1,297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68억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창출장려금	186,481	704,779	0	704,779	655,376	93.0	0	49,403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0	225,000	0	136,596	129,794	95.0	0	6,802

주: 수정은 2021. 5. 26. 자체변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¹⁶⁾의 종료에 예정됨에 따라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0년 11월 30일 채용기준으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2022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¹⁷⁾이 신설됨에 따라 공백인 2020. 12.~2021. 12. 채용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다.

15)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의 내역사업

1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급되며, 월 75만원씩 최대 3년 동안 지급되는 사업이다.

1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만 15~34세의 미취업 취업예청년(고졸 이하 학력, 일정기간 미취업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지급되며, 월 80만원씩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2021. 5. 26.)을 통하여 2,250억원을 확보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설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884억 400만원을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34억 400만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850억원)으로 세목변경(2021. 11. 26.)하였다.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기금운용계획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계획현액	당초계획	1회 자체변경(5.26)	2회 자체변경(11.26.)	실집행액
136,596	0	225,000 (5만명×6개월× 75만원)	△88,404	129,79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총료가 예정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장려금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타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편성 시 관련 사업으로의 수요 분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5만명 지원¹⁸⁾을 목표로 하여 6개월분의 예산(2,25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11월 말에 자체변경 예산의 39.3%(884억 400만원)를

18) 고용노동부는 기금 자체변경 시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원 받은 인원(2018.~2020.7)인 신규자 월평균 1.45만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월 약 5천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월 약 3천명)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월 약 8천명)를 제외하여, 월 약 7천명의 청년 정규직 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규자 월 약 7천명을 13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총 9만명으로 산정하였고 이 중 2021년 지원 5만명(6개월 고용유지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사업구조로 인하여 2020. 12.~2021. 5. 채용자는 2021년에 신청 가능하고 2021. 4.~2021. 12. 채용자는 2022년에 신청 가능)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타 사업으로 세목변경하였다.

이는 2021년에 다른 장려금 사업들이 편성되면서 수요가 분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청년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외에도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 30시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청년디지털일자리 IT 직무 수행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요건으로 하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수령 요건이 가장 엄격하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년 최대 900만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년 최대 960만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개월 1,140만원을 지급하여 지원수준도 동 사업이 가장 낮으므로, 상당수의 수요가 다른 사업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유사 사업 비교]

구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기간		’21년 한시	’20~’21년 한시	’20~’21년 한시
재원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채용직무		무관	무관	IT직무
지 원 대 상	청년	청년(만15~34세) 실업자 (’20.12~’21.12월 중 채용자)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청년(만15~34세) 실업자 (’21년 채용자)
지 원 내 용	기간	1년	6개월(이후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6개월
	수준	월 75만원, 1년 최대 900만원	월 100만원, (추가지원액 6개월 간 360만원)	월 190만원, 6개월 1,140만원
	지급 주기	1년 간 매 6개월 단위	6개월 간 매 2개월 단위	6개월 간 매 1개월 단위
	한도	기업당 3명	직전월말 피보험자 수의	직전월말 피보험자

구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100%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수익 100%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 30시간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 가입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IT직무 수행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종료가 예정되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다른 장려금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예산의 일부를 타사업으로 세목변경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편성 시 관련 사업으로의 수요 분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

1-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고용유지율 미흡 문제

가. 현 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¹⁹⁾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인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특례사업²⁰⁾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2021년도 계획 현액 4,985억 1,000만원 중 93.2%인 4,643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341억 2,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고용창출장려금	186,481	704,779	0	704,779	655,376	93.0	0	49,403
고용촉진장려금	94,220	516,330	0	516,330	481,817	93.3	0	34,513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76,400	498,510	0	498,510	464,387	93.2	0	34,123

주: 수정은 2021. 12. 10.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규정으로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신규 도입하였고, 2021년까지 지원하였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비교하여 지원대상이 확대

19)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의 내역사업

20) 즉, 고용촉진장려금 내역사업에 특례 지원 유형을 도입함으로써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특례규정에 따른 지원을 수행한다.

되고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지급기간 및 주기가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원대상 및 요건 측면에서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실업자²¹⁾ 외에도,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계약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 아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허용한다. ② 지원 수준은 근로자 1인당 30~60만원에서 월 1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③ 지급기간 및 주기를 1~2년간 매 6개월 단위에서 최대 6개월간 매 2개월 단위로 변경하였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	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실업자 ②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증인자
지원 요건	무기계약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지원 수준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대규모/우선지원)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 * 1차: 우선지원 * 2차: 중견+우선지원 (추가지원액: 6개월간 360만원)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간 매 6개월 단위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2년 지원)	6개월간 매 2개월 단위 (‘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단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인 실업자는 지정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이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자활근로」,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등 18개가 지정되어 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하다.

나. 분석의견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비교하였을 때 지원수준이 높으나 고용유지율은 낮으므로,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고용유지기간을 설정하거나 양질의 기업으로 사업 대상을 한정하는 등 고용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수요가 많아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세목변경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왔다. 구체적으로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는 5만명분에 대하여 2020년 추경으로 5개월분을, 2021년 당초예산으로 나머지 1개월분 및 7,500명 추가지원분을 편성하였는데, 선취업 후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채용에서 지원까지 2~3개월 내외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2020. 7. 27. ~ 12. 31.) 중 신규채용한 대다수의 사업주가 2021년에 전체 지원기간 6개월분을 신청하여 2021년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²²⁾ 또한, 2021년에 동 사업의 신청자 급증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목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다(2021년 지원인원 5.5만명분 확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2021년 예산현액은 4,985억 1,000만원이고, 실집행률은 93.2%이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금운용계획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 현액 (A)	당초 계획	1차 기금운용계 획변경 (3.25)	세목 변경 (5.26)	2차 기금운용계 획변경 (7.24)	세목 변경 (12.10)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498,510	76,400	+240,060	+20,000	+64,350	+97,700	464,387	93.2

자료: 고용노동부

22) 2020년에는 동 사업의 실집행률이 19.6%에 불과하다.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47,290	48,483	19.6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

(단위: 명, 백만원, %)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112,500	102,398	498,510	464,387	93.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급 수준은 높으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자의 고용유지율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2020년 고용촉진장려금의 18개월 고용유지율은 58.3%이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85.3%, 12개월 고용유지율은 63.1%, 장려금 지급 이후인 18개월 고용유지율은 44.1%에 불과하다. 기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장려금 전체 사업에 비하여 고용유지율이 낮아 지원기간 연장, 고용유지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 등의 고용유지율 제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으나,²³⁾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유지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고용촉진장려금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고용유지율]

(단위: 명, %)

구분	실제 지원 인원 (A)	6개월 고용 유지자 (B)	6개월 고용 유지율 (B/A*100)	12개월 고용 유지자 (C)	12개월 고용 유지율 (C/A*100)	18개월 고용 유지자 (D)	18개월 고용 유지율 (D/A*100)
고용촉진장려금	6,564	6,564	100.0	5,826	88.8	3,828	58.3
특별 고용촉진 장려금	13,163	11,230	85.3	8,310	63.1	5,803	44.1

주: 2020년 사업참여자 중 명확한 집계를 위하여 2022년 5월말 기준, 첫 지원 후 18개월이 지난 경우를 대상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23) 20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으며, 2019년에 사업 참여종료일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지원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을 조사한 자료에서 고용장려금 전체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81.2%이나, 고용촉진장려금은 59.9%이므로 고용유지율 제고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2020~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참여자 중 고용보험 상실자(2022. 6월 기준 5만 1,110건)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살펴보면, 3만 8,775명(75.9%)이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자의 상당수가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참여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단위: 건, %)

상실 사유	건수	비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38,775	75.9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488	1.0
폐업, 도산	1,859	3.6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3,571	7.0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306	0.6
정년	24	0.0
계약만료, 공사기간 종료	5,628	11.0
고용보험 비적용 ¹⁾	45	0.1
이중고용 ²⁾	414	0.8
계	51,110	100.0

주: 1) 고용보험 비적용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내이사 또는 대표자로 취임하여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 등 포함

2) 이중고용은 근로 도중 다른 사업장에도 취업하여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임

1.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업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동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고용유지율은 취업처의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및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이 적절하였는지, 직무능력을 형성하기에 적절한 기간을 확보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사업 요건 설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무기계약’ 및 ‘6개월 이상 고용유

지'를 요건으로 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6개월 이상 근로계약만 체결하면 지급하며, 매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더욱 고용유지율이 저하되었다.

이와 같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지원하므로 사실상 모든 업종, 모든 대상에게 지원을 하였고, 기존 고용촉진장려금보다 지원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참여자의 매칭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고용유지율을 제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고용유지기간을 설정하거나 양질의 기업으로 사업 대상을 한정하는 등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5. 유사 사업으로의 수요 분산을 고려하지 않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예산 편성 문제

가. 현 황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²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낮은 처우 및 감염 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를 지원하여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769억원 중 66.8%인 513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5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46,000	76,900	0	0	76,900	51,389	66.8	0	25,511

자료: 고용노동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2021년에 1차, 2차로 나뉘어 집행되었고, 1차(2021. 1~)의 경우 20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2차(2021. 4~)의 경우 2020년 연소득 1,3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 방문돌봄종사자(7종)²⁵⁾ 및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였다.²⁶⁾

24)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8-324

25) 요양보호사, 장애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노인맞춤돌봄

26) 2020년 9월 은행연합회 및 금융노사가 '재난 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에 750억원(은행연합회 200억원, 금융노사 550억원 상당)을 기부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은행연합회, 금융노사 및 관계 정부부처 협의를 통하여 동 기부금을 재원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2021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요건]

구분	1차	2차
재원	당초계획(460억원)	기금운용계획변경(+309억원)
사업 공고일	2021. 1. 15.	2021. 4. 6.
사업 대상자	① 사업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직종 (방문돌봄종사자 7종, 방과후학교 강사)에 종사 중 ②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① 사업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직종 (방문돌봄종사자 7종, 방과후학교 강사)에 종사 중 ②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소득 요건	'19년 연소득 1,000만원 이하	'20년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지원액	1인당 50만원	1인당 50만원
제외 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제외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2021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추가 확보 시 유사 사업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동 사업의 예산이 상당수 불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을 통하여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목표 지원인원을 9만명으로 설정하였고, 지원금 예산 450억원 중 333억 7,300만원(74.2%)을 집행하였다. 이후 근로복지진흥기금 계획 변경(2021. 3.)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목표 지원인원 6만명을 설정하였고, 지원금 예산 300억원 중 167억 5,800만원(55.9%)을 집행하였다.

[2021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금 액			인 원		
	지원목표액	지급액	집행률	지원목표	지급인원	지원률
1차	45,000	33,373	74.2	90,000	66,745	74.2
2차	30,000	16,758	55.9	60,000	33,516	55.9
계	75,000	50,131	66.8	150,000	100,261	66.8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1차 지원금의 지원 목표 9만명이 전체 지원대상 직종 종사자 49만명의 18%에 불과하여, 2차 지원의 경우 해당 직종 종사자들을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1차: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2차 연소득 1,300만원 이하)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지원대상자 중 상당수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지원금을 수령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지원금 지급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증액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과 동시에 2021년 제1회 추경(2021. 3.)을 통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을 확보하였고, 일정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기수혜자에게는 50만원, 신규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사업 대상인 특고·프리랜서²⁷⁾에는 방과후 교사, 가사·

2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 교육: 학습지도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육아도우미 등이 포함되어 동사업의 사업 대상자와 중복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과는 달리 ‘소득 감소’ 요건이 있으나 비교대상기간을 5가지로 제시하여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며,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 요건이 넓은 편이다. 또한, 지원액 역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므로, 신규로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유인이 크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의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이 되므로, 기수혜자의 경우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의 지원을 받을 것임을 알 수 있다.

[2021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비교]

구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2차 지원금)
대상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종사자(7종)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소득 요건	- '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 '21.2. 또는 '21.3.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19년 월평균, '20.2., '20.3., '20.10., '20.11. 중 택1)	'20년 연소득 1,300만원 이하
지원액	기수혜자: 50만원 신규: 100만원	1인당 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같은 시기에 편성한 유사 사업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추계하여 2021년 예산이 상당수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1-6.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예산 과다 편성

가. 현 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²⁸⁾은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420억 4,800만원 중 21.7%인 9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28억 5,7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0	42,000	48	0	42,048	9,137	21.7	54	32,85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이다.²⁹⁾ 현재 연간 최장 10일에 대하여 일단위로

28) 코드: 일반회계 1339-302

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2월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에 예비비를 배정받아 동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법정 휴가사용일수 10일 중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였으나, 개학 연기에 따른 가정 돌봄 수요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이후 근거법령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돌봄비용 지원 최대 기간도 기존의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다³⁰⁾. 이후 2021년에는 제1회 추경을 통해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도 제1회 추경을 통해 동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2020~2022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운영 경과]

시점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일수	가족돌봄비용 연간 최대 지원 일수	재원
2020.3.4.	10일	5일	예비비 213억원 편성
2020.4.17.	10일	10일	예비비 316억원 추가
2020.9.11.	20일	15일 ¹⁾	제4회 추경 563억원 편성
2021.3.25.	10일	10일	제1회 추경 420억원 편성
2022.2.21.	10일	10일	제1회 추경 95억원 편성

주: 1) 대규모기업·공공기관 근로자의 연간 최대 지원 일수는 10일임

1.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일수 및 가족돌봄비용 연간 최대 지원 일수는 근로자 1인당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책심회의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30) 다만,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원 최대 기간은 이전과 동일한 10일이다.

나. 분석의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의 2021년 집행률은 21.7%에 불과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액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의 목표 지원 인원을 12만명(맞벌이 8만, 외벌이 4만)으로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실제 지원인원은 2만 6,998명에 불과하였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은 2020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였는데, 2020년의 집행률은 48.5%, 2021년의 집행률은 21.7%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0~2022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집행률 및 지원률]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예 산			인 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목표인원	지원인원	지원률
2020	109,186	52,916	48.5	170,000	139,662	82.2
2021	42,048	9,137	21.7	120,000	26,875	22.4
2022	9,538	4,921	51.6	60,000	20,224	33.7

주: 2022년은 4월 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의 경우 제4회 추경 이후(2020. 9.) 2020년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등교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수요가 감소하여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1년의 경우 전년도와는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 등이 없었고, 유치원생 및 초등 1~2학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가급적 등교수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 7. 12. ~ 9. 5.까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전면 원격 수업이 실시될 수 있었으나, 교육부가 학사운영방안을 변경³¹⁾하여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에도 초등 1~2학년은 등교 수업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족돌봄비용 수요가 적었다는 입장이다.

31) 교육부 보도자료, '2학기 학사운영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 2021. 8. 9.

물론, 동 사업은 코로나19 진행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부의 학사운영방안 등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므로 명확한 추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20년 하반기부터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³²⁾ 학교들 역시 휴원·휴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액뿐만 아니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³³⁾

32) 교육부 보도자료,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2020. 10. 11.

33) 2022년에는 제1회 추경을 통하여 9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51.6%로, 고용노동부는 현재 접수 및 집행 추이로 볼 때 연내 예산현액의 80% 이상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사업이다. 동 단위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뉜다.

[2021 회계연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민취업 지원제도	1,243,596	1,436,502	35	△21,005	1,415,532	1,140,660	80.6	40	274,832
국민취업 지원제도	828,647	937,179	30	462	937,671	820,544	87.5	0	117,127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33,537	33,537	5	0	33,542	29,081	86.7	0	4,461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327,231	327,231	0	△21,460	305,771	200,711	65.6	0	105,060
국민취업 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54,181	138,555	0	△7	138,548	90,324	65.2	40	48,184

주: 1. 2020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 각 세부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한 경우만 기입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함

자료: 고용노동부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 재진입자, 미취업 청년, 장기 실업자 등의 사각지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동 사업은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지원규모가 변동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발전시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근거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법」¹⁾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I 유형 지원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을 제공하고, II 유형 지원자에게는 구직활동 참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사업은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및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²⁾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사업에는 I 유형 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세부사업에는 II 유형 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예산이 편성되었으며,³⁾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사업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중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1)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하였다. ②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만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③ 구직촉진수당의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고, 부정수급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및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한 반환명령·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세부사업의 경우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내 구직촉진수당으로 재편될 계획이므로, 2021년 예산에는 2021년 신규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2020년도 지원 인원에 대한 잔여 예산이 편성되었다.

3) 2021년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또한 동 세부사업에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사업 관련 예산사업 개요]

구분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사업명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지원 (I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내용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에 대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 민취업지원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에게 구직촉진 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미취업 구직자 대상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촉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들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체험 형, 인턴형)의 일경험 프 로그램 제공
사업기간	'21년~	'09년~	'21년~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 득층(만18~34세 청년층 은 120%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신용회 복지원자, 여성가장 등 특정취약계층 · 만18~34세 중위소득 120% 초과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50~100% 이하 만35~69세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준비가 필요한 구 직자와 취업준비가 된 구 직자를 대상으로 2가지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직접수행	직접수행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국고 100%
시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주: 2022년 사업 수행요건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세부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⁴⁾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중 I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I유형은 취업경험 등 기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면 수급자로 선정되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별 요건 비교]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 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 형	비경험	15~69세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120%↓		무관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경우 요건 심사 후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지급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서비스]

구 분		세부내용
취업지원서 비스	취업활동계획 수립	- 대상자의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 관련 심층분석 - 취업희망 분야에 대한 진로·직업상담 및 취업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상담·교부
	고용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제공	- 훈련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초기상담, 내일배움카드 발급

4) 코드: 일반회계 1234-300

구 분		세부내용
		-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복지서비스 연계	-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 복지·금융 서비스 안내 및 연계
	구직활동 지원	- 이력서 클리닉, 면접특강 - 취업처 정보제공 및 알선서비스
사후관리	사후관리	- 취업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취업성공수당 지급, 근속유지 상담 -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및 처리	부정수급 의심자 모니터링,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자료: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1유형)

나. 분석의견

국민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었고 인지도가 부족하여 2021년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2022년에는 더욱 높은 수준의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법률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요건을 완화해왔다. 먼저 고시를 개정하여 청년(18~34세 이하)에 대한 재산 기준을 상향(기존 3억원→ 4억원)하였고(7. 1. 고시개정), 1유형 선발형 청년 특례의 경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으며(7. 27. 법률개정)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⁵⁾ 재산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9. 7. 시행령 개정)하였다.

5)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2021년 I 유형 요건 변경 현황]

유형		요건(변경 전)			요건(변경 후)		
		소득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소득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 심사형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60% 이하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합	50%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60%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120% 이하		800시간 미만	120% 이하		무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모와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대도시 거주 청년의 경우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취업·구직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⁶⁾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산요건의 현실화 필요성이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데(요건심사형), 청년특례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람으로서 구직의사가 비교적 높은 청년층이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제도 운영 관련 현장·전문가 의견]

❶ 고용센터,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신문고 등 현장의견

-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것까지 취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다수 있음 → 청년 간 형평성을 위해 해당 요건 개선 필요
- I 유형 청년특례(중위 120%이하)의 취업경험(2년내 100일 미만)을 제한, 학업·아르바

자료: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1유형)」

6) 2021.4.29. 국토부 -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

이트를 병행한 경우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선발형 청년 취업경험 요건 폐지 요구

②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3.23) 지적사항

- 청년층은 인턴이나 단기 계약을 통해 2~6개월의 일경험을 하는 경우가 다수
- 또한, 정규직이 되기 위해 인턴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인턴 활동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

③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6.4)

-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노·사대표 및 전문가 등)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이렇게 요건을 완화하였음에도 2021년 I 유형의 목표지원 인원은 45만명(본예산: 40만명, 제1회 추경 5만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34만 1,147명(75.8%)으로, 2021년 목표지원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2021년 I 유형 목표인원 및 실제 지원인원]

(단위: 명, %)

구 분	목표인원(A)		실제 지원인원(B)	지원률(B/A)
	본예산	추경		
요건심사형	230,000	-	145,940	63.5
선발형 비경합	70,000	-	62,556	89.4
선발형 청년특례	100,000	50,000	132,651	88.4
합계	450,000		341,147	75.8

주: 실제 지원인원은 수급인정자 수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제도 도입 초기에 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 수준이 높은 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참여할 유인이 증가하였으며,⁷⁾ 시행 첫 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당초 기대치 대비 실제 참여인원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21년은 제도 시행 첫 해이므로 면밀한 인원 추계가 어려웠을 수는

7) 2021년에는 코로나19 한시지원사업(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다수 운영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참여나 중복수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청년수당 등이 운영되었다.

있으나, 2022년에는 2021년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2년 5월말 기준 1 유형 목표인원 및 실제 지원인원]

(단위: 명, %)

구 분	목표인원(A)	실제 지원인원(B)	지원률(B/A)
요건심사형	250,000	43,447	17.4
선발형 비경활	80,000	15,416	19.3
선발형 청년특례	170,000	46,482	27.3
합계	500,000	105,345	21.1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취업이 아닌 수당수급 목적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수급자는 상담사와 1년 이내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 인정 범위 내의 구직활동을 월 2회 이행하며, 6개월 동안은 구직활동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받게 된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이행 현황(전 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한 경우에 한정)을 살펴보면, 구직촉진수당 전 회차 수급 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로 종료한 경우는 7만 5,581명으로, 이 중 1만 1,784명이 6개월 수당 지급 이후 7일 이내 종료했다. 또한, 본인 희망에 따른 중단, 취업·창업 등에 따른 종료는 6만 1,139건으로, 1~6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았으나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후 본인 희망에 의해 중단한 경우는 4,899건이고, 이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후 7일 이내 중단한 경우는 1,008건에 달한다. 이는 취업활동계획을 6개월만 수립하고 종료한 경우 및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구직촉진수당만을 지급받은 후 조기에 동 프로그램을 종료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 회차 구직촉진수당 수급 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및 중단 현황]

(단위: 천)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구직촉진수당 지급 완료 후						
취업지원 서비스기간	1~6회 수급자	6개월 수당 지급 후 7일 이내 종료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 이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만료	75,581	11,784	3,387	13,504	6,745	3,175	8,755	28,231
본인 희망에 의한 중단	4,899	1,008	2,040	676	500	345	216	114
취업, 창업 등에 따른 중단 ¹⁾	56,240	5,686	23,273	8,923	6,310	4,805	3,446	3,797
계	136,720	18,478	28,700	23,103	13,555	8,325	12,417	32,142

주: 1)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수급 자격인정 철회 등 포함

1. 6회차를 전부 수급하지 않고 종료(취업, 창업, 중단 등)한 경우는 추계에 미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물론, 사업진행 과정에서 I 유형 수급자의 단순 수당목적으로의 참여 의도를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인 ‘월 2회 구직활동’의 인정 범위에는 직업훈련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직업지도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사업 참여 외에도 기타 구직활동을 인정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월 2회 구직활동을 이력서 제출만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인정 범위]

구직활동 이행방법	인정 범위
직업훈련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근거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법인 포함)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수강한 경우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고용·복지 연계사업 참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빈곤·양육 등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구직활동	(사회봉사활동)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구인 응모 등)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후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또는,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자료: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1유형)」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유사하게 「고용보험법」제40조8)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7조9)에

8)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서는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으로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위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이므로, 수급자 개인의 기여도가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어 구직촉진수당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도입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면접 없는 이력서 제출이 3회 이상인 구직활동자에게 상담사는 5회차부터 ‘가급적’ 취업알선 또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상담사 개인의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엄격도가 좌우되어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담사와 수급자 간 참여의지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므로, 고용노동부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기준]

구 분	내 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가 별도 과제를 의무 부여할 경우에 그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수급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되, <u>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u> 내의 과제이어야 함
구직활동 횟수	일부 위탁기관에서 매월 이행할 구직활동이 8개 이상인 경우까지 있으므로 가급적 4건 이내로 수립하여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 확보
허위·형식 구직활동	면접 없는 이력서 제출이 3회 이상인 구직활동자는 5회차부터 상담사의 과제는 <u>가급적</u> 취업알선 또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부여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세부 기준(2021. 3. 10.),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인정 등 보완지침(2021. 4. 28.)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전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전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2. 취업성공패키지 목표 지원인원 달성 미흡

가. 현 황

세부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¹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중 II 유형을 지원하며, 취업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장 1년 10개월 기간 내에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1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2021년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지원요건]

유형		요건		
		소득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Ⅱ 유형	저소득층 ¹⁾	60% 이하	재산요건 없음	무관
	특정계층 ²⁾	소득요건 없음		
	청년층			
	중장년층			

주: 1) I 유형 소득요건이 60% 이하로 완화('21.9.7.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II 유형 저소득층 폐지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등 취업취약계층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상담·진단, 직업능력향상, 집중취업알선의 단계로 지원되었으며, 각각의 단계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이 실비 및 생계비 목적으로 지원된다.

10) 코드: 일반회계 1234-302

[2021년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서비스]

구 분	내 용	수 당
1단계 (상담·진단)	- 대상자의 구직욕구 및 취업역량 관련 심층분석 - 취업희망 분야에 대한 진로·직업상담 및 취업상담 - 취업의욕고취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안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청년, 중장년은 최대 20만원)
2단계 (직업능력향상)	- 훈련연계: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기관 연계 -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해외취업 등 기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최대 6개월
3단계 (집중취업알선)	-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알선서비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특강 등) 월 2회 이상 제공	참여장려수당 월 1회 1회에 2만원 (자급한도: 최대 3회)

주: 2021년에는 1~3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2022년의 경우 2유형도 1유형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자료: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유형)」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향후 취업성공패키지(II유형) 목표 지원인원 설정 시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와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목표 인원은 19만명으로, 저소득·특정계층 4만명, 중위소득 120% 초과하거나 재산 4억원 초과 미취업 청년층 13만명 및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2만명으로 구성된다.¹¹⁾

다만, 실제 지원인원은 저소득·특정계층 3만 3,277명(83.2%), 청년 3만 8,126명(29.3%), 중장년 1만 70명(50.4%)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11) 2021년 취업성공패키지 목표 인원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취업성공패키지 목표 인원 산출 세부사항]

특정계층 (저소득 포함)	중위소득 50~60% 1만명, 조건부 수급권자 1만명 및 특정취약계층 2만명
청년	코로나19 확산·지속으로 인한 노동시장 여건 악화 등을 감안하여 13만명으로 확대
중장년	그간 중장년 참여현황('17년 2.4만명, '18년 1.7만명, '19년 1.6만명), 30~40대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년 목표 인원 수준(2만명)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 목표인원 및 실제 지원인원]

(단위: 명, %)

구 분	목표인원(A)	실제 지원인원(B)	지원률(B/A)
특정계층 (저소득층 포함)	40,000	33,277	83.2
청년층	130,000	38,126	29.3
중장년층	20,000	10,070	50.3
합 계	190,000	81,473	42.9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후 진행과정에서 I 유형의 소득·재산 요건 및 취업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상당수의 II 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촉진수당을 제공하는 I 유형을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I 유형 청년특례의 소득·취업경험 요건이 타 유형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청년의 II 유형 참여가 유독 저조하였다.

2021년은 제도 도입 첫 해이므로 I 유형과 II 유형의 참여수준에 대한 명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도 청년의 경우 2021년의 실제 지원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목표인원으로 설정하여 불용이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I 유형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II 유형 목표 인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¹²⁾

12) 참고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29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재참여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3. ~9.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취업지원 재참여)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그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2022년 5월말 기준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 목표인원 및 실제 지원인원]

(단위: 명, %)

구 분	목표인원(A)	실제 지원인원(B)	지원률(B/A)
특정계층	10,000	5,786	57.9
청년	80,000	16,669	20.8
중장년	10,000	6,411	64.1
합계	100,000	28,866	28.9

자료: 고용노동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3.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2021년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¹³⁾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동 사업은 구직의욕과 일경험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2가지(체험형, 인턴형)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비교]

구분	체험형	인턴형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취업역량 및 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고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
목적 및 활동 내용	일경험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직장적응능력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연계
참여기관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기업 등
활동 기간	30일	3개월
지원액	(참여자)실비(1일 2.1만원) (참여기관)담당자 멘토랑비(월 10만원)	(참여자)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구직촉진수당 대체) 지급 (참여기관)최저임금 100% 수준(월182만원) 수당 및 멘토랑비(월 10만원) (운영기관) 기본급 10만원 및 취업성공금 20만원
활동예시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일경험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실제 직무중심 일경험
'21 목표 지원인원 (’21 예산한액)	23,000명 (167억 9,000만원)	20,000명 (1,153억 4,916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코드: 일반회계 1234-303

2021년 동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체험형은 참여자 중 일경험을 통해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직장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가 필요한 자로, 30일간 NGO·공공기관 등에서 기초적인 사무보조 등을 수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실비(1일 2.1만원)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에게는 월 10만원의 멘토링 수당을 지급한다.

인턴형은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은 있으나 일경험이 필요한 자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간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직무 중심 일경험을 제공한다. 인턴형 참여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나 해당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참여기관에게는 1인당 월 182만원의 참여수당과 월 10만원의 멘토링 수당이 지급되며,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알선한 운영기관은 기본급 10만원 및 취업성공시 20만원을 지급받는다.

나. 분석의견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1년에는 체험형의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향후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체험형은 인턴형과는 다른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체험형에 적합한 인원을 연계하여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체험형의 목표지원 인원은 2만 3,000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6,633명으로 지원률은 28.8%에 불과하며, 예산현액은 167억 9,000만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36억 7,212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1.9%에 불과하다.

[2021년 체험형 지원 인원 및 민간경상보조 실집행액]

(단위: 명, 백만원, %)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지원률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3,000	6,633	28.8	16,790	3,672	21.9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당초 동 사업의 지원목표인원 산정 시 국민취업지원 제도 인원 등을 고려하였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단기 체험정보다는 업무 적응 및 숙달이 가능한 인턴형을 선호하여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체험형은 1일 4시간 2.1만원의 실비만을 지원하며, 업무 역시 사무행정 보조, 내방고객 안내, 행사지원 등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제고하기엔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입장에서 참여 유인이 적은 것이 수요부족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체험형을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인턴형으로 참여하기엔 업무능력이 낮은 자들이 단기간 현장에서 조직생활 이해도 향상 및 향후 취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이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체험형에 적합한 인원을 선정하고 연계하여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체험형 지원 인원 및 실집행액]

(단위: 명, 백만원, %)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지원률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7,500	3,110	41.5	5,700	806	14.1

주: 1. 2022년 5월말 기준

2. 체험형은 참여~수료까지 약 1.5개월 소요되며 수료 후 지원금 신청 및 집행이 진행되므로, 실제 참여인원과 예산 집행액 차이 발생(5월말 참여 → 6월 중순 수료 → 7월말 지원금 집행)

자료: 고용노동부

둘째, 고용노동부는 인턴형에 대한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불용을 초래하였고, 일경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취업률 70%를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인턴형의 목표지원 인원은 2만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4,492명으로, 지원률은 22.5%에 불과하고, 참여자수당인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은 1,153억 4,916만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209억 7,241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8.2%에 불과하다.

[2021년 인턴형 지원 인원 및 민간경상보조 실집행액]

(단위: 명, 백만원, %)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지원률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000 (본예산: 6,000 제1회 추경: 14,000)	4,492	22.5	115,349	20,972	18.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집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인턴형 참여자의 경우 양질의 기업에서 일경험을 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참여자들이 원하는 기업으로의 매칭이 쉽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미반영, 기간제 공시 부담 등¹⁴⁾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으며, 기업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문제 등으로 2021년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인턴형에 대한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추경(2021. 3.)을 통하여 1.4만명분의 예산(843억 7,400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한 불용을 초래하였다.

[2021년 인턴형 지원 인원]

(단위: 명)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참여인원	30	390	388	476	621	789	604	581	640	4,519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에도 고용노동부는 지원목표 인원을 1만 7,500명으로 설정하고, 1,057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5월말 기준 지원률은 21.0%인데, 동 사업의 수요 진작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양질의 기업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참여기업 발굴에 주력하는 등¹⁵⁾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4) (기간제 공시) 알리오(공공기관), 고용형태 공시제(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계상 기간제를 늘리는 것으로 보이는 부담이 있다.

[2022년 인턴형 목표인원 및 실제 지원인원]

(단위: 명, 백만원, %)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지원률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17,500	3,674	21.0	105,758	5,464	5.2

주: 1. 2022년 5월말 기준

2. 인턴형은 3개월간 진행되며, 매달 지원금 신청하는 구조로써 실제 참여인원과 예산 집행액 차이 발생(5월말 참여하더라도 기업의 임금지급 시점에 따라 1회차 지원금은 6월말~7월말 지원금 신청집행, 최종 3회차 지원금은 8~9월말 신청집행)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인턴형 프로그램 내에 편성되어 있는 취업성공수당은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1달 이내에 일경험으로 참여했던 기업과 동일한 기업으로 취업한 경우에 인턴형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알선한 ‘운영기관’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¹⁶⁾으로, 2021년에는 취업률 7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1년 취업성공수당 편성 기준]

본예산: 인턴형 6,000명×20만원×70%(취업률)= 8억 4,000만원

제1회 추경: 1만 4,000명×20만원×70%(취업률)= 19억 6,0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2021년 인턴형 참여자 수는 4,492명이나 일경험 수료 후 1개월 이내 동일 기업 정규직 전환자는 454명으로, 선발인원 기준 전환비율이 10.0%이고, 취업성공수당으로 편성된 금액은 28억원이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억 900만원에 불과하다.

15) 202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실적도를 평가하고 있다.

16) 일경험 참여자가 동일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 사업(1234-300)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1234-302) 예산으로 취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2021년 일경험프로그램 인턴형 참여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일경험 인턴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종료 여부 (일경험 수료인원 3,621명(A+B) 기준)					
선발 인원	수료 인원	중도 탈락	진행 중 인원 (A)	종료 인원 (B=가+ 나)	미취업 (가)	취업 (나)	취업인센티 브 미대상 ¹⁾	취업인센티 브 대상 ²⁾
4,492	3,621	871	529	3,092	719	2,373	1,919	454

주: 1) 타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일경험 수료 후 1개월이 경과한 뒤 취업한 경우를 의미함

2) 일경험 수료 후 1개월 내 인턴형 참여 기업에 취업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취업성공수당 관련 지원목표금액 및 지원금액]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목표금액(A)	지원금액(B)	집행률(B/A)	목표금액
본예산	840,000	308,800	11.0	2,450,000
추경	1,960,000			-
합계	2,800,000	308,800	11.0	2,450,00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수당 예산 편성시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고려 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층 취업률과 동일하게 7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층의 경우 취업률 70%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취업률 52%를 기준으로 취업성공금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기관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2021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인턴참여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동 사업의 취업성공수당으로, 타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예산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사업의 불용이 확대되었다.¹⁷⁾

1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일경험 수료 후 취업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위탁기관 또는 고용센터)와 일경험 위탁기관간 취업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경험 참여도

[일경험 참여자의 취업경로에 따른 국채·일경험 위탁기관 인센티브]

구분	일경험 위탁기관	국민취업지원 위탁기관	일경험·국채 겸업기관
동일기업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일경험 예산)	위탁기관 기여도에 따라 취업성공금 감액 또는 미지급 (국채취성패 예산)	중복 수급 불가 (일경험 취업성공수당 또는 국채 취업성공금 중 택일)
타 기업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취업성공금 지급 (국채취성패 예산)	국채 취업성공금만 수급(중복 불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여 여전히 취업률 7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2022년 예산도 상당액 불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취업성공수당 편성 기준]

1만 7,500명×20만원×70%(취업률)= 24억 5,0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불어 인턴형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턴형의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저조하므로 참여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턴형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 또는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일경험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경우에만 일경험 위탁기관의 취업기여도를 인정하여 일경험 위탁기관에 일경험 사업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인 경우(타 기업으로 취업, 수료 후 1개월 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사(위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보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예산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추가적으로 일경험 위탁기관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이 동일한 경우(겸업기관) 일경험 수료 후 1개월 이내 일경험 참여기업으로 취업시 일경험 취업성공수당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그 외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인 경우 일경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없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만 받을 수 있다.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턴 참여기업에서의 정규직 전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턴형의 지원수준이 높은 편(월 182만원×3개월)이나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직무능력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¹⁸⁾

18)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년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위탁기관, 고용센터 상담사가 매달 1회 이상 참여자에게 유선 연락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참여자 5명당 1명의 멘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 유선 연락 및 멘토 지정으로는 효과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2022년부터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 시 참여자마다 업무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차질 없는 집행 노력 필요

가. 현 황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¹⁾은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라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가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 컨설팅,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48억 6,500만원의 100.0%를 집행하였다.²⁾

[2021회계연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장년층취업지원	22,252	22,252	43	0	22,295	22,293	99.9	0	2
재취업지원 서비스 시행지원	4,865	4,865	0	0	4,865	4,865	100	0	0

주: 2020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사업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³⁾의 개정(2019. 4. 30. 개정, 2020. 5. 1.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40-300의 내역사업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였다.

3)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에 따라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퇴직예정자 등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업종·사업 등에 적합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 주요 직종·업종별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 및 기업담당자를 교육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예산 편성 내역]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4,865백만원

- ① 컨설팅: 3,825백만원 = (8.5백만원 × 450개소)
- ② 프로그램개발: 450백만원 = (90백만원 × 5과정)
- ③ 기업담당자 교육: 490백만원
= (0.4백만원×1천명)+(90백만원×1과정)
- ④ 홍보비: 10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중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는 11.6%로 고용노동부는 컨설팅 및 기업담당자 교육을 통해 의무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나, 2021년에 동 사업의 지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컨설팅 및 기업담당자 교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서는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재취업지원 서비스 실태조사’ 분석결과, 1,000인 이상 기업 중 재취업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0%에 불과하는 등 동 조항이 실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여력이 되는 일정규모(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업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은 없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2020. 5. 1. 시행).

2021년 6월말 기준 의무대상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대상기업(1,028개 사) 중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는 119개 사로, 의무대상 기업 대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는 11.6%이다.

[2021년도 의무대상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개 사)

의무대상 기업(1,028)		
서비스 제공	참여대상없음 등 ¹⁾	제도 미도입
531	378	119

주: 1) 50대 이상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가 없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으로 서비스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등

1. 2022. 6. 30. 기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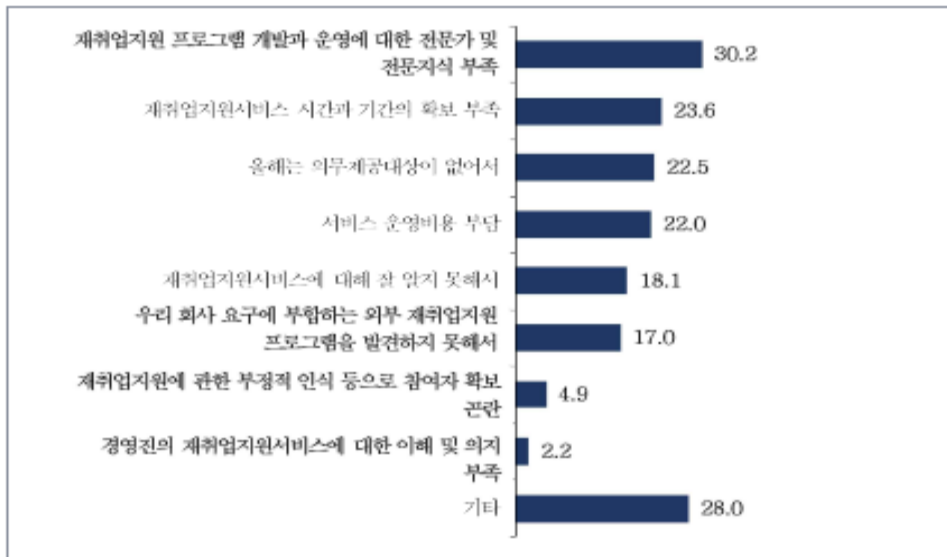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기업 추진 실태조사’⁴⁾ 결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체들은 서비스 미실시 이유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전문가 및 전문지식 부족’(30.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간과 기간의 확보 부족’(23.6%), ‘의무제공 대상자 없음’(22.5%) 등의 이유를 들어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교육 등의 정보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4) '21.10.~11., 한국고용정보원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실시 이유(복수응답)]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기업 추진 실태조사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1년 컨설팅 및 기업담당자 교육 사업의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컨설팅 사업⁵⁾의 목표개소는 450개소였으나, 실제 지원은 302개소에 불과하였고, 기업담당자 교육⁶⁾의 목표인원은 1,000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은 611명에 불과하였다.

5) 컨설팅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을 위탁한 후, 노사발전재단이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11개 기관, 각 기관마다 30개~50개의 물량 배정)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행기관들은 내부인력(전문컨설턴트)을 활용하거나 외부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12주의 컨설팅 프로세스를 거쳐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다.

6)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담당자(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900인 이상 기업 담당자) 대상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예산 편성 및 실적행 내역]

(단위: %)

예산 편성 내역(A)	실집행 내역(B)	집행률 (B/A)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4,865백만원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3,483백만원	71.6
① 컨설팅: 3,825백만원 = (8.5백만원 × 450개소)	① 컨설팅: 2,527백만원 = (8.37백만원 × 302개소)	66.1
② 프로그램 개발: 450백만원 = (90백만원 × 5과정)	② 프로그램 개발: 494백만원 ¹⁾ = (123.5백만원 × 4과정)	109.8
③ 기업담당자 교육: 490백만원 = (0.4백만원×1,000명)+(90백만원×1과정)	③ 기업담당자 교육: 363백만원 = (0.45백만원×611명)+(90백만원×1과정)	74.1
④ 홍보비: 100백만원	④ 홍보비: 98백만원	98.0

주: 간담회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일부 변경(업종별 5개 → 이직 사유 및 직종별 4개)하였고 컨설턴트 대상 교육 및 매뉴얼 개발을 추가로 진행하여 단가가 증가함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년은 제도 시행 첫 해이므로 컨설팅 및 기업담당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턴트 교육 등의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였고, 이에 2021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컨설팅 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무 불이행 시 제재규정을 두지 않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정보부족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컨설팅 및 기업담당자 교육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⁷⁾ 더 나아가 현재 컨설팅 및 기업담당자 교육의 경우 900인 이상 기업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은 아니지만 이행 노력이 필요한 기업에도 컨설팅 및 기업담당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중장년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7) 고용노동부는, 2022년 컨설팅 사업의 경우 목표 지원개소는 450개소로 7월말까지 322개소(72%)가 신청하였으며, 기업담당자 교육의 경우에는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 집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8) 현재 고용노동부는 법령 상 의무대상기업인 1,0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의무대상기업이 될 여지가 있는 9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가. 현 황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사업¹⁾은 청소년들의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을 돕기 위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269억 6,200만원의 100.0%를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한국잡월드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잡월드 운영지원	26,962	26,962	0	0	26,962	26,962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2년 5월,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의2에 근거하여 한국잡월드를 설립·개관하였으며, 만 4세 이상의 어린이·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수지차 보전 출연기관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제18조의2제4항²⁾에 근거하여 전시체험관 입장료와 광고수익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자체수입을 제외한 한국잡월드의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다.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9-301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나. 분석의견

한국잡월드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자체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정부출연금의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잡월드의 총운영비는 2014년 205억 7,400만원에서 2021년 313억 8,800만원으로 52.6%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2014년 132억 3,200만원에서 2021년 44억 2,600만원으로 △66.6% 감소하여 수지차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은 2014년 73억 4,200만원에서 2021년 269억 6,200만원으로 267.2%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정부재정 부담비율은 35.7%였으나 2021년에는 85.9%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잡월드 운영비 및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잡월드 총운영비(A)	20,574	23,730	24,324	26,245	30,705	32,816	29,555	31,388
자체수입	13,232	11,928	12,429	11,888	11,452	11,636	4,106	4,426
입장료수입	7,092	6,638	6,934	6,291	6,123	5,813	750	1,023
광고수입	2,958	1,870	1,963	2,291	2,096	2,291	1,811	1,146
부대수입	2,244	2,275	1,299	1,578	1,743	1,458	347	1,241
이월수입	938	1,145	2,233	1,728	1,490	2,074	1,198	1,016
정부출연금 (B)	7,342	11,802	11,895	14,357	19,253	21,180	25,449	26,962
정부재정 부담비율 (B/A)	35.7	49.7	48.9	54.7	62.7	64.5	86.1	85.9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의 연도별 입장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입장객은 83만 8,146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63만 9,686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2021년의 입장객 수는 각각 6만 7,026명, 11만 766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한국잡월드 연도별 입장객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2012	597,915
2013	838,146
2014	777,070
2015	717,154
2016	752,100
2017	689,693
2018	666,968
2019	639,686
2020	67,026
2021	110,766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직업체험 다중이용시설로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 실적이 저하되고 있고, 코로나19 등의 사건 발생에 따른 외부활동 기피 경향에 취약하며, 한국잡월드 외의 직업체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체험수요가 분산되었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현황]

(단위: 만 명)

2012	2019	2022	2024(추계)
959	807.4	748.2	709.2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학령인구(6-21세)]

[한국잡월드 및 유사민간시설 현황]

구분	시설명	개관	주요 프로그램	동시 수용인원	입장료	비고
경기 성남	한국잡월드	'12.5	- 청소년체험관 44개 체험실 76개 직종 - 어린이체험관 42개 체험실 54개 직종 - 진로설계관(직업흥미 검사, 재능검사) - 숙련기술체험관 10개 체험실 온라인 직업진로 프로그램 4종	928명 (1일 3,302명)	어린이 18,000원	
					청소년 9,000원	
					숙련 5,000원	
					온라인 11,000원 ~13,000원	
서울 잠실	키자니아 서울	'10.12	어린이 54개 체험실	900명	오전 45,000원 오후 38,000원	롯데 월드 지하 1~2층
경기 부천	아이지니아스 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	'10.12	- 중·고생 뮤지, 패션 등직업체험(29종) - 진로교육 프로그램(비대면 포함)	580명	학교단위 요금	
부산	키자니아 부산	'16.4	어린이 55개 체험실	800명	오전 45,000원 오후 36,000원	해운대 센텀시티몰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한국잡월드는 학령인구 감소 및 코로나19 등으로 입장객 유치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수치차 보전기관으로서 자체수입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정부출연금의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자립도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³⁾

먼저, 한국잡월드는 2022년 3월부터 평일 체험자 요금을 12.5% 인상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하여 요금 인상 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번 요금 인

3) 한국잡월드는 최근 3개년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B와 C등급을 받아왔다.
[한국잡월드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 연도	2018	2019	2020
등급	C	B	C

상으로 2024년까지 재정자립도를 24% 이상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존 한국잡월드의 어린이 체험관 가격은 평일 16,000원, 주중 18,000원으로 민간 시설 요금(키자니아 36,000원~45,000원)의 1/2 수준이었으므로, 일정 정도의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잡월드 요금인상 현황]

구분		회차 당 이용요금		비고
		인상 전	조정(2022.3.1.~)	
청소년체험관		평일 8,000원 토·공휴일 9,000원	요일 구분 없이 9,000원	당일 추가 체험 시 회차당 요일 구분 없이 6,000원
어린이 체험관	체험자	평일 16,000원 토·공휴일 18,000원	요일 구분 없이 18,000원	당일 추가 체험 시 요일 구분 없이 15,000원
	보호자 및 인솔자	평일 8,000원 토·공휴일 9,000원	요일 구분 없이 9,000원	당일 추가 체험 시 요일 구분 없이 5,000원
청년	메카이브	현재 개관 준비 중으로 미정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한국잡월드는 사업 대상자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키자니아 등의 민간 시설보다 사업 대상자가 넓으며, 청소년들이 국내 우수한 숙련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전시 및 체험 콘텐츠를 도입하여 2020년 11월부터 개관하는 등 양질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⁴⁾가 개정(2021. 5. 18. 시행)되어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되었던 한국잡월드의 사업대상이 청년층에까지 확대가 되었으며, 한국잡월드는 청년층을 주 고객으로 설정한 만들기 체험관(메카이브⁵⁾)을 구축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하여 2022년 5월에 개관하였다.

다만, 여전히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시설로 인식되고 있고, 최근 3개년 입장객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68~75%가 평일 입장객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단체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⁶⁾ 사업대상자 확대가 입장객 증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간시설과는 차별화하여 청소년·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발굴 및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2021년 평일/주말 입장객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¹⁾
평일	화~금	화~금	월~금
	451,647(74.9)	45,759(68.4)	73,041(70.2)
주말	토, 일	토, 일	일
	151,619(25.1)	21,140(31.6)	30,960(29.8)

주: 1) 2019년 일요일 고객 수가 평일의 50.9% 수준에 그쳐, 2021년부터는 일요일을 휴관하고 학교, 단체 등에서 이용이 원활한 월요일을 개관함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⁷⁾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사업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자립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명칭: 메카이브(MAKIVE: Maker와 Archive의 합성어로 만들기체험의 중심지라는 의미)

위치: 한국잡월드 본관 4~5층

면적: 3,355m²(약 1,000평 규모)

대상: 청년 및 키즈, 가족 등 전 연령

개관: 2022.5.

내용: 청년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공예 클래스(취미, 창업 목적) 등의 프로그램 제공

6) 2019년 기준 입장객 비율: 청소년 57%, 어린이 43%

7) 연령: 어린이(어린이체험관): 만4세~초등4학년

청소년(청소년체험관, 숙련기술체험관): 초등5학년~고등3학년(만18세)

청년(메카이브): 2~30대 청년 포함 전 연령층

가. 현 황

해외취업지원 사업¹⁾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취업 알선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509억 2,500만원의 98.4%를 집행하고 8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해외취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외취업지원	52,625	52,625	0	△1,700	50,925	50,092	98.4	0	833
K-MOVE 스쿨	25,290	25,290	0	0	25,290	25,290	100.0	0	0
민간해외 취업알선	1,530	1,530	0		1,530	1,000	65.4	0	530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17,120	17,120	0	△1,700	15,420	15,210	98.6	0	210
해외통합 정보망운영	738	738	0	0	738	738	100.0	0	0
국내해외 취업지원	1,930	1,930	0	0	1,930	1,930	100.0	0	0
해외취업촉진 인프라지원	4,455	4,455	0	0	4,455	4,425	99.3	0	30
사업운영비	1,562	1,562	0	0	1,562	1,499	96.0	0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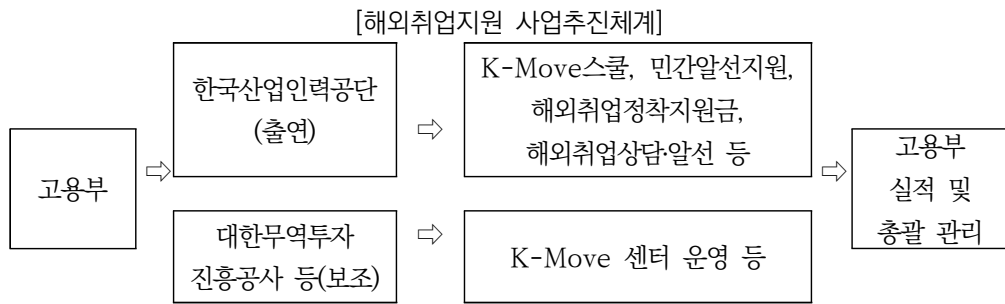
주: 2020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K-Move스쿨 운영과 민간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추진체계와 각 내역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51-304의 내역사업



[2021년 해외취업지원 내역사업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K-Move 스쿨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적극 활용, 양질의 일자리를 선(先) 발굴하여 맞춤형 인재로 양성 후 해외취업 연계 - (지원액) 1인당 (단기) 580만원 (장기) 800만원 (트랙Ⅱ) 1,350만원 - (지원규모) '21년 목표 3,032명(단기 655명, 장기 1,927명, 트랙Ⅱ 450명)
민간해외취업알선	○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한 해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액) 취업자 1인당 200~300만원(알선 수수료) - (지원목표) '21년 690명
해외통합정보망	○ 기관별로 분산된 해외취업·창업·인턴·봉사 등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를 통해 통합 제공하고 청년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www.worldjob.or.kr)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 경력경로 파악 - (지원대상) ① 34세 이하, ②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③ 월드잡 사이트 내 사전 구직 등록한 자 - (지원액) 1인당 신흥국 600만원, 선진국 400만원 취업 후 3회(1, 6, 12개월) 분할 지급 - (지원인원) '21년 목표 3,960명(신흥국 1,260명, 선진국 2,700명)
국내해외취업지원	○ 국내 해외취업센터(서울·부산) 운영, 해외취업 사업 홍보 및 고용위기지역(군산, 통영) 해외취업 지원 * 서울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 * 부산 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드림빌딩 610호
해외취업촉진 인프라 지원	○ 코트라 무역관 등에 설치된 해외 K-Move센터를 활용하고 취업유망지역의 재외공관과 협업하여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고, 해외취업 박람회 등 채용 행사 개최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K-MOVE 스쿨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K-MOVE 스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 기관을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약정을 체결한다. 운영기관은 연수생을 선발하고,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연수생에 대한 해외취업을 연계하며, 연수 수수료 후 1년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K-MOVE 스쿨 운영기관 소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K-MOVE 스쿨 운영기관 소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수	과정수	연수인원
서울	33	87	1,456
부산	11	34	452
대구	9	16	278
충남	6	14	170
대전	3	11	151
경기	6	10	111
광주	3	6	90
경북	5	9	64
충북	3	4	58
전북	2	4	54
인천	1	3	42
강원	1	2	23
경남	2	2	20
세종	1	1	10
합계	86	203	2,979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K-MOVE 스쿨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취업실적에 따른 금액을 취업내정자에 대하여 가정산하고 이후 미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원금에 한정하여 반환받고 있으므로, 향후 K-MOVE 스쿨 운영기관 약정서에 반환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통계를 조사하여 동 사업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K-MOVE 스쿨은 연수 시간, 취업 인정기준 등에 따라 단기, 장기, 트랙Ⅱ 과정으로 구분된다. K-MOVE 스쿨의 2021년 지원 목표 인원은 단기 655명, 장기 1,927명, 트랙Ⅱ 450명이며, 지원 인원은 단기 625명, 장기 1,885명, 트랙Ⅱ 469명으로 전반적으로 집행이 양호하다.

[K-MOVE 스쿨 과정 개요]

유형	지원내용	주요내용
장기과정	1인당 최대 800만원 지원	600시간 이상의 해외취업연수과정
단기과정	1인당 최대 580만원 지원	200시간 이상의 해외취업연수과정
트랙Ⅱ	1인당 최대 1,350만원 지원	고임금, 전문직을 목표로 하는 1,000시간 이상의 해외취업연수과정

자료: 고용노동부

[2019~2021년 K-MOVE 스쿨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예산편성 내역	집행 내역
2019	28,330백만원: 단기(600명×580만원)+장기(2,600명×800만원)+트랙Ⅱ(300명×1,350만원)	27,762백만원: 단기(642명×493만원)+장기(2,639명×782만원)+트랙Ⅱ(296명×1,338만원)
2020	23,648백만원: 단기(655명×580만원)+장기(1,926명×800만원)+트랙Ⅱ(329명×1,350만원)	23,507백만원: 단기(428명×507만원)+장기(2,138명×792만원)+트랙Ⅱ(339명×1,299만원)
2021	25,290백만원: 단기(655명×580만원)+장기(1,927명×800만원)+트랙Ⅱ(450명×1,350만원)	24,851백만원: 단기(625명×527만원)+장기(1,885명×808만원)+트랙Ⅱ(469명×1,349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2020년의 단기, 장기, 트랙Ⅱ의 취업률이 각각 18.5%, 27.7%, 13.9%로 매우 낮다.²⁾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취업국가(일본, 미국 등)의 입국금지·취업비자발급 중단 등³⁾으로 K-MOVE 스쿨 연수생의 해외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년 대비 취업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다.

[2018~2021년 K-MOVE 스쿨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단기	장기	트랙Ⅱ	단기	장기	트랙Ⅱ	단기	장기	트랙Ⅱ	단기	장기	트랙Ⅱ
취업 인원(A)	424	1,824	188	251	1,014	114	79	593	47	60	134	3
참여 인원(B)	637	2,647	276	642	2,639	296	428	2,138	339	625	1,885	469
취업률 (A/B)	66.5	68.9	68.1	39.1	38.4	38.5	18.5	27.7	13.9	9.6	7.1	0.6

자료: 고용노동부

K-MOVE 스쿨에서는 운영기관 지원금의 70%는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신청을 받아 지급하며 지원금의 일부(30%)는 연수과정 운영 후 취업률과 수료율을 정산하여 차등 지급한다. 매년 1~6월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후 연수가 개시되고, 연수 과정은 3~11개월 진행되며, 과정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취업지원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연수과정이 회계연도를 넘겨 사업이 종료되므로 예산을 사고이월 하며, 30%는 과정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해왔다.

2) 2021년 연수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연수 종료 후 8개월 이내 취업보고 예정

3) (미국) 취업 관련 비자발급 중단 행정명령('20.6월), (일본) 신규비자발급 중단 및 한국체류자 입국제한('20.3월)

[해외취업연수사업 실적에 따른 금액 지급기준]

[취업실적에 따른 금액 지급기준(20%)]		[수료실적에 따른 금액 지급기준(10%)]	
취업실적	지 급 액	수료실적	지 급 액
계약인원의 70% 이상	계약금액의 20%	계약인원의 70% 이상	계약금액의 10%
계약인원의 60%이상 ~ 70% 미만 취업	계약금액의 15%	계약인원의 60%이상 ~ 70% 미만 수료	계약금액의 5%
계약인원의 50%이상 ~ 60% 미만 취업	계약금액의 10%	계약인원의 60% 미만 수료	-
계약인원의 50% 미만 취업	-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해외 각국의 입국금지 및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 연수과정 종료 후 해외취업이 보류된 연수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2020년 동 사업에 참여한 후 취업이 되었으나 출국을 하지 못한 취업 내정자를 취업률에 반영하여 잔금을 우선 정산(가정산)하고, 2022년 9월까지 발생 하는 취업자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하였다.⁴⁾

가정산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가정산 대상 취업내정자 478명 중 129명은 취업을 하였고, 미전환자 349명 중 136명은 가정산 금액 환수를 완료 하였으며, 213명은 2022년 9월말까지 발생하는 취업자까지 인정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⁵⁾ 또한 2020년의 경우 가정산 대상 취업내정자 338명 중 취업전환자는 126명이며, 미전환자는 212명으로, 미전환자에 대하여는 2022년 9월말까지 발생 하는 취업자까지 인정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운영기관으로부터 2019년 참여자 중 미취업한 136명분의 취업실적에 따른 지원 금액 1억 9,182 만원(원금)을 반환받았다.

4) 가정산 대상: 2019년 과정 전 국가, 2020년 과정 6개국(일본,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2019년 과정의 취업이 발생하는 2020년은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여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 제한이 이루어져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2020년 과정의 취업이 발생하는 2021년은 코로나 백신접종 등으로 일부 국가의 입국이 재개되어 입국 및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5) 입국제한으로 출국을 못한 국가, 국가별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이 재개되고 있는 일본의 정산을 연기하였고, 미얀마의 경우 현재도 입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른 국가로의 취업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산을 연기하여 2022년 9월에 미취업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K-MOVE 스쿨 가정산 대상 취업내정자 및 취업전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가정산 대상 취업내정자	취업전환자	미전환자		비고
2019	478	129	34 9	반환 완료자: 136 미전환자(2022.9. 확정 예정): 213	전 국가
2020	338	126	2022.9. 확정 예정: 212		6개국 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도 K-Move스쿨 가정산 환수현황]

(단위: 원)

운영기관	연수과정	환수 완료일자	환수금액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미국 e-commerce 웹/앱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	2021-08-19	5,955,750
수원상공회의소	Linux&Java개발자 양성과정	2021-11-30	24,495,000
글로벌인	[우수과정] 2019년 2차 일본취업 IT JAVA기반 WEB/APP 개발자 연수과정	2021-12-07	10,790,250
글로벌인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프론트 매니저 양성과정(군산과정)	2021-12-13	17,542,320
글로벌인	[우수과정] 2019년 3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양성과정	2021-12-13	17,043,590
(주)아이씨엔그룹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5기	2021-12-16	8,586,000
(주)아이씨엔그룹	미국 산업체 자동화시스템운용 기계전기전자 전문인 양성과정	2021-12-16	3,186,000
아이씨에스글로벌	글로벌 INDIA 비즈니스 개발/운영 실무인력 양성과정 2기	2021-12-16	22,800,000
한국소프트웨어 아이엔씨	일본취업 엔터프라이즈 자바개발자 양성과정 7기	2021-12-16	5,821,120
한양여자대학	싱가포르 2년 취업비자취득 호텔실무자(정규직) 취업 연수과정 16기	2021-12-16	11,444,000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미국 상경 6기 물류 포워딩 유통전문가 취업 양성과정	2021-12-20	10,691,790
신라대학교	일본 IT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1기	2021-12-21	18,355,200
전경련 국제경영원	일본 서비스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정(취업연계형)	2021-12-28	20,710,400
경남정보대학	일본 콘텐츠개발 역량을 갖춘 IT전문가 양성과정	2021-12-29	14,400,000
합 계			191,821,420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산업인력공단은, K-MOVE스쿨 연수과정 운영 약정서에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내용이 없어「(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를 참고하였고, 이 경우는 운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금만을 반환받고 지급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반환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⁶⁾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운영기관과 체결하는 약정서에 반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 집행 이후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율을 관리하지 않고, 해외취업지원사업 내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⁷⁾을 통해 정착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고용유지율 통계를 확보하고 있는데, K-MOVE 스쿨 취업자 중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2019년의 1년 고용유지율은 60.6%, 2020년의 1년 고용유지율은 55.1%이다.

6)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2014.1.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7)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목적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 경력경로 파악
지원대상	① 34세 이하, ② 취업일 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③ 월드잡 사이트 내 사전 구직 등록한 자
지원액	1인당 신흥국 600만원, 선진국 400만원 취업 후 3회(1, 6, 12개월) 분할 지급
2021년 지원목표 인원	3,960명(신흥국 1,260명 선진국 2,700명) * 신흥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 선진국: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호주, 뉴질랜드, 독일, 영국 등

[2019~2021년 K-MOVE 스쿨 취업자 중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자 고용유지율]

(단위: 명)

사업연도	기준인원 (1차지원금 지급인원)	6개월 고용유지율 (2차지원금 지급인원)	1년 고용유지율 (3차지원금 지급인원)
2019	1,131	938 (82.9%)	685 (60.6%)
2020	838	633 (75.5%)	462 (55.1%)
2021	585	512 (87.5%)	239 (진행중)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외 취업 특성 상 취업비자 및 각 국의 체류기한 제한 등 해외취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고용유지율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유지율은 취업처의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및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이 적절하였는지, 직무능력을 형성하기에 적절한 기간을 확보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므로 고용유지율을 통해 사업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동 사업은 해외 취업을 통하여 해외에서의 업무경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나, 1년 고용유지율이 55~60%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간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은 2021년 기준 1명 당 단기 580만원, 장기 800만원, 트랙Ⅱ 1,35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연계를 하는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1년 고용유지율도 55~60%에 불과하여 사업이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의 의문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K-MOVE 스쿨 연수과정 종료 후 수료자를 대상으로 수료 이후 6개월, 12개월 동안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입장이나, 이를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아 실제 전체 K-MOVE 스쿨 참여자들의 고용유지율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후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선 통계는 K-MOVE 스쿨로 취업한 후 신흥국 600만원, 선진국 400만원의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1, 6, 12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받은 경우를 조사한 자료이므로,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고용유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전체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통계를 조사하여 동 사업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안정성, 업무 및 임금 수준만족도 등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3-2. 민간해외취업알선 사후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한 해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약정을 체결하여 해외취업자에 대해 취업인정기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취업자 연봉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민간해외취업알선 취업자 연봉별 지원금 단가]

취업자 연봉	1인당 지원금	지원인원(21년)
2,4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200만원	540명
3,500만원 이상	300만원	150명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K-MOVE 스쿨 및 공공알선과 비교할 때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이 낮으므로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동 사업은 전체 참여자의 고용유지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집행률은 60.7%, 2021년은 44.4%, 2021년은 64.8%로, 실제 집행 내역과 비교할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2021년 민간해외취업알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예산편성 내역	집행 내역	집행률
2019	2,300백만원 (700명×200만원)+(300명×300만원)	1,395백만원 (504명×200만원)+(129명×300만원)	60.7%
2020	1,800백만원 (600명×200만원)+(200명×300만원)	800백만원 (250명×200만원)+(100명×300만원)	44.4%
2021	1,530백만원 (540명×200만원)+(150명×300만원)	992백만원 (271명×200만원)+(150명×300만원)	64.8%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9년에는 해외취업인정 연봉기준을 강화⁸⁾하면서 기준에 적합한 해외취업자 감소로 집행률이 전년 대비 미흡하였고, 2020~2021년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취업국가 봉쇄정책에 따른 해외취업자 감소로 지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동 사업의 3개년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9~2022년 취업경로별 정착지원금 지원자의 고용유지율을 자료를 살펴 보면, 2020년 민간알선 취업자의 1년 고용유지율은 45.9%로, K-Move 스쿨(55.1%) 및 공공알선(63.3%)을 통한 고용유지율보다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년 고용유지율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다.⁹⁾

8) 2019년부터는 기본급만 인정하고 교통비, 주택보조, 현물지급 등 복리후생목적의 수당을 제외하고 있다.

9) 3차 정착지원금은 2018년도부터 개시하였으므로 2018. 3.15 이후 취업자(스쿨 560명, 민간알선 91명, 공공알선 1,450명)부터 1년 고용유지율이 파악되고 있다.

[2018~2021년 취업경로별 정착지원금 지원자의 고용유지율]

(단위: 명)

사업연도	취업경로	기준인원 (1차지원금 지급인원)	6개월 고용유지율 (2차지원금 지급인원)	1년 고용유지율 (3차지원금 지급인원)
2018	K-Move스쿨	1,131	925 (81.8%)	355 (63.4%) ¹⁾
	민간알선	414	320 (77.3%)	45 (49.5%) ¹⁾
	공공알선	2,602	2,223 (85.4%)	931 (64.2%) ¹⁾
2019	K-Move스쿨	1,131	938 (82.9%)	685 (60.6%)
	민간알선	256	214 (83.6%)	131 (51.2%)
	공공알선	3,020	2,532 (83.8%)	1,858 (61.5%)
2020	K-Move스쿨	838	633 (75.5%)	462 (55.1%)
	민간알선	220	162 (73.6%)	101 (45.9%)
	공공알선	2,334	1,945 (83.3%)	1,477 (63.3%)
2021	K-Move스쿨	585	512 (87.5%)	239 (진행중)
	민간알선	176	141 (80.1%)	36 (진행중)
	공공알선	1,720	1,532 (89.1%)	814 (진행중)

주: 1) 3차 정착지원금은 2018년도부터 개시하였으므로 2018년의 경우 3월 15일 이후 취업자(스쿨 560명, 민간알선 91명, 공공알선 1,450명)만 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1년 고용유지율 산출

1. 민간알선이란 동 사업을 통해 민간기관의 해외일자리 발굴과 알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수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공공알선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코트라 등 공공기관이 해외 구인기업과 대한민국 국적의 구직자를 연계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9~2020년도 민간알선의 경우 미국으로의 알선 비율이 높은데(60.9%), 미국의 자국민 보호 관련 행정명령(2020. 3.)에 따라 2019년도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국 귀국을 권고하여 근무 기간 중 중도 귀국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해외 동향 등의 문제로 고용유지가 어려웠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없었던 2018년도에도 민간알선 부분은 타 부분에 비하여 고용유지율이 낮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취업알선으로 지원금을 받는 운영기관이 취업연계에만 치중하고 고용안정성, 구직자와 기업 간 적절한 매칭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동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이 청년 경력 형성에 미치는 효과,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피드백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취업 6개월 및 12개월의 근속여부, 귀국여부 등 사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 고용노동부는 정착지원금 지원자에 대한 고용유지율 통계만을 보유하고 있고 민간해외취업알선 참여자의 고용유지율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고용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전체 참여자의 고용유지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후관리도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내일배움카드 사업¹⁾은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예산은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의 특화 여부에 따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 분리 편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내일배움카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내일배움카드	1,015,005	298,109	4	0	1,313,118	1,141,904	87.0	911	170,303
(일반회계)	214,504	83,430	0	0	297,934	154,862	52.0	781	142,291
(고용보험기금)	800,501	214,679	4	0	1,015,184	987,042	97.2	130	28,01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는 2019년까지 실업자·재직자로 구분하여 발급되었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에는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고용보험 기금에는 전직실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운영하여 사업성격·목적의 특화 여부에 따라 일반회계에는 일반고 특화훈련,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고용보험 미가입자 훈련 등 특화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에는 일반직종 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편성하고 있다.

이후 2021년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 신기술훈련을 일반회계의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 통합하여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으로 재편하였고, 2022년에는 고용보험기금에 산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65-300, 고용보험기금 1063-652

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고용보험기금 일반훈련사업 중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였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개편 전	개편 후
지원대상	· 실업자 · 재직자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	· 5년 (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 200~300만원	· 300~5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이후 예산구조]

구분	2019	2020	2021	2022
편성 기준	고용보험가입 이력	사업성격·목적	사업성격·목적	사업성격·목적
일반 회계	· 일반훈련(신규실업자) · 일반고 특화훈련(신규실업자) · 고보 미가입자 훈련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 고보 미가입자 훈련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 고보 미가입자 훈련	·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 고보 미가입자 훈련 · 평생크레딧(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고용 보험 기금	· 일반훈련(전직실업자·재직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전직실업자) ·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훈련	· 일반훈련(실업자, 재직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훈련(실업자, 재직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훈련(실업자, 재직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은 각각 디지털 분야의 실무인재 양성, 기초훈련을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20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K-디지털 크레딧의 지원목표 인원을 설정하였다. 먼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경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²⁾에서는 혁신적인 기술·훈련 방법을 가진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³⁾을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2021년 목표 양성 인원을 17,015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⁴⁾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및 지역산업계 주도 인재양성 사업으로 1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으로, 이 중 2021년 지원인원으로 7,000명⁵⁾을 반영하여 총 24,015명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경우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전국민 대상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위해 2021년 지원목표 인원을 6만명으로 설정하였다.

[20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및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목표 인원]
(단위: 명)

구 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목표	24,015	60,000

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7.) 및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2021. 6.)을 바탕으로 재작성

2)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 7.

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k-digital training 인력양성 계획]

(단위: 명)

구분	총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원	17.8만 명	17,015	25,521	33,580	44,186	58,141

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7.)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4) 관계부처 합동,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2021. 6.

5)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3,000명의 경우 2022년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사업 지원 인원에 포함하고 있다.

4-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K-digital training)⁶⁾은 내일배움카드(일반)의 내역사업으로, 디지털 분야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2,224억 6,200만원 중 36.6%인 81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10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내일배움카드 (일반)	214,504	297,934	0	0	297,934	154,862	52.0	781	142,29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139,032	222,462	0	0	222,462	81,454	36.6	0	141,008

주: 2020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2년 현재 계속 사업으로 수행 중이다. 기존의 집체 강의 중심의 전달형 훈련과 달리 ① 개별 기업의 수요를 반영⁷⁾하여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 ② 전체 훈련시간의 30% 이상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편성하여 훈련과정을 공급함으로써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 커넥트’, ‘우아한 테크코스’, ‘멋쟁이 사자 처럼’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훈련기관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실무지향적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된다.

6) 코드: 일반회계 1065-300의 내역사업

7) 구체적으로는, 설문조사, 간담회, FGI,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참여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참여기업과 훈련과정 설계, 훈련교재 제작, 훈련과정 운영, 모니터링 및 피드백, 취업지원 등 훈련과정 설계·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맺어 이를 훈련과정 설계·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주요 특징]

과제중심교육	능동적인 학습환경	개인맞춤형 교육
■ 프로젝트 기반 ■ 해커톤¹⁾ ■ 기업과제 해결중심	■ 교사·강사 없는 교육 ■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 인터랙티브	■ 챗봇 ■ AI기반 ■ 코드리뷰 ■ 레벨 달성 교육

주: 1) 해커톤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제한된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관련 이벤트를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전면화 및 제2벤처붐 등으로 IT 기업 및 일반기업도 SW 개발자 인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민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1. 6. 9.)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업·지역·산업계 주도형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에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산업계 주도 인재양성 등 3개 유형을 추가하였다.

[2021년 도입한 신규 훈련 유형 개요]

훈련 유형	개 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인력수요가 있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 등 기업이 포함된 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삼성전자의 SSIFY 등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K-Digital Training을 활용하여 지원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
지역·산업계 주도 인재양성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¹⁾ 지역 내 대학 등 훈련기관과 기업을 매칭,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지역 내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

주: 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 산업계(대한상의·경총 등),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지역 대학 등으로 구성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의미(서울·부산 등 17개 구성·운영 중)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20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예산으로 총 2,22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다. 훈련비는 훈련시간 및 훈련직종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되나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을 수강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약 1,000만원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⁸⁾

[20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본예산〉

- (훈련비, 훈련장려금) 17,015명 × 8,171천원 = 약 1,390억원
 - 지원인원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목표 양성인원을 17,015명으로 설정
 - 지원단가 : K-디지털 트레이닝의 전신인 '20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내일배움카드(고보)) 중 디지털·신기술 직종의 1인당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평균하여 산출

〈1회 추경〉

- (훈련비, 훈련장려금) 3,000명 × 15,800천원 = 474억원
 - 지원인원: 혁신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비해 기관 및 과정 수가 적어 혁신 훈련기관 위주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자 3,000명 물량 추가편성
 - 지원단가: 15,800천원 = 훈련비 단가 14,000천원^① + 훈련장려금 단가 1,800천원^②
 - ① '21.3월 기준 K-Digital Training 혁신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훈련비 평균단가
 - ② 300천원('21년 훈련장려금 지급액) × 6개월(평균 훈련기간)

〈2회 추경〉

- (훈련비, 훈련장려금) 4,000명 × 8,850천원 = 354억원
 - 지원인원 : 「민·관 협력기반의 SW인재양성 대책」('21.6.9)에 따라 K-Digital Training 내 새로운 훈련유형을 추진하여 SW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4,000명 물량 추가편성
 - 지원단가 : 8,850천원 = '21.6월 기준 평균 훈련비+훈련장려금 11,800천원 × 3/4(추경 시점을 고려, 25% 감액)
- (운영비) 21개 기관 × 60,000천원 × 0.5개월 = 6.3억원
 - 지원기관 : 21개 기관 = 4개 협회 + 17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지원단가 : 60,000천원 = 훈련수요조사, 훈련생 모집 등 인력 1명 + 훈련과정 및 훈련생 관리 인력 1명 인건비

주: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 지원하는 비용이고,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장기 훈련과정(140시간 이상, 원격훈련 제외)에 참여하여 단위기간(월) 80% 이상 출석한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월 30만원)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8)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300~500만원)를 웃도는 수준이므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참여 시 1회 훈련비 전액 지원을 통해 훈련생들이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은 전액 차감한다.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20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지원목표 인원을 설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충분한 훈련과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2022년에는 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확보 등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2021년 지원목표 인원은 2만 4,015명이었으나, 실제 지원인원은 1만 1,727명(48.8%)에 불과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224억 6,200만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814억 5,400만원(36.6%)에 불과하였다.

[2021년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

(단위: 명, 백만원, %)

인 원			예 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지원률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4,015 (본예산 17,015명, 1회 추경 3,000명, 2회 추경 4,000명)	11,727	48.8	222,462	81,454	36.6

주: 실제 지원인원 및 실집행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1년은 사업 집행 1년 차로,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이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 있는 훈련공급기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훈련사업의 경우 훈련과정 공모 및 심사·선정(3개월) → 훈련기관의 훈련생 모집 등 개설 준비(1~2개월) → 훈련실시 → 훈련비 지원(실시일 기준 최소 한 달 이후부터 매월 지급)의 과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훈련기관의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 집행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지원 목표인원은 3,600명으로, 당시 집행률은 99.9%에 달하였으나, 2021년의 경우 목표 지원인원이 24,015명으로, 2020년에 비해 사업규모가 대

폭 확대되었다. 따라서 더 많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확보해야 했으나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정규 훈련과정 공모 시 평균 선정률은 약 40%로, 교과편성이 훈련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훈련장비 요건이 불충족되는 등 훈련 역량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목표 양성인원은 24,015명이었으나, 2020년 9월 최초 공모를 통해 2021년 초에 운영 가능한 훈련규모가 3,500명에 불과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총 7차례 공모를 실시하여 212개 훈련과정, 15,005명의 훈련가능인원을 확보하였으나, 해당 훈련과정 대부분이 5~11월에 개설되면서 집행 시기가 지연되었다.

더욱이 제2회 추경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였으나, 추경 확정 시점 전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형별로 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⁹⁾ 선정 이후 과정 홍보, 훈련생 모집·선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훈련이 실시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지연되었다.

[2021년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세부 사업별 지원인원]

(단위: 명, %)

구분	목표인원	지원인원	지원률
K-digital training	20,015	10,379	51.9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4,000	1,037	33.7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261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50	

자료: 고용노동부

9)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6월 공고, 8월 선정/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8월 공고, 10월 선정

[20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주요 훈련과정 예시]

훈련유형	기관명	훈련과정명	직종	정원 (연간 운영인원)	주요 참여기업
K-digital training	멀티 캠퍼스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24명 (192명)	와이즈와이어스(주)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주)모두의 연구소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 AIFEL(아이펠)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20명 (320명)	주식회사미로 주식회사커먼컴퓨터
	(주)구름	AI기술 자연어 처리 전문가 양성 과정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50명 (200명)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주)로드컴플릿
	코드 스테이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PM) 부트캠프	빅데이터 분석	30명 (210명)	주식회사 발란 (주)하프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멋쟁이 사자처럼	멋쟁이사자처럼 프론트엔드 스쿨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운영)	60명 (180명)	차봇코딩 주식회사 (주)지오코칭
	멀티 캠퍼스	자형 웹서비스 플랫폼 개발	스마트웹 & 콘텐츠 개발	50명 (400명)	메가존(주) (주)드림시큐리티
	(주)엘리스	엘리스 SW Engineer 트랙	스마트웹 & 콘텐츠 개발	70명 (280명)	주식회사코멘토 (주)웹그림
	(주)슬데스크	파이썬 & 브라이언스 기반 빅데이터 분석 개발자 과정	빅데이터 분석	30명 (90명)	(주)위세아이텍 네이버시스템(주)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삼성전자(주)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빅데이터 전문가	25명 (1200명)	-
	(주)포스코	포스코 AI-Beta 아카데미	빅데이터 전문가	25명 (300명)	-
	(주)KT	KT AME School DX 컨설팅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25명 (300명)	-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코드 스테이츠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과 개발 한반도 DevOps 부트캠프	클라우드 운영관리	40명 (160명)	베스핀글로벌 모두싸인
	스마트 인재개발원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개발자 과정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25명 (200명)	(주)게더링 (주)새하정보시스템

주: 1. '연간운영인원'은 훈련과정 개설 유효기간 1년 범위 기준으로 심사 신청한 훈련의 실시인원의 총합을 의미함

2. '주요 참여기업'은 열거된 기업명 중 2개 기업을 예시로 기재했으며,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기업이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참여기업이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즉, 고용노동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에 따라 2021년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지원목표 인원을 설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충분한 훈련과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2022년 지원목표 인원은 2만 8,521명으로 2021년보다 확대되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상반기 통합 공모를 통해 총 314개의 훈련과정 및 연간 2만 7,085명의 훈련규모를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인 훈련과정 확보를 위해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를 진행하여 약 1.2만명 규모의 신규 훈련과정을 심사 중에 있고,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등까지 확대되어 훈련대상이 확대¹⁰⁾되어 집행이 원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2022년 6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29.9%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훈련과정 확보 등을 통하여 K-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2년 K-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6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8,521	9,407	324,822	97,253	29.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21.9)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등까지 확대하였다.

4-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요 진작 위한 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¹¹⁾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141억 1,300만원 중 9.7%인 13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27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다.¹²⁾

[2021회계연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내일배움 카드(고보)	800,501	1,015,180	4	0	1,015,184	987,042	97.2	130	28,012
K-디지털 기초 역량훈련	20,000	30,000	-	△15,887 ¹⁾	14,113	1,374	9.7	-	12,739

주: 1) 일반직종훈련(내역사업) 내 내내역간 조정

1. 2020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2021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구직·재직여부 무관), 중장년(구직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들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에 별도로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 50만원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본예산으로 200억원, 제1회 추경으로 100억원이 편성되어 총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1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63-652의 내내역사업

12)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2021년까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도 예산안에는 평생크레딧 사업에 포함되어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시작연도	2021년
사업목표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기초역량 개발 지원
참가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구직·재직여부 무관), 중장년(구직자)
지원내용	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 외 50만원 추가 지원
훈련내용	코딩·빅데이터 분석·AI의 이해 등 디지털 기초과정 훈련을 100% 원격훈련으로 제공
지원계획 (2021년)	300억원 (6만명, 1인당 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동 훈련은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파이썬, 코딩 등의 디지털 기초 훈련(훈련별로 5~70시간이 소요)으로, 기존 내일배움카드의 디지털 훈련의 경우 동영상 중심 일방향 강의로 진행되나,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프로젝트·과제 실습, 코드 리뷰 등 쌍방향 원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 사업 프로그램 예시]

기관명	과정명	난이도
(주)구름	바로 써먹는 풀스택 기초 - 파이썬으로 시작하기	초급
	바로 써먹는 풀스택 기초 - 자바스크립트로 시작하기	초급
패스트캠퍼스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초급
	머신러닝 / AI 첫걸음 시작하기	중급
	프로그래밍 첫걸음 시작하기	초급
	Python & Django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중급
	Java & SpringBoot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중급
	나만의 iOS 앱 개발 입문	중급
러닝핏	코알못을 위한 블록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초급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첫만남	초급
	어서와 파이썬 처음이지	초급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2021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집행률은 4.6%로 매우 부진한데 이는 동 사업의 근본적인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국민의 디지털 기초역량 함양이라는 사업의 취지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중장년 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디지털 업종과 비디지털 업종을 융합하는 직무융합과정을 발굴하는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대책’에 따라 지원목표 인원을 설정하였으나 실집행이 매우 부진하다. 구체적으로 2021년 지원목표 인원은 6만명이나, 실제 지원인원은 4,140명(6.9%)에 불과하였으며, 예산현액은 300억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은 13억 7,400만원(4.6%)에 불과하였다.

[2021년 K-디지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

(단위: 명, 백만원, %)

인 원			예 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지원률	계획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60,000 * 본예산 40,000 1차 추경 20,000	4,140 * 청년: 2,572, 중장년: 1,568	6.9	30,000	1,374	4.6

주: 실제 지원인원은 한 과정의 훈련을 수료한 인원을 의미하며 한 과정은 평균 30만원으로 약 1~2개월이 소요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은 100% 쌍방향 원격 훈련으로 실시되므로 훈련 모니터링, 데이터 셋 구축 등 훈련기관 전산시스템 연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2021년 7월에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였고, 인지도 제고에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훈련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디지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제도 개선 주요 내용]

구분	기 존	개 선
지원 대상 확대	• 청년(구직자·재직자) • 대학교 4학년 • 중장년 여성(구직자)	• 청년(구직자·재직자) • 대학교 3~4학년(‘21.9월) • 중장년 남성·여성(구직자)(‘21.8월)
훈련 부담 경감	• 수강신청 시 훈련비의 10% 자부담 결제	• 훈련과정 수료 시 자부담금 환급(‘21.8월)
규제 완화	•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최근 5년 이내 받은 경우 수강 제한	•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 최근 2년 이내 받은 경우 수강 제한(‘21.8월) • 제한 폐지(‘22.2월)

자료: 고용노동부

제도 도입 초기에 동 사업은 디지털 분야 비전공 청년과 여성구직자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줄여 노동시장 진입과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전 국민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남성 구직자에게도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 확대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부 대학생 및 구직자에게는 10% 자부담도 훈련 참여의 어려움이 될 수 있으므로 훈련과정에 80% 이상 참여하여 수료 시 환급할 필요성도 인정되며, 기술수명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므로 수강제한 기간을 폐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2년의 경우 지원 목표인원은 5만 5,000명이나, 6월말 기준 실제 지원인원은 1만 4,121명이고, 예산현액은 275억원이나 실집행액은 41억 4,9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5.1%에 불과하다.

[2022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6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계획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55,000	14,121	27,500	4,149	15.1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집행 부진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근본적인 수요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접적으로 취업에 연계되는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나 디지털 기초 역량은 향후 업무의 기초가 될 부분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자’의 경우 동 과정을 수강할 유인이 적다. 또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인문·사회계 등 IT 비전공자로 디지털 기초역량이 부족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이 필요한 사람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나 타 직종 취업 희망자는 동 사업을 신청할 유인이 부족한 것도 집행 부진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의 디지털 기초역량 함양이라는 동 사업의 취지 및 효과성을 고려하여 현장 실무에 필요한 기초 디지털 기술 습득 및 업무역량 향상 등을 위해 ‘중장년 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디지털 업종과 비디지털업종을 융합하는 직무융합과정¹³⁾을 발굴하여 타 직종 구직자 및 재직자에게 유익한 과정을 확대 편성하는 등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근본적인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3) 고용노동부는 동 과정의 예시로 쇼핑몰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제품 기획을 위한 판매시장 빅데이터 분석 등을 들고 있다.

가. 현 황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¹⁾은 소규모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8,103억 4,700만원 중 95.5%인 7,73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5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810,347	810,347	810,347	773,805	95.5	0	36,54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 및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²⁾를 지원한다.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1-300

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간 가입요건 등이 상이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인원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입기준(고용보험의 경우 법인이 아닌 5인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및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등 소규모 건설 공사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및 가입 상한연령(▲고용: 65세 이하, ▲연금: 60세 이하) 등이 상이하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개요]

구분		근로자	예술인	특고
지원요건 (‘21년 기준)	사업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가입이력	1년간 가입이력 無	-	
지원내용	지원개월수	36개월		
	지원비율	80%		
	지원대상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2020. 12. 10.부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2021. 7. 1.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³⁾가 가입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역시 기존에는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예술인 및 특고를 포함하고 있다.

3)「고용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보고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표현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나.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술인과 특고 지원 예산 편성 시 추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안내를 강화하는 등 새롭게 추가된 직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고용보험)에 대한 지원목표 인원은 39만 731명, 지원인원은 37만 5,210명(96.0%)이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목표 인원은 3만 5,000명, 지원인원은 1,468명(4.2%)이며, 특고의 지원목표 인원은 43만명이나, 지원인원은 5,217명(1.2%)이다.

[2021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지원	지원률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근로자	고용보험	390,731	375,210	96.0	115,156	105,062	91.2
	국민연금	419,955	426,794	101.6	602,316	644,819	107.1
예술인		35,000	1,468	4.2	9,677	189	1.9
특고		430,000	5,217	1.2	59,443	260	0.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술인 및 특고 지원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당초 사업규모(근로자 10인 미만)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사업 시행 전 근로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요건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1년 예산편성 당시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에 방과후 교사를 추가하여 총 15개 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21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12개 직종으로 확정되어 적용 직종 역시 예상보다 감소하였다.⁴⁾

그리고 「고용보험법」⁵⁾에 따르면 예술인의 경우 월 보수 50만원, 특고의 경우

4) '21.7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개 직종 중 2개 직종(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은 '22.1월부터, 1개 직종(골프장 캐디)은 '22.7월부터 각각 고용보험 적용 예정이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나, 코로나19로 저소득 예술인 및 특고의 소득활동이 제한되어 예술인 및 특고의 월소득기준 미달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1월에는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년 7월에는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에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되었다.

[2022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추가 지원대상자]

구 분	직 종	적용시기
플랫폼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22.1월
특고 추가직종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22.7월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사업주가 체결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2022년 5월말 기준, 동 사업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을 살펴보면, 근로자(고용보험) 지원률은 73.1%이나, 예술인의 지원률은 11.7%, 특고는 4.9%, 플랫폼 종사자는 0.1%⁶⁾로 여전히 근로자를 제외한 직종의 지원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목표 및 지원인원(5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인원			예산		
		지원목표	실제지원	지원률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근로자	고용보험	439,948	321,419	73.1	135,173	37,615	27.8
	국민연금	472,715	405,027	85.7	706,577	238,078	33.7
예술인		15,222	1,785	11.7	3,683	102	2.8
특고		171,000+ 130,000 ¹⁾	8,393	4.9 ²⁾	41,368+ 15,725	729	1.8 ²⁾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82,774	48,438	58.5	19,552	1,875	9.6
	국민연금	72,157	-		82,918	-	-
플랫폼종사자 ³⁾		71,000	43	0.1	17,176	33	0.2

주: 1) 2022년 7월 추가직종: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2) 추가되는 직종을 제외한 기존 특고 기준 지원률만 산정

3)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다른 특고와 달리 특례(사업주가 아닌 플랫폼사업자에게 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부여)가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특고와 따로 편성하였으나 플랫폼종사자도 특고 직종에 해당하므로, 2023년부터 특고 보험료 지원 예산에 함께 편성 예정

1. 22년부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가입이력 요건이 완화(1년간 가입이력 無 → 6개월간 가입이력 無)됨에 따라 상용근로자와 구분하여 별도 편성(2021년 이전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 편성 및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술인 및 특고 지원금 예산 추계 시 10인 미만 사업 종사 비율을 고려하였으나(예술인 41.3%, 특고 43.3%), 명확한 추계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피보험자통계는 통상 2~3개월이 지나야 정확한 자료확인이 가능한데 예술인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특고의 경우 2021년

6) 2022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 경우 보험료 부과 및 지원절차로 인하여 현재(22.5월) 한달치 지원실적만 집계되었다.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절차) 1월 고용보험 가입 → 월보수액 신고(~2월말) →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4월) →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5월말)

7월부터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되었으므로 특고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의 연구자료로 추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1·2022년 예술인 및 특고 예산편성 추계 비교]

구분	2021	2022
예술인	[지원자수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지원수준) × 지원개월수] ↳ [35,000명 × (180만원 × 1.6% × 80%) × 12개월] = 9,677백만원	[지원자수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지원수준) × 지원개월수] ↳ [15,222명 × (180만원 × 1.4% × 80%) × 12개월] = 3,683백만원
	지원자수(3.5만명) - 전체 예술인(17.8만명) 중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보수가 50만원~220만원인 예술인은 3.5만명으로 추정	지원자수(1.5만명) - 전체 예술인(17.8만명) 중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보수가 50만원~230만원인 예술인(3.5만명) 및 <u>10인 미만 사업 종사 비율(41.3%)¹⁾</u> 반영
특고	[지원자수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지원수준) × 지원개월수] ↳ [430,000명 × (180만원 × 1.6% × 80%) × 6개월] = 59,443백만원	[지원자수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지원수준) × 지원개월수] ↳ [171,000명 × (180만원 × 1.4% × 80%) × 12개월] = 41,368백만원
	지원자수(43만명)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특고(104.2만명) 중 월보수액이 70만원~220만원인 노무제공자는 43만명으로 추정 (당초 고용보험 적용대상 소득기준으로 논의되던 70만원에 기초하여 지원인원을 추계. 다만, 근로자 가입요건(월 60시간 이상) 등을 고려하여 고보위 의결을 통해 소득기준을 80만원으로 설정)	지원자수(17.1만명) 고용보험 적용 12개 직종 특고(79만명)²⁾ 중 월보수액이 80만원~230만원 비중(50%) 및 <u>10인 미만 사업 종사 비율(43.3%)²⁾</u> 반영

주: 1) 2021년 6월 기준 피보험자 통계를 통해 추계

2)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자료를 참고하여 도출

1. 2021년은 월보수액 220만원, 2022년은 월보수액 23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6월 기준 피보험자 통계를 통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1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자의 비율은 예술인 36.8%, 특고 17.7%로, 특히 특고의 경우 2022년 예산 편성 시의 추계비율(43.3%)에 비해 현저히 적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10인 미만(A)	전체(B)	10인 미만 비율(A/B)
근로자	3,357,021	14,492,016	23.2
예술인	16,603	45,151	36.8
특고	85,833	483,630	17.7

주: 2021. 12.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불어 예술인의 경우 2022년 예산 편성 시 10인 미만 사업 종사비율을 41.3%로 가정하여 추계하였고, 실제 2022년 6월 기준 10인 미만의 비율이 36.8%이므로 사업장 규모 비율에서는 실제와 유사하게 추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2022년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인의 소득활동 제한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월 보수 50만원 미만) 대상 예술인이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의견이며, 더불어 사업의 인지도 부족도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예술인과 특고 지원 예산 편성 시 추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안내를 강화하는 등 새롭게 추가된 직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험기계교체 사업의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강구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안전투자 혁신사업¹⁾은 위험기계·기구 및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에 투자하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3,271억원 중 83.3%인 2,725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545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27,292	455,465	0	0	455,465	399,900	87.8	0	55,565
안전투자 혁신사업	327,100	327,100	0	0	327,100	272,528	83.3	0	54,57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2021년 도입)은 「산업안전보건법」²⁾에 따른 인증제도 도입(2009~) 전 제작되어 구조적으로 위험하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위험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소요비용의 50%(사업장 당 최대 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51-350의 내역사업

2)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2021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요]

구분	위험기계교체	위험공정개선
대상	사망사고 기인물 중 전면교체 등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위험기계기구 중 천대당 사망사고가 높은 이동식 크레인 등 3종	다양한 기계설비와 위험공정으로 인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중 노후화된 뿌리산업(주조, 소성, 표면처리)
지원품목	미인증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및 권동식 리프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위험 공정 중심 개선 지원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1억원 한도	
자부담금 납부방식	일시금 직접 납부 또는 금융방식(리스, 할부) 중에서 선택 (이동식기계 교체는 금융방식(리스, 할부)으로만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안전투자 혁신사업 중 위험기계교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교체 사업의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위험기계별 재해현황을 살펴보면,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등 3종 기계·기구의 1,000대당 사고사망자 발생자 수는 5.0~7.6명으로, 타 기계기구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미인증 위험기계(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17,703대 중 약 70%에 해당하는 수치(12,277대)를 위험기계교체 사업의 3년간 지원목표로 설정하였다.

[위험기계별 재해현황]

(단위: 대, 개소, 명)

품목	설치대수 (사업장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1,000대당	
				재해자수	사망자수
합계	670,395 (142,569)	26,429	730	39.4	1.1
크레인(이동식크레인 제외)	192,037 (44,212)	6,160	236	32.1	1.2
이동식크레인	18,654 (14,619)	1,331	142	71.4	7.6
고소작업대	13,720 (9,842)	879	86	64.1	6.3
리프트	14,928 (9,834)	1,049	74	70.3	5.0
프레스	65,513 (8,498)	12,547	32	191.5	0.5
전단기	7,011 (5,155)	315	1	44.9	0.1
컨베이어	66,300 (8,977)	1,726	90	26.0	1.4
사출성형기	42,953 (3,963)	1,319	20	30.7	0.5
롤러기	2,468 (709)	290	1	117.5	0.4
산업용로봇	28,680 (3,216)	335	29	11.7	1.0
곤돌라	3,706 (162)	116	6	31.3	1.6
압력용기	214,425 (33,382)	362	13	1.7	0.1

주: 2019. 10. 1. 1. ~ 12. 31. 조사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교체 사업 3년 지원 목표]

(단위: 대)

지원대상	국내 사용현황	3년간('21~'23) 지원목표			
		총계	2021	2022	2023
계	17,703	12,277	4,911	3,683	3,683
이동식크레인	8,570	5,880	2,352	1,764	1,764
고소작업대	2,475	1,734	694	520	520
리프트	6,658	4,663	1,865	1,399	1,399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2021년 동 사업의 지원 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지원목표 대수는 4,911대이나, 실제 지원대수는 2,770대(56.4%)이고, 예산현액은 2,350억원, 실집행액은 2,014억 5,000만원(85.7%)이다.

[2021년 위험기계 교체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비교]

(단위: 대, 억원)

구분	지원 대수		예산	
	지원목표	실제 지원	예산현액	지원액
이동식크레인	2,352	1,600	1,411	1,230
고소작업대	694	1,114	659	775.4
리프트	1,865	56	280	9.1
계	4,911	2,770	2,350	2,014.5

자료: 고용노동부

전반적인 지원 대수 저조의 원인은 대체로 리프트의 지원 실적 부진에 기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작업과 직결되는 위험기계로 교체 수요가 많은 반면 리프트의 경우 주요 생산설비가 아닌 단순 운반 설비이며 교체 시 작업공정 해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교체의지가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프트 1,000대 당 사망자수는 5.0명으로 전반적인 위험기계기구의 사망자수인 1.1명보다 높은 비율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들이 리프트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리프트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³⁾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2년 예산 편성 시 2021년 실제 지원 단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합리적인 수준의 개별단가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이동식 크레인의 개별단가는 6,000만원, 고소작업대는 9,500만원, 리프트는 1,500만원이었으나 결산 기준 이동식 크레인의 개별단가는 7,690만원, 고소작업대는 6,960만원, 리프트는 1,600만원이다.

[2021년 위험기계 교체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비교]

지원대상	2021년 예산편성					2021년 결산			
	지원 목표(대)	예산 (억원)	개별 단가 (백만원)	평균 단가 (백만원)		지원 대수(대)	지원액 (억원)	개별 단가 (백만원)	평균 단가 (백만원)
계	4,911	2,350	-	47.9	⇒	2,770	2,014.5	-	72.7
이동식 크레인	2,352	1,411	60			1,600	1,230	76.9	
고소작업대	694	659	95			1,114	775.4	69.6	
리프트	1,865	280	15			56	9.1	16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경우 시장조사 결과 가격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동식크레인은 7,000만원(실가액 1.4억원) 이상의 대형기계 신청 수요가 많아(약 67.6%) 결산 시 개별단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7,000만원(실가액 1.4억원) 미만의 소형 기계 신청 수요가 많아(약 45.4%) 결산 시 개별단가 하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입장이다.

3) 고용노동부는 리프트 지원대상을 확대(2021: 권동식 리프트(1종) → 2022: 권동식, 유압식, 원치식 리프트(3종))하고, 원자재 가격상승을 반영한 표준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시장조사 현황]

구분	제조사	모델종류	소요비용	범용장비		
				사양	소요비용	가격 평균값
이동식크레인	11개사	10개	1억원 ~ 3억원	정격하중 7~7.6톤 (작업높이) 23~25m	1.1억원 ~ 1.3억원	1.2억원
고소작업대	10개사	16개	0.45억원 ~8.8억원	정격하중 0.2~0.4톤 (작업높이) 15~45m	1.8억원 ~ 2.0억원	1.9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물론, 2021년은 사업수행 첫 해로 사업장들의 실제 수요 및 명확한 개별단가를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2년 동 사업 대상으로 노후 위험기계 6종⁴⁾을 추가하면서 예산상 문제로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평균단가를 30%씩 감축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개별단가는 4,200만원, 고소작업대의 개별단가는 6,65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특히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2021년 실제 지원단가(7,690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단가 편성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지원목표 대수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임을 의미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적정 수준의 개별단가를 산정하고 지원 목표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사망사고 감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 노후화로 인한 파손, 오작동 등 사고가능성 높은 30년 이상 노후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프레스, 사출성형기, 크레인,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 등 6종)까지 지원 대상 위험기계로 추가하였다.

[2022년 위험기계교체 사업목표 및 예산]

지원대상	2022년 예산 편성				
	지원목표 (대)	예산액 (억원)	개별단가(백만원)		
			2021	2022	증감율 (%)
계	4,348	1,762	-	-	-
이동식크레인	1,764	740	60	42	△30
고소작업대	520	346	95	66.5	△30
리프트	1,399	210	15	15	-
노후 위험기계(6종)	665	466	-	70	-

자료: 고용노동부

셋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우선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사업장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는 사업장의 자부담이 50%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⁵⁾

특히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사업장의 재해율은 0.63%이나 5인 미만의 경우 1.16%, 전체 사업장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43‰이나 5인 미만의 경우는 0.99‰로, 사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재해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높아지고 있다.

5) [5인 미만 기업 위험기계 보유현황 및 2021년 지원대수]

(단위: 대, %)

구분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지원대수	1,278(19.7)	908(48.9)	12(1.5)
미인증 기계보유현황	6,479	1,855	819

주: 1. 지원대수는 2021년 기준

2. 괄호 안은 지원대수/보유현황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사업장 규모별 재해율 및 사고성 사망만인율]

(단위: %, ‰)

구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전체 사업장
재해율 ¹⁾	1.16	0.69	0.62	0.53	0.63
사고성 사망만인율 ²⁾	0.99	0.50	0.42	0.31	0.43

주: 1) 재해율: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의미함(재해자수/근로자수×100)

2) 사고성 사망만인율: 연간 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고성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함(사고성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통계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교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⁶⁾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이 적은 건설현장의 지원비율을 높게 설정하여 규모·공사금액별로 단계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도 영세사업장의 보조지원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 지원 개요]

지원대상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를 상위업종 등)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 미만 및 고위험업종은 70%	제조 서비스업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굴착기·로더·타워크레인 보유·임대 사업장	▶ 사업장 당 3,000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70%	제조·서비스업/ 화재폭발 폭염

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업종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	▶ 건설현장 당 3,000만원(연간 3개소* 한정)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 * 20억 미만 건설현장 최대 6개소, 3억 미만 최대 9개소 ※ 20억원 미만 60%, 50억 미만 50%	건설업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사업 주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제외)	▶ 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제조 서비스업

자료: 고용노동부

가. 현 황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¹⁾은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지킴이로 채용하여, 사업장 순찰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174억 1,800만원 중 82.3%인 14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업종별 재해예방	69,571	89,489	0	0	89,489	80,301	89.7	0	9,188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12,236	17,418	0	0	17,418	14,339	82.3	0	3,07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 실시 이후 2020년까지 '건설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하였고 2021년에는 당초계획을 통해 '조선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하였으며, 2021년 사업 수행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2021. 7.)을 통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을 사업대상으로 추가하였다.²⁾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152-350

2) [2021년 각 업종의 사고사망 만인율]

(단위: 1/100)

구분	사고사망 만인율
건설업	1.75
제조업	0.46
선박건조 및 수리업	0.88

[2021년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대상]

구분	사업대상	기간	비고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10개월	* 당초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2021. 7.)으로 인원 확대
조선업	완성배·블럭 제작업체의 협력업체 및 수리조선 사업장		
제조·서비스업	50인 미만 5대 위험기계* 보유 제조업 사업장 및 건물관리업·폐기물처리업 사업장 * 5대 위험기계: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승강기), 사출기, 산업용로봇	4개월	기금운용계획 변경(2021. 7.)으로 신설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대상으로 추가된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작업 공정이 일정하여 상대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의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었으며, 지원 수준 및 채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이 쉽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사업 분야 적절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만 55세 이상 퇴직자’ 중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자격 소지자를 건설업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지킴이로 채용하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2021년 7월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제조·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지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요건을 완화하여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중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건물 등의 종합 관리사업	0.23
폐기물처리업	2.13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자격 요건]

구 분	자격요건
건설업	만 55세 이상 퇴직자 중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자격 소지자
조선업	
제조·서비스업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 중 해당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소지자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예산현액은 109억 5,100만원으로, 95억 3,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0%이며, 조선업의 예산현액은 23억 8,600만원, 집행액은 21억 5,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2%이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도입되었던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예산현액은 37억 9,300만원, 집행액은 24억 200만원, 집행률은 63.3%으로, 연령요건을 완화하였음에도 집행이 부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구분	예산편성 내역	집행 내역
건설업	• (본예산) 30.59백만원×330명 ×10개월/10개월 = 10,095백만원	27.89백만원×371명 ×8.4개월/10개월 = 8,692백만원
	• (추경예산) 30.59백만원×70명 ×4개월/10개월 = 856백만원	21.49백만원×60명 ×2.6월/4개월 = 838백만원
조선업	• (본예산) 30.59백만원×70명 ×10개월/10개월 = 2,141백만원	27.88백만원×83명 ×8.4개월/10개월 = 1,944백만원
	• (추경예산) 30.59백만원×20명 ×4개월/10개월 = 245백만원	21.44백만원×15명 ×2.6월/4개월 = 209백만원
제조·서비스업	• (추경예산) 30.59백만원×310명 ×4개월/10개월 = 3,793백만원	21.48백만원×172명 ×2.6개월/4개월 = 2,402백만원

주: 추경예산 중 사무공간 조성 등 임차료 예산은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앞서, 안전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나, 2021년 안전보건지킴이 시급은 8,750원으로, 법정 최저시급인 8,720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안전보건지킴이 근무기간(4개월)이 짧아 채용이 부진하였다는 의견이다. 또한, 2021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실내 작업장을 방문하는 제조·서비스업에서 뚜렷하여 채용이 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위탁)’을 편성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방문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50인 미만 위험설비보유 제조업 사업장, 50인 미만 건물관리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에 추가 편성되었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고 있다. 이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유사 사업의 사업 대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위탁) 개요]

사업 대상	50인 미만 위험설비보유·화학물질 취급 제조업 사업장, 공사금액 1억 미만 건설현장, 50인 미만 건물관리업·음식업 사업장 등
사업 내용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업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으로 지정 받은 기관 및 서비스업 관련 비영리단체 중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수행요원을 통한 현장방문 기술지원 실시
2021년 예산현액	507억 9,200만원(물량 478,800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는 건설업, 조선업의 안전보건지킴이 예산만 편성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작업 공정이 변경되어 불시 방문 효과가 큰 건설업·조선업과 달리 제조·서비스업은 작업 공정이 일정하여 안전보건지킴이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채용이 부진하여 사업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예산편성 내역]

구분	예산편성 내역
건설업	$31.57\text{백만원} \times 330\text{명} \times 10\text{개월} / 10\text{개월} = 10,420\text{백만원}$
조선업	$31.57\text{백만원} \times 70\text{명} \times 10\text{개월} / 10\text{개월} = 2,210\text{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이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편성되었던 제조·서비스업은 위험한 작업공정 및 위험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지원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작업 공정이 일정한 분야이므로 상대적으로 위험관리 활동의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업과 대상이 중복되었으며, 지원 수준 및 채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이 쉽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유사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사업 분야 적절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수지는 2019년에 적자(△308억원)로 전환된 이후 2021년 △1,035억원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은 2019년 9,588억원에서 2021년 7,305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계획안 기준 재정수지가 △1,181억원이고, 적립금은 6,124억원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적립금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결산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당초계획
수입	4,306	4,482	4,884	5,156	5,239	5,827
부담금	3,007	3,220	3,380	3,354	3,464	3,894
지출	4,184	4,268	5,192	6,403	6,274	7,008
대지급금	3,724	3,740	4,599	5,797	5,466	6,431
재정수지	122	214	△308	△1,247	△1,035	△1,181
적립금	9,682	9,895	9,588	8,340	7,305	6,124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최근 대지급금 지급 등의 확대로 인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출규모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임금채불액이 최근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¹⁾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인상²⁾에 따른 보장 확대 및 코로나 19로 인한 대지급금 수요 증가 등으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지급된 대지급금은 3,724억 2,100만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5,465억 7,1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7~2022년 대지급금 지급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근로자수	금액	근로자수	금액	근로자수	금액
2017	92,700	372,421	38,169	232,727	54,531	139,694
2018	92,376	373,998	28,270	187,467	64,106	186,531
2019	100,085	459,879	24,407	168,789	75,678	291,090
2020	110,177	579,690	14,006	109,975	96,171	469,715
2021	106,922	546,571	10,368	79,360	96,554	467,210
2022	29,104	143,984	1,387	10,401	27,717	133,583

주: 2022년은 3월 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기금의 재원인 사업주 부담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요율에 변화가 없어 2015년 대비 2021년의 대지급금의 증가율은 83.5%이나 부담금은 오히려 3.6% 감소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³⁾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불임금을

1) 임금채불액: (‘10)11,630억원 → (‘15)12,993억원 → (‘20)15,830억원 → (‘21)13,505억원

2) 기존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 등의 경우를 요건으로 하나, 간이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미지급과 관련한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으면 일정 금액의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상한액: 300만원(2015. 7.) → 400만원(2017. 7.) → 1,000만원(2019. 7.)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에 감사원은 주요 사업성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출규모에 비해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으므로 사업주 부담금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부담금 요율을 보수총액의 0.08%에서 보수총액의 0.06%로 인하했고, 동 부담금 요율이 유지되고 있다.

[사업주 부담금 요율 변화]

(단위: %)

구분	1999	2000	2001	2003	2005	2010	2016
비율	0.03	0.09	0.05	0.03	0.04	0.08	0.06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주 부담금 및 대지급금 지출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부담금	3,594	2,999	3,007	3,220	3,380	3,354	3,464
대지급금	2,979	3,687	3,724	3,740	4,599	5,797	5,466
적립금	9,279	9,560	9,682	9,895	9,588	8,340	7,305

자료: 고용노동부

더욱이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⁴⁾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간이대

3)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기존 ‘퇴직근로자’에 더하여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대지급금 상한 확대와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향후에도 지출 규모가 2020·2021년 수준을 유지⁵⁾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주 용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사업주 용자제도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제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⁶⁾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2021년의 계획현액은 231억원이고, 집행액은 212억 5,500만원이다.

[사업주 용자제도 및 대지급금 비교]

구 분	사업주 용자	대지급금
지급한도	(사업주별) 1억원 (근로자별) 1천만원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한도 복원	(사업주별) 한도 없음 (근로자별) 1천만원(간이)
지급범위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 기간 제한은 없음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상환기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신용 3.7%, 담보 2.2%)	없음 (분납 시에는 최대 3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제한 없음
체불 사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필요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 (지급사유: 사업주의 도산이나,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
미납 시 신용제재	있음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

5) 2020년의 대지급금은 5,797억원, 2021년에는 5,466억원이며, 고용노동부는 2022년 대지급금을 6,431억원으로 예상(당초계획 기준)하고 있다.

6)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최근 사업주 융자지원 사업의 계획현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19	18,515	18,046	97.5
2020	19,250	19,240	99.9
2021	23,100	21,255	92.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대지급금과 달리 사업주 융자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하락 등과 연계되므로 융자금을 상환할 유인이 크다. 실제로 사업주 융자금의 2021년 회수율은 56.9%로, 대지급금 회수율 27.1%와 비교할 때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임금채불은 사업주가 자신의 책임 하에 채불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지급금보다는 사업주 융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사업주 융자제도는 예산의 한계로 지급한도 및 근로자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지급금 회수율]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지급금	3,724	3,740	4,599	5,797	5,466
회수액	957	979	1,142	1,225	1,482
회수율 ¹⁾	25.7	26.2	24.8	21.1	27.1

주: 해당 연도의 변제금 회수액/대지급금 지급액

자료: 고용노동부

[용자금 회수율]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용자금	84	128	180	192	213
상환예정액 ¹⁾	49	74	98	147	175
회수액	29	41	58	68	99
회수율 ²⁾	59.5	55.0	59.1	46.7	56.9

주: 1) 상환계획서에 따른 해당연도 상환예정액(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 해당 연도의 사업주 용자금 회수액/상환예정액. 단수조정에 따라 표의 숫자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율은 2017년 25.7%, 2019년 24.8%, 2021년 27.1%로, 매년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대지급금은 사업장 도산 등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므로 사업주의 지급능력 부족,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변제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최근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체불 사업주 재산조회 강화 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2021. 10. 14. 시행), 담당인력을 보강⁷⁾하였으므로, 사업주의 재산 파악을 강화하고 회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7)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채권회수 담당인력을 보강(2022년 소요정원으로 근로복지공단 담당인력 39명 증원, 2022년 수시직제로 17명 추가 반영)하였다.

가. 현 황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¹⁾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하여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2021년도 계획현액 29억 1,400만원 중 33.8%인 9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2,914	2,914	0	0	2,914	985	33.8	0	1,929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19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²⁾는 장애인 현황, 취업지원 수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수행기관³⁾은 동료지원가⁴⁾를 고용하여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들은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킨 후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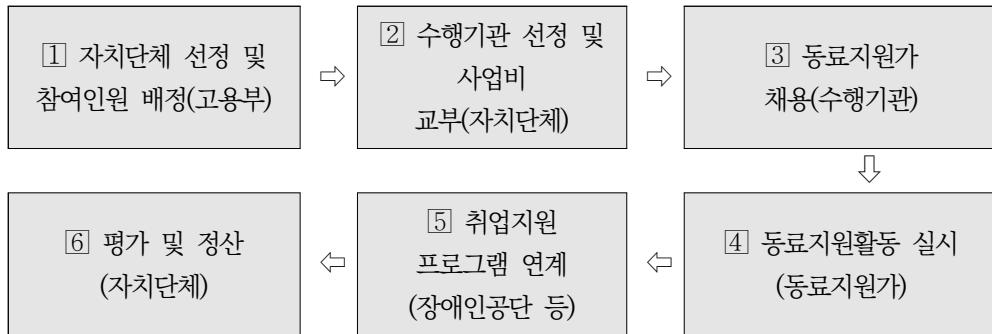
2) 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3) 수행기관이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고, 동료지원가를 고용하여 참여자에게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 장애인 유관기관을 의미한다.

4) 동료지원가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료상담·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및 취업의욕 고취 등을 목표로 하는 동료지원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공단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 내 사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한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추진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2021년의 목표 지원인원은 10,000명으로, 이 중 3,000명에 대하여 취업연계를 목표로 하였다. 수행기관은 동료지원가 운영에 발생한 인건비성 경비로 동료지원가 1인 채용(월 60시간 기준)시 월 80만원을 지급받고, 취업 연계에 성공하는 경우 취업연계자 1인당 20만원을 지급받으며, 참여자는 동료지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회당 3,000원을 지급받는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2021년 예산 편성 세부 내역]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2,914백만원
 - (기본운영비) 2,400백만원 = 500명 × 0.8백만원 × 12개월 × 50%
 - (취업연계 성공수당) 300백만원 = 10,000명 × 0.2백만원 × 30% × 50%
 - (지자체 사업운영비) 33백만원 = 17개소 × 1.941백만원
 - (참여자수당) 150백만원 = 10,000명 × 3천원 × 10회 × 50%
 - (고용노동부 운영비) 6백만원
 - (동료지원가 교육) 25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사업 도입 시기인 2019년 이후 집행이 부진하나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인원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실제 지원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총 집행률은 33.8%로, 동료지원가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	2,914	985	33.8
■ 사업비(지자체)	2,883	954	33.1
- 운영비	2,400	794	33.1
- 연계수당	300	99	33.0
- 참여자수당	150	50	33.4
- 자치단체 사업운영비	33	11	33.4
■ 고용부 사업운영비	6	6	100.0
■ 동료지원가 교육	25	25	10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행기관인 장애인 시설이 휴관하였고 참여자의 대면상담 기피 등의 이유로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포기 등으로 사업이 부진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 방법을 유연화 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였고(2020. 10.),⁵⁾ 기존에는 동료지원활동에 참여자의 참여 횟수가 5회인 경우 운영기관에 기본운영비 48만원(중앙정부 24만원 부담)을 지급(최대 10회, 건당 9.6만원 추가 지급)하였으나 2020년 10월 지침 개정

5) 동료지원가의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전화, SNS, 원격화상상담 등 다양한 상담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을 통하여 동료지원가 1인 채용시(월 60시간 기준) 월 80만원(중앙정부 40만원 부담)의 기본운영비를 운영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방식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본운영비 및 참여자수당을 인상하는 등으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슈퍼바이저 지원금⁶⁾을 신설하였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제도 변경 사항]

구분	2020	2021	2022
동료 지원가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	참여횟수 5회인 경우 48만원 (참여횟수 10회까지 인정)	월 80만원	월 87만 5,000원
참여자수당	3,000원	3,000원	4,500원
슈퍼바이저 지원금	-	-	월 5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동 사업은 코로나19 이전 시범사업으로 신규 시행한 2019년에도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6월말 기준 예산상 목표인원은 8,000명이나 지원인원은 926명(11.6%)에 불과하여 상당액 불용이 예상되므로, 향후 고용노동부는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19~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동료지원가 지원 실적]
(단위: 명, %)

구분	연도	예산상 목표인원(A)	지원인원 (B)	B/A
참여자	2019	9,600	3,995	41.6
	2020	10,000	2,220	22.2
	2021	10,000	2,609	26.1
	2022	8,000	926	11.6

6) 슈퍼바이저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인 동료지원가의 활동 지원을 위해 동료지원가를 도와 참여자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자문해 주는 등 동료지원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단위: 명, %)

구분	연도	예산상 목표인원(A)	지원인원 (B)	B/A
동료 지원가	2019	200	120	60.0
	2020	500	142	28.4
	2021	500	166	33.2
	2022	400	166	41.5

주: 2022년은 6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의 취업연계 성공수당으로 3억원(3,000명×20만원×국고지원 50%)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1년 동료지원활동 후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의 취업연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연계, 취업 등 포함)에 성공한 건수는 총 418건으로, 취업연계 목표 인원(3,000명) 대비 13.9%, 참여자 대비 16.0%에 불과하다.

이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업대상 특성상 취업연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이후 취업연계 현황이 매우 낮음에도 2022년에 참여자 대비 30% 취업성공이라는 높은 목표 수준(2,400명)을 설정⁷⁾하였고, 2022년에도 동 수당의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지원가능한 수준의 목표와 예산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료지원가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연계가 저조한 지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⁸⁾

7) 2022년 취업연계 성공수당: 2억 4,000만원 = 2,400명 × 20만원 × 50%

8)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2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신규 신설하여 지자체 및 수행기관 대상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훈련과정 신설 등 취업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취업연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020~2021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역별 취업연계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울산	계
2020	참여자(A)	260	248	143	95	447	46	160	151	262	351	57	-	2,220
	취업연계(B)	9	23	16	0	120	18	39	4	62	65	13	-	369
	B/A	3.5	9.3	11.2	0.0	26.8	39.1	24.4	2.6	23.7	18.5	22.8	-	16.6
2021	참여자(A)	263	312	143	169	244	86	252	168	318	336	49	269	2,609
	취업연계(B)	28	55	19	12	48	30	31	6	69	76	2	42	418
	B/A	10.6	17.6	13.3	7.1	19.7	34.9	12.3	3.6	21.7	22.6	4.1	15.6	16.0

[2019~2022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취업연계 달성률]

(단위: 명, %)

연도	예산상 목표인원(A)	취업연계 인원(B)	취업연계 달성률(B/A)
2019	2,880	351	12.2
2020	3,000	369	12.3
2021	3,000	418	13.9
2022	2,400	121	5.0

주: 2022년은 6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가. 현 황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¹⁾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일반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출연금을 교부받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계획현액 34억 500만원의 100.0%를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405	3,405	0	0	3,405	3,405	100.0	0	0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20년에 신설되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전환준비 → 전환지원 → 고용안정」의 3단계로 지원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개요]

지원단계	기간	주요 서비스
전환준비	12개월 (+연장 최대 12개월)	직무능력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전환지원	최대 12개월	지원고용, 맞춤훈련, 인턴제,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	(계속)	취업 후 적응지도, 근로지원인 지원 등

자료: 고용노동부

진달래 예산분석관(jindallae@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7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환준비단계 참여기간(최대 24개월) 동안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한 경우에 참여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채용사업주에게는 월 지급액의 75%(최대 80만원)의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지원 내용]

대 상	구 분	지원금액	지 원 조 건
참여자	고용전환 촉진수당	월 30만원	전환준비단계 참여기간동안 지급 (최대 24개월 참여)
	취업 성공수당	최대 100만 원	1년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이상, 고용유지 (1개월) 20만원, (2개월) 30만원, (3개월) 50만원
채용 사업주	사업주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1년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이상, 고용유지 월지급액의 75%(월 80만원 한도) * 최대 3년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예산편성내역 및 실행내역]

예산편성내역	실행내역
◦ 3,405백만원	◦ 3,368백만원
- 고용전환촉진수당: 2,880백만원 (800명×0.3백만원×12개월)	- 고용전환촉진수당: 2,982백만원 (860명×0.289백만원×12개월)
- 취업성공수당: 160백만원 (800명×1백만원×20%(취업성공비율))	- 취업성공수당: 59백만원 (71명×0.831백만원)
- 고용전환 사업주지원금: 40백만원 (200명×0.8백만원×25%(근속유지율))	- 고용전환 사업주지원금: 154백만원 (71명×0.8백만원×2.71개월)
- 사업운영비: 325백만원 (800명×0.4백만원+5백만원)	- 사업운영비: 173백만원 (860명×0.201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나. 분석의견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2021년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율은 8.3%에 불과하므로, 훈련과정을 내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2)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기준근로자)와 평균작업능력을 비교하여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하고 있다.

현재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반기업체로의 취업이 어려우므로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인 직업재활시설³⁾에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 61.8만명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9,475명⁴⁾이고, 이 중 95.7%인 9,066명이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약 35만 8,000원⁵⁾으로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저임금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고용기회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2)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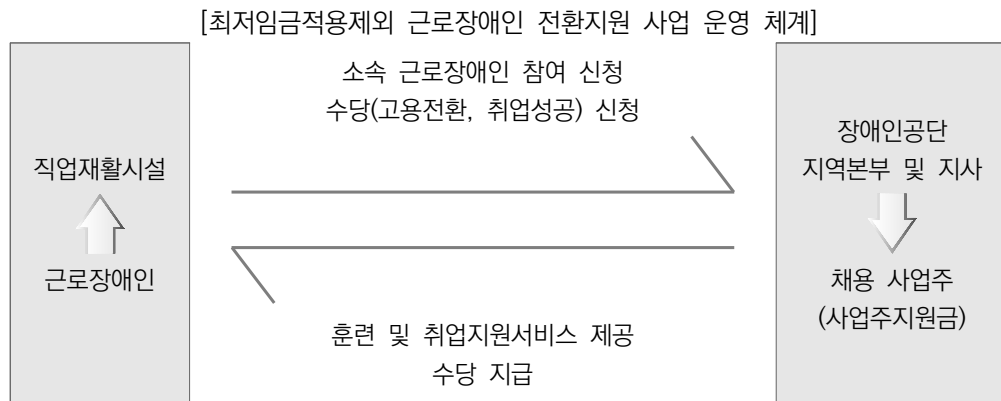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고용공단 평가 결과 인가기준 점수(70%) 미만 인원 기준이며, 실제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인가 승인 여부, 인가 시점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월평균 임금은 근로시간 등의 고려없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사업주가 기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⁶⁾를 통하여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 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직업능력평가 결과 상위권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환훈련 참여자가 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취업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전환준비훈련(일 2시간 이상)에 참여한 경우 고용전환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후 참여자가 지원고용⁷⁾, 인턴제,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채용 사업주에게는 월 지급액의 75%(월 80만원 한도)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의 2020년 참여인원은 1,765명,⁸⁾ 2021년 참여인원은 860명으로 예산상 목표 인원을 달성하고 있으나, 2020년 및 2021년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비율을 살펴본 결과, 각기 예산상 목표 전환비율은 20%였으나, 2020년 전환성공률은 3.6%, 2021년 전환성공률은 8.3%에 불과하였다.

6) 시기: 2018. 2. ~ 2019. 7. 총 10회차

구성: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직업재활시설협회, 학계 전문가, 정부(고용부, 복지부) 등 13명

7) 3주~7주(필요시 최대 6개월)간 사업체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8)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동 사업의 예산상 목표 참여인원은 1,000명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이 있어 참여인원을 확대하였다는 입장이다.

[2020~2021년 최저임금 일자리 전환 비율]

(단위: 명, %)

연도	목표참여 인원	참여인원 (A)	목표전환 인원	전환성공 인원(B)	전환성공률 (B/A)
2020	1,000	1,765	200	63	3.6
2021	800	860	160	71	8.3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오랜 기간 보호고용에 머물러 있던 중증장애인을 경쟁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의지 고취를 위한 심리지원, 직무훈련 등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보호고용이 안정감·익숙함을 주므로 이를 포기하는 것에 일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⁹⁾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 전체 이용 장애인 중 28.0%가 일반사업체 일자리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장애특성에 맞는 직업준비교육을 개발하고, 훈련과정을 내실화하여 전환성공의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의 일반사업체 일자리 전환 희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 수	비율
전환을 희망하며, 향후 가능하다고 생각함	2,116	13.1
전환을 희망하나, 아무래도 어렵다고 생각함	2,402	14.9
전환을 희망하지 않음	5,071	31.5
생각해본 적 없음	4,773	29.6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근로 장애인 전체	16,122	100.0

주: 설문참여 인원 중 응답이 많은 보기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합과 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2022. 1.,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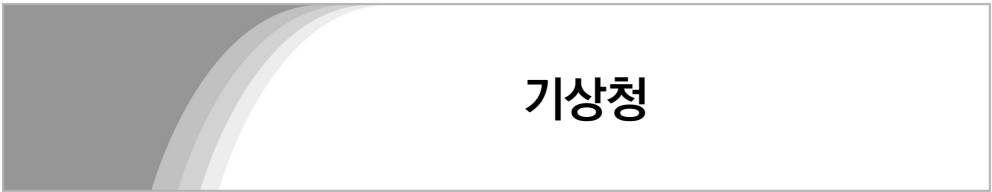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2022. 1.

또한, 현재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¹⁰⁾에 따라 전환에 실패하더라도 최대 3회까지 프로그램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어 전환의욕이 없는 참여자도 고용전환촉진수당만을 최대 6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참여자의 전환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전환촉진수당만을 지급받고 취업지원서비스(지원고용, 인턴제, 취업알선 등)에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재참여를 제한하여 동 사업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¹¹⁾

10) 관계부처 합동,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2019. 12.

11)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는 취업지원 서비스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참여하도록 하되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지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27억 2,300만원이며, 174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174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1,4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처리는 없다.

[2021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2,723	22,723	22,723	17,453	17,439	14	-	99.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2021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456억 8,200만원이며, 이 중 90.1%인 4,015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231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9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25,659	425,659	445,682	401,543	23,155	20,984	90.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기상청의 자산은 9,392억 5,600만원, 부채는 559억 5,900만원으로 순자산은 8,832억 9,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24억 9,200만원, 일반유형자산 8,824억 2,500만원, 무형자산 404억 4,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23억 1,200만원(12.2%) 증가하였다. 이는 전북기상관학체험관 등 건설 중인 자산 증가 등 일반유형자산 1,184억 7,1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94억 2,500만원, 장기차입부채 365억 3,5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27억 2,200만원(140.8%)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리스 만기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221억 6,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939,256	836,944	102,312	12.2
Ⅰ. 유동자산	12,492	29,565	△17,073	△57.7
Ⅱ. 투자자산	420	-	420	-
Ⅲ. 일반유형자산	882,425	763,953	118,471	15.5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40,442	39,927	515	1.3
Ⅵ. 기타비유동자산	3,477	3,499	△22	△0.6
부 채	55,959	23,237	32,722	140.8
Ⅰ. 유동부채	19,425	8,120	11,305	139.2
Ⅱ. 장기차입부채	36,535	14,373	22,162	154.2
Ⅲ. 장기충당부채	-	744	△744	△100.0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883,297	813,707	69,590	8.6
Ⅰ. 기초순자산	813,707	803,521	10,186	1.3
Ⅱ. 재정운영결과	483,740	367,679	116,061	31.6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452,180	372,874	79,306	21.3
Ⅳ. 조정항목	101,150	4,991	96,159	1,926.6
Ⅴ. 기말순자산	883,297	813,707	69,590	8.6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837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2,848억 2,400만원, 관리운영비 1,988억 7,100만원, 비배분비용 157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배분수익 156억 6,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160억 6,100만원(31.6%) 증가한 4,837억 4,0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5억 3,700만원)와 경비(642억 1,400만원) 등 관리운영비 증가 및 전기오류수정이익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274억 4,1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기상관측프로그램(1,101억 2,200만원)과 기상연구프로그램(718억 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886억 8,000만원과 경비 1,101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157억 1,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기상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 B
I. 프로그램순원가	284,824	271,138	13,686	5.0
II. 관리운영비	198,871	135,120	63,751	47.2
III. 비배분비용	15,712	4,530	11,182	246.8
IV. 비배분수익	15,667	43,108	△27,441	△63.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83,740	367,679	116,061	31.6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83,740	367,679	116,061	31.6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8,137억 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832억 9,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695억 9,000만원(8.6%)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이익 재평가로 인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702억 4,9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80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1,011억 5,0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기상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813,707	803,521	10,186	1.3
Ⅱ. 재정운영결과	483,740	367,679	116,061	31.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52,180	372,874	79,306	21.3
Ⅳ. 조정항목	101,150	4,991	96,159	1,926.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883,297	813,707	69,590	8.6

자료: 기상청

기상청의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기상레이더 운영, ② 기상·지진 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있다.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은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관측소 부지 미확정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비 감액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106억 9,200만원 → 101억 4,700만원)하였고,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인증센터 부지 변경으로 인해 설계 및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감액(67억 8,100만원 → 34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업은 없었다.

기상청은 ① 빈틈없는 위험기상 감시,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② 편의성이 강화된 날씨알리미 앱과 날씨누리 웹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③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기반 마련, 인공강우기술 실용화 확대 등 **미래 기상정보 수용에 대응하는 기상기술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기후탄력사회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도약」을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기상청은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R&D)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의 전용을 통해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할 경우 타 과제와의 유사성이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상청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확보 지연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 부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 추진과정 및 향후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기상·지진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사업은 과업 계약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기상청은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과업 추진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인 사업 지연 및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R&D)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한 신규 연구과제 추진 문제

가. 현 황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R&D)¹⁾ 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위험기상에 대한 분석 및 수치예보기술의 개발·개선을 통해 위험기상 예측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진, 해일, 화산활동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2021년 예산 103억 4,300만원 중 타 세부사업으로 이용²⁾하여 집행한 1억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02억 4,300만원 중 90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억 5,4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 (R&D)	10,343	10,343	0	△100	10,243	9,080	87.8	9	1,15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832-304

2) 기상청은 동 사업 예산 중 1억원을 장마 및 국지성 소나기, 영향태풍 등 위험기상 빈발로 인한 기상 정보 통보 회선료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코드: 일반회계: 1140-501)”사업으로 이용하였다.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향후 예산의 전용을 통해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할 경우, 타 과제와의 유사성이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동 사업을 통해 수치예보 및 자료응용 기술개발, 지역특화 영향예보 서비스 고도화, 태풍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내역사업과,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예측 기술개발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 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³⁾

[2021회계연도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R&D) 내역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	8,355	8,355	-	△100	-	8,255	7,369	-	886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	1,988	1,988	-	-	-	1,988	1,711	9	268
합 계	10,343	10,343	-	△100	-	10,243	9,080	9	1,154

자료: 기상청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상청은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내역사업의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상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문제와 관련된 기획연구를 신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연구비(210-13목) 예산 1억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260-01목)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3) 참고로, 2021년 5월 기획재정부의 과목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동 사업의 내역사업이 각각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예산부터 동 사업은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개발” 세부사업과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 기술개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었다.

[2021회계연도 수치예보·지진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R&D)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1.5.13)	수치예보·지진 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 (3133-303)	210-13	150	수치예보·지진 업무 지원 및 활용 연구 (3133-303)	210-01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비 불용예상액을 현안문제 해 결을 위한 기획연구(2건) 추진을 위해 전용

자료: 기상청

기상청이 전용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는 “미래 기상기후재해 대응 융합형 예보기술개발 추진방안 연구”와 “수치예보기술 R&D사업 중기 성과관리방안 연구” 등 총 2건으로, 기상청은 2021년 5월 13일 예산을 전용한 후 과제를 추진하여 각각 6월과 7월에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에 과제를 종료하였다.

[2021회계연도 전용 예산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2021 예산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방법
수치예보기술 R&D사업 중기 성과관리방안 연구	-	100	100	98	-	2	'21.7.19. ~12.10.	(주)미래 비전그룹	제한경쟁 →수의
미래 기상기후재해 대응 융합형 예보기술개발 추진방안 연구	-	50	50	49	-	1	'21.6.24. ~12.23.	(주)환경예측 연구소	제한경쟁 →수의

자료: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먼저 수치예보기술 R&D사업 중기 성과관리방안 연구의 경우,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 평가 제도 개편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평가용 전략계획서를 2023년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과목구조 개편을 추진하여 2021년 5월 동 사업의 각 내역사업

이 2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는 것이 확정되면서 2022년에 전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준비로 신규 연구용역 과제를 시급히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래 기상기후재해 대응 융합형 예보기술개발 추진방안 연구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복잡화·다양화되는 기상기후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수치모델링, 기상자료분석 등 기상 분야와 타 분야 과학기술이 융합된 예보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신규과제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상청이 예산의 전용을 통해 추진한 2개 연구과제는 모두 당초 기상청의 2021년도 연구과제 추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제로서, 국외여비 등 불용예상액을 전용하여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회계연도 전용 예산을 통해 추진한 연구과제 추진사유 및 필요성]

과제명	추진계획 포함여부	추진 사유 및 필요성
수치예보기술 R&D사업 중기 성과관리방안 연구	X	-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의한 사업평가 제도 개편에 따라 성과평가용 전략계획서를 '23년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분리*되어 '22년에 전략계획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게 필요 * '21년 과기부 국가R&D사업 중간평가 권고(수치와 지진 분야는 목적과 역할이 상이하므로 한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검토)로 5월에 2개의 사업으로 사업 분리 결정
미래 기상기후재해 대응 융합형 예보기술개발 추진방안 연구	X	- 기후변화에 따른 복잡·다양해지는 기상기후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수치모델링, 기상자료분석 등의 기상분야와 타 분야 과학기술과 융합된 예보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필요

자료: 기상청

특히,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4)에서는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 시급성이 있는지, 필수적인 운영경비 충당이 필요한지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 “수치예보기술 R&D사업 중기 성과관리방안 연구”는 과목구조 개편으로 인한 사업 분리로 추가적인 연구과제 추진의 시급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2) “미래 기상기후재해 대응 융합형 예보기술개발 추진방안 연구”는 그 목적이 복잡·다양해지는 기상기후재해 대비를 위해 관측, 수치모델링, 기상자료분석 등 기상분야의 복합적인 기상예보 기술을 개발하고, 기상예보기술 분야의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해 운영되었던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사업의 일몰(2022년)을 대비하여 신규 R&D 사업을 기획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과제의 성격 및 내용상 전용을 통해 시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예산 편성 및 조정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전 부처 차원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절감이 가능하였던 국외여비 예산을 신규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어느 정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따라서 기상청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예상액을 활용하여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할 경우, 사업과의 유사성이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기상청은 2020회계연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행사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불용예상액을 전용하여 당초 계획하지 않은 연구과제(고해상도 수치모델을 위한 자료동화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공사 추진상황 및 관련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가. 현 황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¹⁾은 기상·지진장비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인증센터와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준설비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내 및 해외수출 장비에 대한 성능인증 공신력을 확보하여 국내 기상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100만원과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한 2,000만원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43억 7,100만원 중 1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3,400	3,400	991	△20	4,371	1,826	41.8	2,543	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2018년 4월 개정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제1항²⁾ 및 제13조³⁾ 등에 따라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231-304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3)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① 기상측기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

2021년 4월 18일부터 기상관측장비의 정확성과 내구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규격·성능에 대한 국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즉,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 전에는 온도계, 기압계, 습도계 등 10종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4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형식승인 관련 조항에 따라 기상관측장비의 환경시험과 정확도 시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업무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상·지진장비 형식승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15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부지에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승인 및 검정 대상 기상측기]

구분	형식승인	검정(정도검사)
대상 측기	(10종) 온도계, 습도계, 기압계, 풍속계, 풍향계, 강수량계, 일사계, 일조계, 증발계, 적설계	(10종) 온도계, 습도계, 기압계, 풍속계, 풍향계, 강수량계, 일사계, 일조계, 증발계, 적설계
유효 기간	모델별 최초 1회 실시 (유효기간 없음)	3년~5년
검사 종류	재질 및 구조·규격 검사 내열·내습 관련 검사 기준기와의 오차 검사 등	정확도
	제품(동일 모델명) 1회	전수검사(모든 제품)

주: 1. 형식승인 대상 장비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제시된 사항임
 2. 검정 대상 장비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상측기임
 자료: 기상청

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21. 4. 18.)

4) 검정(Verification)이란 기상측기의 구조·규격·성능 등이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기상측기가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승인(Type Approval)은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시 구조·규격·성능 등에 대해 검사하는 과정으로 모델별로 최초 1회만 실시한다.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공사 추진과정 및 향후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기상·지진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를 담당 하게 될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020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사업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이래 각 연도별로 기본·실시설계, 인증센터 구축 공사 및 장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예산에서는 기상·지진 장비 인증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10억 9,300만원)를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사비 예산 등 3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2년의 경우, 2차년도 공정률(35%)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감리비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확대된 79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당초 계획하였던 건축부지 변경으로 인한 설계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절차가 지연되고, 각 연도별 예산의 집행에도 지속적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사업 대상 부지의 활용가능성이나 적합성, 인근 지역 및 시설의 영향 등에 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인증센터 건축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 계약이 지연 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편성된 10억 9,300만원 중 설계 심사수수료와 설계공모 보상비, 조달수수료 등에 9,7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9억 9,100만원은 2021년으로 이월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

특히, 2021년의 경우, 대체부지를 대상으로 한 설계용역이 2021년 11월 완료됨에 따라 건축공사 계약이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체결되고 실제 착공은 2022년 1월 11일자에 추진된 바, 이로 인해 2021회계연도에 편성되었던 공사비 예산 30억

5) 기상청은 당초 수도권기상청(수원)의 유허부지를 활용하여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지역 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 및 진동이 지진계 성능시험장비 등 정밀측정기기의 성능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부지 확보(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었다.

5,300만원 중 선금으로 일부 예산(7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2억 7,200만원은 2022년으로 이월되고 감리비 예산(4,100만원)이 모두 이월되는 등 인증센터 구축 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2020~2022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비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항목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소계	1,093	1,093	1,093	97	8.8	991	5
	기본조사설계비	476	476	476	91	19.1	385	0
	실시설계비	617	617	617	6	0.9	606	5
2021	소계	3,400	3,400	4,371	1,826	41.8	2,543	2
	기본조사설계비	-	-	385	385	100.0	0	0
	실시설계비	-	-	606	605	99.8	0	1
	공사비	3,053	3,053	3,053	781	25.6	2,272	0
	감리비	41	41	41	0	0.0	41	0
	시설부대비	14	14	14	14	100.0	0	0
	자산취득비	292	292	272	41	15.1	230	1
2022	소계	7,984	7,984	10,527	2,795	26.6	-	-
	공사비	7,452	7,452	9,724	2,285	23.5	-	-
	감리비	518	518	559	271	48.5	-	-
	시설부대비	14	14	14	9	64.3	-	-
	자산취득비	-	-	230	230	100	-	-

주: 1.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또한, 2022년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결산 결과 2022년으로 이월된 총 25억 4,300만원 중 감리비(4,100만원)는 집행 완료하였으나, 2022년 1월 착수된 공사(1차수) 기간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나머지 공사비는 8월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022년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 등 79억 8,400만원의 예산 또한 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⁶⁾

6) 기상청에 따르면, 2022년 편성된 예산 79억 8,400만원 중 공사 금액 23억 9,300만원, 이형철근 등 관급자재 21억 300만원, 감리비 5억 1,8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 등 공사비 50억 2,800원과, 송강기·분전반·태양광발전장치 등 제작기간이 필요한 관급자재 29억 5,600만원은 연내에 계약하여 선금(70~80%)으로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공사 계약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약상대자	총 공사 계약액	2021년 계약액	계약일	1차수('21년 예산) 공사기간
건축	(주)주강 종합건설	8,828,375	2,386,193	'21.12.21.	'22.1.11.~8.10.
전기	(주)금성전기	1,702,042	215,951	'21.12.15.	'22.1.11.~8.20.
통신	(주)에스웨이	629,311	63,515	'21.12.15.	'22.1.11.~8.10.
소방	(주)엠솔루션	336,633	25,406	'21.12.16.	'22.1.11.~8.10.
감리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가람건축	1,418,478	41,219	'21.12.14.	'22.1.11.~2.9.
폐기물처리	(주)동아환경개발 주식회사	44,550	0	'22.3.22.	'22.3.24.~12.31.
합 계		12,959,389	2,732,284		

주: 1. 2021년 계약금 중 선금(780,942천원)은 2021년 12월 집행하였음

자료: 기상청

즉,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형식승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건축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증센터 구축 공사 절차가 추가적으로 지연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해, 기상청은 동 사업의 부지확보 지연 및 설계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동 사업의 실제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따라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상청은 인증센터의 공사 추진과정 및 향후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기상·지진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사업의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인 이월 발생 문제

가. 현 황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정보화)¹⁾ 사업은 국내·외 기상자료의 실시간 수집·처리·저장·교환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일반 국민이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의 기상정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현액 186억 3,600만원 중 16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정보화)	17,615	17,615	634	387	18,636	16,132	86.6	2,288	21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특히, 기상청은 최근 객관적·정량적인 기상데이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수치모델·알고리즘에 기반한 예보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상업무 전반에 걸쳐 자료를 수집·처리하고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상정보 서비스 개선 운영’ 내역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약 2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명: 일반회계 1239-500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연차별 사업 내용]

연도	2018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단계	상세 분석·설계	개발·도입	확대·병행운영	전환·완성
예산	32.9억원 - 개발 15.8억 - 인프라 17.1억)	77억원 - 개발 32.0억 - 인프라 45.0억	76.6억원 - 개발 32.3억 - 인프라 44.3억	46억원 - 개발 21억 - 인프라 25억
수집·저장	- 상세분석·설계 * 대용량 수집처리 엔진, 수집·저장 체계설계	- 핵심기능 개발 * 산출물메타시스템 개발, 공통자료처리 모듈개발	- 세부기능 개발 * 기상자료별 처리모듈, 자료표준관리시스템 개발	- 통합조회·활용 * 메타확장, API 연계, 외부교환 체계 등
제공·활용	- 상세분석·설계 * 웹포털설계, API 연계체계설계, K-DASH 설계, 챗봇설계	- 핵심서비스 개발 * 웹포털, API시스템, K-DASH개발, 챗봇 개발 • 대국민 서비스 개발 * 날씨알리미앱 설계·개발	- 세부서비스 개발 * 웹포털, API시스템, K-DASH, 챗봇 서비스 병행운영 •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 날씨알리미앱 기능 개선	- 지능형 활용 * 지능형탐지·보정, 공간분포보간, 챗봇 추천 등
인프라	- 상세분석·설계 * 컴퓨팅구조설계, 물리저장체계설계, 가상데이터센터설계 • KMA-클라우드 시범도입 * IaaS, PaaS 설계	- 가상데이터센터 기반 정비 * 본청-슈퍼컴퓨터 센터 백본 네트워크 구성, 로드밸런싱 솔루션 등 •본청 인프라 도입 * COMIS-5/알림앱 클라우드 환경	- 가상데이터센터 구성 * 본청-슈퍼컴 Active-Active 구성 및 원격지 부하분산 체계 • 슈퍼컴센터 인프라 도입 * COMIS-5/알림앱 클라우드 환경, 통합 DBMS, 통합저장장치 등	- 클라우드 자원 확충 * 날씨앱, IT관리, 모니터링 등 • 정보보안강화 * 슈퍼컴센터 장비도입
관리체계	- 상세분석·설계 * IT서비스관리, 통합모니터링 등	-	- ITSM 시스템 도입 • 통합모니터링 도입	- 클라우드 관리 체계 • 원격지 IT관리 체계
기타	- 클라우드, AI 기술 검증 * 공개SW개발	- 원격지 클러스터 DB 검증 * 서울-오창(슈퍼컴)	-	- 전체시스템 전환 * 21년 상반기 • 수출형패키지 개발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사업은 과업 계약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기상청은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과업 추진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인 사업 지연 및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은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의 마지막 연도로, 기상청은 기상자료 통합 관리 및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기능 고도화, 지능형 기상업무 지원 플랫폼 개발 등 차기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고,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H/W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클러스터 시스템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 사업 세부 현황]

구분	세부내용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 (COMIS-5) 4차년도 구축 (4,600백만원)	-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 개발: 2,100백만원 ◦ 기상자료 통합 관리 및 기상자료 처리 프로그램 개발 800백만원 ◦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 기능 고도화 400백만원 ◦ 지능형 기상업무 플랫폼 개발 800백만원 ◦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무중단 전환 100백만원 -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인프라(HW, 상용SW) 도입: 2,500백만원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등 하드웨어(95식) 도입 1,615백만원 ◦ 클라우드SW 등 상용소프트웨어(35식) 도입 885백만원

자료: 기상청

그러나 2021년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 사업에 대한 조달입찰이 3차례에 걸쳐 무응찰되면서 최종적으로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동 사업의 과업 내용을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2021년 10월이 되어야 계약이 체결되는 등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 사업 당초 계획 대비 추진현황]

구분	사업기간		비고
	당초	변경	
본사업	'21.3. ~ '21.12.	'21.10. ~ '22.7.	최종유찰, 과업재조정
감리용역	'21.4. ~ '21.12.	'22.2. ~ '22.7.	본사업 후속
DB접근제어도입	'21.8. ~ '21.12.	'22.1. ~ '22.5.	본사업 분리발주

자료: 기상청

또한,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을 위해 편성된 50억 4,800만원의 예산 중 20억 1,900만원이 이월되는 등 관련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집행내역		이월예산 집행현황	
		예산액	집행액('21)	이월액	집행액('22.6.)
본사업	일반연구	2,078	1,024	1,024	-
	자산취득	2,720	1,937	745	-
감리용역		120	-	120	-
DB접근제어도입		130	-	130	128
소계		5,048	2,961	2,019	128

자료: 기상청

기상청에 따르면,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과 고난이도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다년도 사업으로 관련 업체의 관심이나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4차년도 구축 사업 내용 중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상대적인 시급성을 고려하여 과업을 축소·조정하여 차기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사업은 사업을 신규 추진한 2018년부터 계약 지연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예산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

는바, 당초 사업 추진 시 신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나 참여 가능한 업체 현황 등 과업 수행 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 사업 연도별 이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발생 사유
2018	1,189	- 차기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KMA클라우드) 사업 계약지연(사업 기간 확보)으로 인한 잔금 이월
2019	3,665	-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2차년도 구축사업의 계약 추진과정에서 2회 유찰 및 조달청과 우선협상자 간 협상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계약지연으로 사업비 잔금 및 감리용역 잔금 이월
2020	95	- 기상청 홈페이지 통합정비 사업을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구축사업에 통합하여 일괄 추진하였으나, 2회 무응찰로 인한 최종 유찰로 사업규모 조정을 통해 개별 사업으로 분리·추진하게 되어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잔금 이월
2021	2,019	- 조달계약 절차 장기소요로 2021년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5) 4차년도 구축 사업비, 감리용역비, DB접근제어솔루션 구매 비용 이월

자료: 기상청

따라서 기상청은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과업 추진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약 지연으로 인한 연례적인 사업 지연 및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노력 필요

가. 현 황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¹⁾은 서해상에서 내륙 지역에 접근해오면서 급격히 발달하는 집중호우와 폭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선행관측 및 사전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양기상기지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은 2021년도 예산 46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3,600만원,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한 예산 1억 2,2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6억 1,800만원 중 51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0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4,660	4,660	836	122	5,618	5,106	90.9	431	8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기상법」 제7조의2제1항 및 2002년 10월 수립된 「해양기상관측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서해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위험기상의 조기 감시를 목적으로 2005년 3월부터 충남 태안군 북격렬비도에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제1해양기상기지)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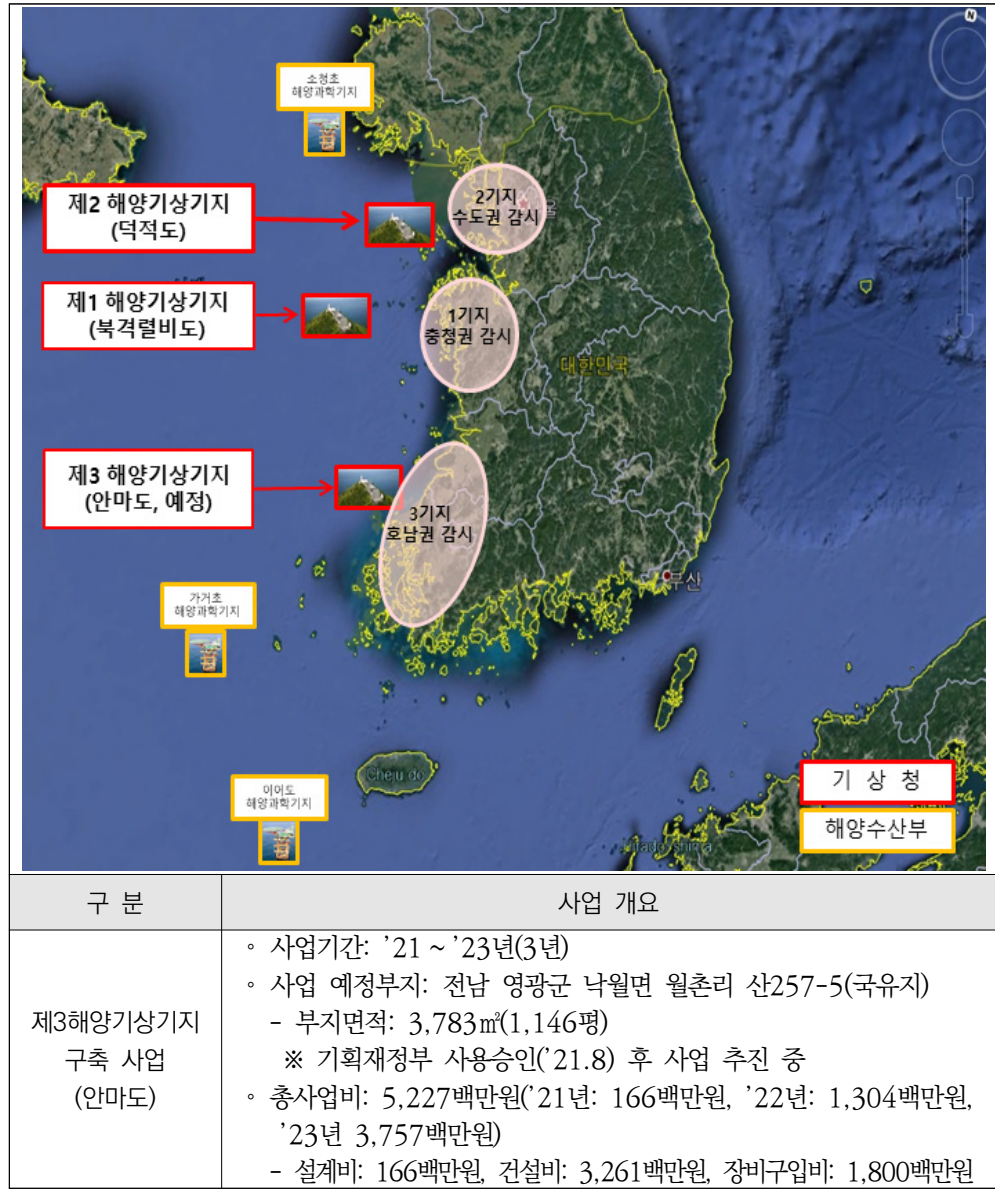
하지만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집중호우, 폭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조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상 공백지역을 최소화함으로써 해양기상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측·감시할 필요가 있는바, 기상청은 2019년부터 2022년(당초 2021년)까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에 총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더해 2021년부터 2023년까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232-303

지 총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부근에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 해양기상기지 구축 추진현황 및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 개요]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은 국유지 사용승인 및 협의과정, 설계도서 보완 과정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상청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021년 예산을 통해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신규 편성하고 대상부지 사용승인 협의 및 구축 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21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편성된 1억 6,600만원 중 100만원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1억 3,300만원은 2022년으로 이월되는 등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회계연도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연도	비목	본예산	추경						
2021	기본조사설계비 (420-01)	55	55	-	-	55	-	53	2
	실시설계비 (420-02)	111	111	-	-	111	1	80	30
	소계	166	166	-	-	166	1	133	32

자료: 기상청

이와 같이,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부진이 발생한 것은 대상부지(국유지)에 대한 사용 승인, 지역주민이나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9월)가 되어서야 설계 용역 조달 공고가 추진되었고, 이후 10월에 용역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상청은 2021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인 2020년 11월 대상부지(전남 영광군 안마도)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2020년 12월 현장답사 및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2021년 1월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또한, 2021년 3월과 4월에 걸쳐 제3해양기상기지 부지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와 협의를 추진하였고, 4~5월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21년 5월 안마도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였다.

이후, 기상청은 2021년 7월 제3해양기상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조달 발주를 조달청에 요청하였으나, 제3해양기상기지 대상부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최종적인 사용 승인이 2021년 8월에 이루어지면서 용역 조달 일정을 조정하여 2021년 9월 설계 용역 조달 공고 후 10월이 되어야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관련 예산이 이월되었다.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당초 추진계획 대비 실제 추진현황]

구분	계획 일정	추진 일정
제3해양기상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21.4. ~ 12.	- (조달 요청) '21.7. - (공고 연기 요청) '21.8. - (공고 재개 요청) '21.8. - (조달청 공고) '21.9. - (계약기간) '21.10. ~ '22.4. - (설계완료) '22.6.23.

자료: 기상청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당초 계약 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였으나, 계약업체의 설계도서 작성이 미흡하여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체되어 6월 23일에 용역사업이 완료된 바, 이미 사업이 지연된 상황에서 설계 용역 계약업체 선정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체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제3해양기상기지 공사 관련 조달 발주 및 계약 절차와 착공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된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공사비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²⁾

2)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된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은 13억 400만 원으로, 설계 용역 완료 후 7월 11일 현재 공사 발주를 추진 중으로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2022년 제3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연도	비목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2022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53	-	53 ¹⁾	-	-	-
	실시설계비 (420-02)	-	-	80	-	80 ¹⁾	-	-	-
	공사비 (420-03)	1,198	1,198	-	-	1,198	-	-	-
	감리비 (420-04)	102	102	-	-	102	-	-	-
	시설부대비 (420-05)	4	4	-	-	4	-	-	-
	소계	1,304	1,304	133	-	1,437	-	-	-

주: 1) 2021년 결산 결과 이월된 설계비 예산은 7월 중으로 집행될 예정임

1. 2022년 집행 현황은 7월 11일 기준

자료: 기상청

특히, 기상청이 동 사업을 통해 기 추진한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감리용역 발주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관련 예산 집행의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기상청은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지연 및 예산의 집행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APEC 기후센터의 자체수입 확보 노력 및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현황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¹⁾은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인 APEC 기후센터(APCC)에 인건비와 경상경비, 연구활동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기상청은 2021년 예산현액 60억 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6,002	6,002	0	0	6,002	6,002	100.0	0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나. 분석의견

첫째, APEC 기후센터의 전체 수입 중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높은 상황²⁾이므로, 어느 정도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 출연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APEC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는 2005년 11월 제13차 APEC정상회의 기간 중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APEC 회원국의 승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상청은 2006년부터 APEC 기후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²⁾ 특히, 센터를 유치한 부산광역시는 2009년부터 독립청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334-301

2) APEC 기후센터는 기획재정부 고시(제2015-3호)에 의거하여 2015년 1월 30일부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APEC 기후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를 감시하고 최적의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아태지역 재해 경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태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예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후예측(3~6개월) 기술개발, 기상청의 현업 지원을 위한 장기예보 기술개발 및 기후예측모델 진단·평가 등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후예측 생산·제공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00	300	0	0	300	300	0	0
아태지역 기후변동 감시분석 및 활용 체계 구축	350	350	0	0	350	350	0	0
다중모델 앙상블 기반 기후예측 기술 고도화	250	250	0	0	250	250	0	0
APCC 기관운영비	5,102	5,102	0	0	5,102	5,102	0	0
합 계	6,002	6,002	0	0	6,002	6,002	0	0

자료: 기상청

동 기관의 사업 운영 및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바, 동 기관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2006년 약 10억원 규모에서 2018년 예산 기준 약 82억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부터 기관 설립 초기의 임무에서 벗어난 과도한 업무영역 확장으로 인해 기관의 업무집중도와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³⁾

이에 따라, APEC 기후센터는 ‘APEC 기후센터 혁신 방안’(‘18.11)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조직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에는 ‘기후분야 기관간 역할 정립 및 조정 계획’(‘20.7)을 수립하였고, 2021년 4월 대내외 기후분야 업무 대응·협력 중복성 방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역할 정립(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더해, 기후예측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정부 출연금 규모를 2019년 74억원, 2020년 66억원, 2021년 60억원 규모

3) 201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2017회계연도 결산심의 및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부대의견 등

로 축소함으로써 기관 경영의 효율화 또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PEC 기후센터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동 기관의 전체 수입 중 정부 출연금의 비중이 2018년 92.8%, 2019년 94.9%, 2020년 100%, 2021년 95.6%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제 수탁 등을 통해 발생한 자체수입은 2018년 6억 3,600만원, 2019년 4억 200만원, 2021년 2억 7,700만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회계연도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소계(A)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외 자체수입			합계(C)	정부출연금 비중(A/C)
		기관운영 출연금	사업 출연금	소계(B)	국내수탁 과제	해외수탁 과제		
2018	8,229	6,490	1,739	636	593	43	8,865	92.8
2019	7,406	6,140	1,266	402	123	279	7,808	94.9
2020	6,621	5,621	1,000	0	0	0	6,621	100.0
2021	6,002	5,102	900	277	0	277	6,279	95.6

자료: 기상청

비록 APEC 기후센터는 출연금에 기반한 공공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아니나, 일정 부분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의 출연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와 동시에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동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출연금과 기관 운영비 성격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적 근거 마련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아태지역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APEC 기후센터 출연과 관련하여 그 근거로 「기상법」 제32조와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등을 들고 있으며,⁴⁾ 그중 APEC 기후센터를 대상으로 한 비용 지원의

4) 「기상법」

근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 규정들은 보조금 등 일반적인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이며, 상대적으로 집행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연구개발출연금(360목)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APEC 기후센터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2조5)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와 같은 명시적인 법률상 교부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월 「기상법」 개정을 통한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APEC 기후센터 설립,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직까지 동 기관에 대한 출연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APEC 기후센터는 아태지역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관련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출연금의 일부를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기관 운영비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기상청은 기관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사업 출연금과 기관 출연금을 분리하여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기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가. 현 황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¹⁾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첨단화 및 관측기술 고도화를 통해 위험기상 탐지의 정확도를 높여 기상재해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항 기상레이더의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여 고품질 항공기상자료를 생산하고 항공운항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기상청은 2021년도 예산 101억 4,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7억 7,500만원 중 8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억 4,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억 6,5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상레이더 운영	10,147	10,147	708	△80	10,775	8,267	76.7	1,944	56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공항기상레이더(TDWR; Terminal Doppler Weather Radar)는 공항 주변의 구름의 분포나 강수강도, 다양한 난류 등의 기상상황을 감지하는 기상레이더 시스템으로, 공항기상레이더에서 관측된 정보는 관제탑, 접근관제소, 항공교통관제소 등에 제공된다. 특히, 난류지역에 접근하는 항공기 조종사에게 경보를 알림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항기상레이더의 노후화 또는 관련 장비 부족 문제는 급변풍이나 하강 기류 등 항공위험기상에 대한 감시 및 예측력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항공항행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일반회계 1233-302

이에 따라, 기상청은 2020년부터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내역사업²⁾을 통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등 우리나라 주요공항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공항기상레이더를 교체하거나 신규 레이더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³⁾

나. 분석의견

기상청은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공사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과정을 사전에 추진하는 등 사업 지연 사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내역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선 중 항공교통량이 가장 많으나 항공기상장비가 부족한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신규 공항기상레이더를 구축하기 위한 관측소 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에서는 관측소 공사비 예산 15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⁴⁾

그러나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한 2020년 이후 관측소 부지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해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공사비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당초 인천공항기상레이더 구축 관련 예산은 2019년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내역으로 편성되었으나, 2020년부터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3) 「기상법」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환경조사 및 설계비 2억 2,000만원, 공사비 15억원 등을 포함하여 총 22억 6,500만원이며, 기상레이더 장비 조달수수료 및 임차료 등 장비도입 관련 예산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공항기상레이더 장비 도입 관련 예산 88억 3,800만원을 고려할 경우,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 관련 예산은 약 112억원 규모로 판단된다.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20년의 경우, 기상청은 당초 계획하였던 부지(제주시 봉개동)를 대상으로 제주공항기상레이더 설치를 위한 환경조사 용역과 기본·설계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대상 부지 입지선정과정에서 공항기상레이더 전자파 문제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건축 인·허가 주체인 제주시가 관측소 신축 부지 재검토를 요청하고 경관심의를 반려하였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대체부지(1차: 제주시 해안동)를 확보한 후 설계를 재추진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용역 계약을 연장하였으나,⁵⁾ 대체부지로 확보한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에 재차 실패하면서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설계비 등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였다.⁶⁾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 부지 확보 추진현황]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대체부지 조사	2020.9.8. ~ 2020.9.15.	-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제주도 소유 토지목록 요청 및 대체부지 조사
부지교환 사전협의(제주도)	2020.9.24.	- 대체부지 확정 시, 기상청 소유지와의 부지교환 협의
대체후보지 타당성 평가	2020.10.7.	- 대체후보지에 대한 기상학적 타당성 평가(전자파 영향조사 등) 수행
대체후보지(1차) 확정	2020.11월	- 제주시 해안동 일대로 대체후보지(1차) 확정
지역주민 면담 및 주민설명회	2020.12월 ~ 2021.5월	- 후보지 마을회관 방문 사업부지 선정 배경 설명 - 마을자치회 임원 대상 주민 설명회 개최 - 마을자치회 요구자료(전자파 영향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자료 등) 회신 등

5)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 환경조사 및 설계용역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제주공항기상레이더 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98	63	0	63	'20.6.10. ~ '20.10.14.	'20.6.10. ~ '21.4.30.	'20.6.10. ~ '21.11.30.

자료: 기상청

- 6) 2020회계연도에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에 편성된 예산 총 3억 5,000만원 중 환경조사비와 조달수수료 일부 등 총 8,1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설계비와 조달수수료 등 관련 예산 대부분이 이월·불용(이월액 6,300만원, 불용액 2억 600만원)되었다.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가후보지 관련 협의 추진	2021.4월~	- 제2차 대체후보지(제주시 애월읍 수산봉) 검토 및 현장조사('21.4) - 부지소유자(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기상레이더 설치 검토 요청('21.5.6) - 기관장 간 면담 및 협의('21.6.3)
대체후보지(2차) 확정	2021.5월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대로 대체후보지(2차) 확정
갈등조정 관련 용역 추진	2021.5월~9월	- 대체 후보지에 청사 신축을 위한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주민설명회 및 마을대표 협의 추진	2021.5월~11월	- 수산봉 내 도유지 사용협의 및 수산리 주민협의 추진
최종부지 확정	2021.11.4.	- 마을총회를 통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부지 확정
공사계약 체결	2021.12월	- 부지 확정 후 관측소 공사 공고 추진 및 계약 체결

자료: 기상청

이후, 2021년 기상청은 제주지방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해양선박감시레이더 부지(제주시 애월읍 수산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21.4) 및 기상레이더 설치에 관한 검토 및 유관기관 간의 면담 등을 통해 2021년 5월 수산리 지역을 최종적인 대체부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대체부지 선정 후 갈등조정 관련 용역과 마을총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결과 2021년 11월 4일 최종적인 부지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인 부지 확정을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사업 부지에 대한 제주도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하고 관측소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22년 3월 11일부터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로 인해 2021년 편성된 공사비 예산현액 15억 2,300만원 중 7,300만원만이 집행되고 13억 6,200만원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8,800만원은 불용되는 등 예산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2022년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불용액
연도	비목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A)	(B)	(B/A)	이월액	
2021	설계비	-	-	63	18	81	81	100.0	-	-
	공사비	1,500	1,500	-	23	1,523	73	4.8	1,362	88
	소계	1,500	1,500	63	41	1,604	154	9.6	1,362	88
2022	건설보상비	-	-	-	38 ¹⁾	38	38	100	-	-
	공사비	545	545	1,362	-	1,907	24	1.3	-	-
	소계	545	545	1,362	38	1,945	62	3.2	-	-

주: 1) 도유지(제주도) 매입에 필요한 예산 3,800만원을 전용하여 건설보상비로 집행하였음

자료: 기상청

특히, 기상청은 2022년 예산으로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관련 잔여 공사비 5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예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7월 중순 현재 전체 공사비 예산현액 19억 700만원 중 2,400만원만이 집행된 상황이므로, 기상청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과정을 사전에 추진하는 등 사업 지연 사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71-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